

현안분석 2005-

법령용어 8

한국과 프랑스 법령용어 비교연구

조임영

한국과 프랑스 법령용어 비교연구

The Comparative Study on Terminology of Law in Korea and France

연구자 : 조임영(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Jo, Im-Yeong

2005. 10.

국문요약

이 보고서에서는 법언어의 기본요소인 법률용어를 대상으로 프랑스 법률용어와 관련 정책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한국과 프랑스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한국 법령용어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프랑스 법률용어 및 관련 정책사례에 대한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률용어에 대해서는 먼저 이를 법적으로만 사용되는 용어와 일상적으로도 사용되는 용어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법언어학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법적으로만 사용된다면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일상적으로도 사용된다면 법적 의미와 동일한 의미에서 사용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의 단절이 있는지의 여부와 그 이유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적 전문용어나 일상적인 의미와 단절이 있는 용어를 일상적인 다른 언어로의 대체가 가능한지를 검토하였다. 법률용어에 대한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정책의 기본방향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법령의 제정에서 어떠한 제도에 의해 어떠한 방식으로 정책이 실행되는지를 검토하였다.

법률용어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법적 의미로만 사용되는 용어들은 정확한 기술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법제도 내에서는 한계적이거나 부차적인 지위를 가진다. 이 용어들은 일상언어에서 이와 경합하는 용어들이 존재하면 이로써 대체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동일한 용어가 법적 의미와 일상적 의미 사이에 단절이 있고 이로 인해 혼돈의 위험이 클 경우에는 다른 언어와의 대체가 필요하나 보다 명확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법적 개념체계로 혼란으로 이어져서는 아니될 것이다.

법률용어와 관련한 프랑스의 정책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개혁’(réforme de l’Etat)의 하나로서 법령에 대한 ‘이해가능성’과 ‘접근가능성’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이는 헌법적 가치를 가짐을 확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정책의 실시와 관련하여 정부 내의 법령입안 및 심사의 각 단계에서 법령문 작성에 대한 통일적인 행정지침이 적용되고 의회 내에서도 평가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법전화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와 같은 정책이 행정부의 강력한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Abstract

This paper reviews French legal terms and related policy cases under the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 and France considering legal terms which are basic elements in legal language and thus, will find out the ideas for the legal terms and related policy matters for Korea.

The review on French legal terms and related policy cases is as follows. The legal terms are divided into the terms used legally only and the terms used commonly as well. Then, under the legal linguistics methodology, I analyze the reason for which they are not used commonly if they are used legally only, and my study covers whether the terms used commonly as well are used in the same meaning as legal meaning. Finally, I review the issue as to whether common terms used in our everyday life can be substituted for the terms used legally only and the legal terms used differently. Regarding related policy issue, I study the purpose of the policies and the administration of the policies in making laws in France.

From the analysis of the legal terms, we find out the following points. The terms used legally only have technical means, but they are limited and secondary under the legal system. These terms can be changed into other common terms if any. Also, the legal terms used commonly as well but differently should be changed without the misunderstanding of legal concept.

From the review of French policy cases related to legal terms, we find out the following points. They have had policy cases for understandability and accessibility to laws as part of Reform of State, which has constitutional value. Also, the unified administrative guide for drafting of legal text is applied to each law making process and process of preparation and examination of legal text, and there is evaluation process in the Congress as well. Finally, The French government has strongly led the policies as seen in case of codification.

The review on French legal terms and related policy cases is as follows. The legal terms are divided into the terms used legally only and the terms used commonly as well. Then, under the legal linguistics methodology, I analyze the reason for which they are not used commonly if they are used legally only, and my study covers whether the terms used commonly as well are used in the same meaning as legal meaning. Finally, I review the issue as to whether common terms used in our everyday life can be substituted for the terms used legally only and the legal terms used differently. Regarding related policy issue, I study the purpose and process of the policies and the administration of the policies in making laws in France.

From the analysis of the legal terms, we find out the following points. The terms used legally only have technical means, but they are limited and secondary under the legal system. These terms can be changed into other common terms if any. Also, the legal terms used commonly as well

but differently should be changed without the misunderstanding of legal concept.

From the review of French policy cases related to legal terms, we find out the following points. They have had policy cases for understandability and accessibility to laws as part of Reform of State, which has constitutional value. Also, the unified administrative guide for drafting of legal text is applied to each law making process of preparation and examination of legal text, and there is evaluation process in the Congress as well. Finally, The French government has strongly led the policies as seen in case of codification.

목 차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 1 장 서 론	11
I. 연구의 목적	11
II. 연구의 방법과 범위	13
제 2 장 법언어와 법언어학의 기초이론 및 관련문제	15
I. 법언어와 법언어학에 대한 기초적 검토	15
1. 법언어와 법언어학	15
2. 법언어에 대한 언어학적 주요 분석도구	18
II. 전문언어로서의 법언어	21
1. 전문언어와 일반언어에 관한 일반이론	21
2. 법언어에서 전문언어와 일반언어의 사용	22
III. 법 텍스트 번역의 문제점과 특수성	25
1. 번역의 문제 : 동일성과 동등성	25
2. 법 번역의 특수성	26
제 3 장 프랑스 법률용어의 법언어학적 특징	29
I. 프랑스 법률용어의 기본적 특징	29
1. 언어적 측면	29
2. 개념적 측면	31
II. 프랑스 법률용어의 범주별 분석	33
1. 범주별 분석의 의의	33

2. 배타적 소속관계	34
3. 이중적 소속관계	43
4. 내부적 다의성	59
제 4 장 법률용어 및 문장과 관련한 입법정책	69
I. 입법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근거	69
II. 입법정책의 전개 및 현황	74
1. 정부법령안 작성과 법령간결화 정책	75
2. 법전화작업과 법령간결화 정책	77
3. 의회입법평가국과 법률간결화	81
제 5 장 결어 : 한국 · 프랑스 법률용어 관련 비교 검토 ...	83
I. 언어 관련 입법정책	83
II. 법언어 관련 입법정책	85
▣ 부록 : 프랑스어-한국어 법률용어집	89
참 고 문 헌	143

제 1 장 서 론

I. 연구의 목적

“사회있는 곳에 법이 있다”(UBI SOCIETAS, IBI JUS). 법의 사회적 현상, 즉 사회적 규칙으로서 법의 성격을 강조하기 위한 법언이다.¹⁾ 법의 이러한 성격은 사회구성원들간의 규칙에 대한 합의와 인식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합의와 인식을 위한 의사소통의 도구 내지 매개체는 언어이다. 즉 법은 언어를 통하여 표현되고 전달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법언에는 이미 언어가 개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와 법보다는 이미 언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언은 정확하게는 “언어가 있는 곳에 사회가 있으며,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가 될 것이다.²⁾

이와 같이 법은 사회현상으로서 언어적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지만, 법의 전개는 소통의 단절이라는 역방향으로 전개되어 왔고 사회구성원들의 법에 대한 소외감은 심화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은 개념체계라는 법 본래의 성격에 기인하는 바도 있겠으나 법의 전달 매개체인 법 언어 자체의 폐쇄성도 이러한 현상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의 사회적 성격과 법 언어의 폐쇄성이라는 역설적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여러 나라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프랑스는 최근 법령에 대한 일반시민의 “접근가능성”과 “이해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계수법의 성격을 가짐으로 인해 일반시민들에게 있어 법 언어는 더욱 어렵고, 이에 따라 법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법 언어의 불평등한 현상은 법에 대한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즉 법 언어를 획득하고 있는 자나 법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1) 라틴어의 “UBI SOCIETAS, IBI JUS”의 정확한 의미는 “인간집단이 있는 곳에서는 규칙이 있다”라는 것이다(박영도, 『법률용어에 관한 연구 -용어정비를 위한 기초이론-』, 한국법제연구원, 1995, 11-12쪽 참조).

2) 박영도, 위의 책, 12쪽, 주 4) 참조.

일반시민들간에는 권리의 행사에 있어 “법 앞에 평등”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법 언어의 정상적인 소통이 가능할 경우에 법 언어는 법의 적용과정에서 그 자체 법적 담론을 형성할 수 있고, 이는 법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³⁾ 이와 같이 법의 영역에서 언어 민주주의의 결여는 민주주의 자체로 결여로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정부는 오래 전부터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에 대한 정책을 실시하여 일본식 용어, 한자식 표현, 지나치게 어려운 법령용어 등을 쉽게 풀이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작업을 하여 왔다. 최근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2003년 8월에 ‘법률한글화조치법안’을 2004년 12월에 『법률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출하였다.⁴⁾

이와 같은 법 언어에 대한 정책은 법령용어에 대한 연구에서 출발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언어는 단어와 단어의 조합인 문장으로 구성되는데서 알 수 있듯이 법령용어는 법언어의 기본단위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바탕하여 프랑스 법령용어를 대상으로 한 프랑스의 법언어학적 연구성과들과 법령용어와 관련한 입법정책의 검토를 통해 한국에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프랑스 법령용어에 대한 이러한 연구는 또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유익하다.

먼저, 법령용어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에 대한 검토는 우리나라 법령용어의 연구에 대한 방법론적인 시사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법령용어 정책의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법의 계수적 성격으로 인해 법령용어의 순화작업은 용어의 연혁적 이해를 동반할 때 보다 촉진될 수 있다.⁵⁾ 이러한 점에서 프랑스 법의 법령용어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 법령용어에 대한 연혁적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은 많은 적든

3) 이에 대한 논의는 강현철, 『법령용어의 순화와 정비에 관한 법언어학적 연구』, 한국 법제연구원, 2003, 11-12쪽 참조.

4) 장병일, 『부동산등기법의 법령용어 및 문장의 정비와 순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법제연구원, 2005, 12쪽.

5) 강현철, 앞의 책, 21쪽.

일본을 통해 유럽대륙 국가의 법 그리고 프랑스 법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프랑스 법의 이해와 법령용어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의 방법과 범위

이 연구에서는 언어학의 방법과 개념을 차용한 법언어학적 방법론을 도구로 프랑스 법령용어와 관련 입법정책에 대해 검토·분석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법언어와 법언어학에 대한 기초이론 및 관련문제를 검토한다. 여기서는 법언어와 법언어학의 내용과 특징, 법언어학의 방법론적 도구, 법언어와 관련한 문제로서 전문용어와 일반용어의 사용의 문제 그리고 법언어의 번역과 관련한 문제를 검토한다.

제2장을 검토를 토대로 제3장에서는 프랑스 법률용어의 법언어학적 특징을 개별 단어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이 장에서는 프랑스 법률용어의 기본적 특징을 언어적 측면과 개념적 측면에서 개괄한 후, 일상언어와의 관계에서 법률용어의 성격을 범주별로 분류하여 각 범주에 해당하는 법률용어들을 검토하고 각 범주의 특징을 분석하도록 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프랑스 법령용어에 대한 정부정책의 현황을 검토한다. 이 장에서는 법률용어에 대한 입법정책의 법적 성격과 의의가 무엇인지, 입법정책의 기본방향과 근거가 무엇인지, 법률안의 작성단계에서 법률용어에 대한 정책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등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프랑스 법령용어에 대한 연구와 정책으로부터 시사점의 도출을 시도한다.

이와 같은 이 연구의 전개와 내용은 한국과 프랑스의 법률용어 자체에 대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법언어학적 비교검토가 결여되었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 점은 필자의 언어학적 지식의 한계와 국내에 법률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법언어학적 연구성과가 미흡하기 때문인데, 추후 연구에서 이러한 한계를 다루기로 한다.

제 2 장 법언어와 법언어학의 기초이론 및 관련문제

I. 법언어와 법언어학에 대한 기초적 검토

1. 법언어와 법언어학

법언어학은 법언어를 연구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법언어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연구대상인 법언어의 존재유무와 그 구성요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언어(langage du droit)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 우선 구별하여야 중요한 개념은 랑그(langue)와 랑가주(langage)이다. 통상적인 정의에 따르면, 랑가주의 일차적인 의미는 말하는 자연적 능력, 즉 말의 이용이며,⁶⁾ 랑그는 일반언어 또는 자연언어로 불리어지는 국가고유어와 같은 한 언어공동체 내에서 이러한 능력이 실현되는 특별한 방식을 의미한다.⁷⁾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법언어는 랑가주도 아니며 랑그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랑가주는 랑그 내에서 어떤 집단이나 분야에서 랑그가 말해지는 “특별한 표현방식”으로 정의되고 있다.⁸⁾ 이러한 정의에 따라 법언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법의 영역에서 공동체언어가 특수한 방식으로 이용되고 공동체 언어시스템에 생소한 요소들이 법에 존재해야 한다. 이는 전문언어 또는 전문화된 언어를 말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과 관련한 몇 가지 객관적인 언어사실로부터 법언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에 앞서 법언어의 존재를 예감하게 하는 징표들이 있다. 법언어는 비법률가에게는 즉각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법언어는 일반언어(langue commune)만을 보유하는 자에게는 단번에 이해되지 않는다. 일반인은 법으로부터 소외감

6) 랑가주는 인간의 고유한 특징이며, 아이는 랑가주를 획득한다와 같은 의미에서 사용된다.

7)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은 랑그에 해당한다.

8) Gérard Cornu, *Linguistique juridique*, Montchrestien, 2000, p. 23; Jean-Louis Sourieux et Pierre Lerat, *Le langage du droit*, Puf, 1975, p. 4.

을 가진다. 역설적이게도 법언어는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법언어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법언어는 동일한 언어공동체의 구성원들간의 일상적 언어교환을 특징 지우는 상호이해의 자연적 순환회로의 바깥에 있다. 이와 같이 일반인들이 법언어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법에 고유한 용어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법에는 일반언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단어나 일반언어에서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들이 존재한다. 법에 고유한 단어의 존재는 전문언어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법언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징표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법언어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언어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용어와 담론(discour)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어떤 전문분야에 대해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 분야의 용어와 그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개념을 알 필요가 있다. 이는 전문용어는 일반 어휘와 비교할 때 다른 개념구조와 명명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⁹⁾ 이 측면에서 법언어는 전문언어로서 고유의 개념과 이를 명명하기 위한 용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법적 담론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법령문, 판결문, 계약 등에서 일반적 언어담론과는 구별되는 논리와 형태를 바탕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속성은 법률용어의 전문성에서 유래하는 것만은 아니며 법의 창조나 실현이라는 목적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법언어는 기본적인 요소로서 적어도 어휘와 통사론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언어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하나의 랑가주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언어학이란 법이 사용하는 모든 언어적 수단들을 대상으로 하며 언어학의 이론을 방법적으로 적용하여 이 수단들을 언어학적 관계라는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법언어학은 법이 사용하는 언어적 기호들(의미와 형태의 측면에서 단어들)과 법이 생산하는 발화(enoncés)(예를 들면, 법령문의 기능, 구조, 문체 등)를 언어학적 방법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법언어학적 연구는 순수한 언어학적 목적으로 행해질 수 있으나 법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9) 강현철·임태현, 『동유럽체제전환기의 법률용어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3, 11쪽.

법언어에 대한 언어학적인 연구의 필요성은 여러 측면에서 요구되거나 기본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법언어학은 법의 표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법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의사소통의 도구가 언어이기 때문이다. 법언어학은 법의 표현과 관련하여 법의 창출과 적용의 모든 단계에서 그리고 구두표현과 문자표현의 모든 방식에 개입한다. 법의 표현과 관련하여 법언어학은 특히 입법학 분야의 보조학문으로서 기능한다. 또한 법언어학은 법의 해석을 도와준다.¹⁰⁾ 그리고 이를 통해 반대로 법언어학은 법담론을 만들어내고, 이는 다시 법령의 제정에 기여하게 된다. 곧 법언어학은 법의 표현과 해석의 동반자인 것이다. 나아가 법언어학은 법적 범주(*catégorie juridique*)의 결정이나 법적 논증(*raisonnement juridique*)의 전개에 있어서 다양한 접근방법들 중에 하나이다. 즉 각각의 법적 범주는 용어에 대한 법적 개념의 정의를 통해서 결정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법언어학은 언어의 형식적 분석을 통하여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법적 범주들의 연결 관계들에 대한 연구는 어휘적 연구를 통하여 보다 잘 전개될 수 있다. 법 용어들을 계통별로 모으는 것은 개념들의 망(*réseau des concepts*)을 명확히 해주는 수단일 수 있다.¹¹⁾

법언어와 법언어학의 이러한 관계를 고려하면, 법언어학은 단지 일반언어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 하나인 것은 아니다. 법언어학과 일반언어학을 대비는 단순히 일반언어학은 모든 랑그와 모든 랑가주라는 보편적 대상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법언어학은 법언어라는 특수한 대상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는 연구 대상에 있어서의 특수성을 드러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법언어학과 일반언어학의 관계를 지배하는 것은 개념과 방법의 원천으로서 인정되는 일반언어학의 기본적 성격이다. 즉 법언어학은 일반언어학이라는 기초과학을 법언어에 특수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법언어학은 일반언어학을 전부, 순수하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언어학은 일반언어학의 응용과학, 실용언어학이라 할

10) 박영도, 『법률용어에 관한 연구 -용어정비를 위한 기초이론-』, 한국법제연구원, 1995, 19-23쪽 참조.

11) Gérard Cornu, *Vocabulaire juridique*, Puf, 2003, préface.

수 있다. 아래에서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듯이 법언어학은 법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일반언어학의 일부 방법론을 이용하여 일반언어학의 일부분야, 즉 주로 의미론, 통사론, 형태론을 연구하는 것이다.

2. 법언어에 대한 주요 언어학적 분석도구

아래에서는 법언어의 구성요소인 법률용어와 법담론의 분석에 사용될 수 있는 언어학적 주요 분석도구를 살펴본다.

(1) 단어에 대한 분석도구: 시니피에(signifié)와 시니피앙(signifiant)

법언어를 분석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로서 이용되는 것은 Ferdinand de Saussure가 “일반언어학 강의”(Cour de linguistique générale)에서 제시한 언어기호(signe linguistique) 개념이다. 이에 따르면 언어기호는 시니피앙과 시니피에라는 두 측면을 가지는 개체이다. 시니피앙은 ‘형태’(forme), 정확히는 ‘음성형태’(forme phonique)이며 이를 통해 기호가 표현된다. 따라서 시니피앙은 소리를 기초로 하며, 단어가 말해질 때에 그 시니피앙은 소리형태에 해당한다. 문자기호도 또한 시니피앙을 가진다. 문자기호에 있어 시니피앙의 표기형태는 음성형태를 표현하는 것이며 대체하는 것이다. 즉 시니피앙은 실제적인, 즉 순수하게 물리적인 소리가 아니라 ‘청각적 이미지’(image acoustique)라 불리는 음성의 정신적 흔적인 것이다. 시니피앙은 단지 귀에만 관계된 것은 아니며 듣기와 읽기를 통하여 시니피앙이 자신에게 부착된 시니피에를 만나는 정신에 도달한다.

시니피에는 ‘내용’(fond)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시니피에는 지각할 수 없는 부분으로 기호의 순수한 지적 요소, 즉 의미(sens)이다. 시니피에는 지적 표상, 즉 비언어적인 현실에서 명칭이 지시하는 것에 대한 관념이다. 따라서 보다 정확히 말하면, 시니피에는 지시대상(référent)이 아니라 지시대상의 정신적 이미지(지시대상의 지적 표상)이다. 시니피에는 메시지를 보내는 자 그리고 그 의사소통이 성공할 경우에 그 메시지를 받는 자의 정신 속에 있다.

언어기호의 시니피앙과 시니피에라는 이 두 측면은 분리 불가능한 하나의 개체를 구성한다. 언어적 기호단위는 그 전체로서 음성적 이미지에 결부된 정신적 이미지로 구성된다. 통상적 의미단위인 단어는 개념을 전달하는데, 모든 의미단위는 표현(시니피앙)과 그 의미론적 내용(시니피에)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단어의 발음은 언어적 기호의 음성적·개념적 실현을 동시에 발하면서 소리(또는 그 대체)와 그 소리에 결부된 의미를 동시에 전달한다.

이러한 분석은 언어학의 주요 분야와 관련된 기본적인 것이다. 한편으로 이 분석은 모든 분야(형식적 부분)와의 관계에서 시니피앙에 대한 연구를 분해하면서 시니피앙에 관계된 분석집단을 보게 한다. 즉 이와 관계된 분야로는 언어의 음단위를 연구하는 음운론, 언어의 분리할 수 없는 시니피앙의 단위에 부여된 명칭, 즉 형태소를 연구하는 형태론, 문장 속에서 단어들의 결합을 연구하는 통사론 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구별은 시니피에와 관련한 언어학의 분야(실질적 부분)들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한 분야는 의미론이다. 이는 단어의 의미, 즉 자연언어 속에서의 의미에 대해 연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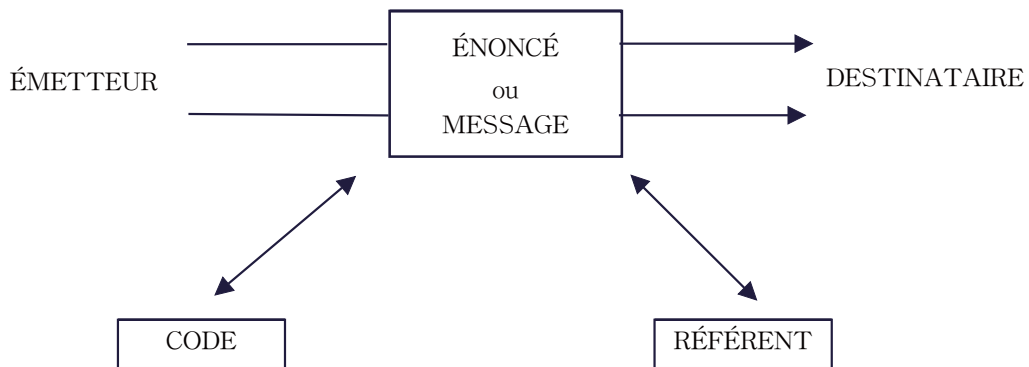
(2) 언어적 의사소통과 관련한 분석도구

법담론은 법률용어와 대비되는 법언어의 다른 측면이다. 법담론은 법에서 법을 위해 언어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법담론은 언어적 행위와 법적 행위의 결합으로 나타난다. 먼저 언어적 측면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법담론은 표현을 통해 그리고 의사소통을 위해 자연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언어적 행위이다. 법담론은 특정시기에, 특정 상황에서, 누군가 다른 누군가를 대상으로 언어적 기호를 통해 어떤 것을 표현한다는 사실로부터 존재한다. 그러므로 법담론은 랑그의 사용에 속한다. 이는 용어와 대비된다. 용어는 지적 차원에서 나타나고, 어휘에 속하는 것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언어적 잠재성의 영역이다. 담론은 누군가에 의해 실제적으로 조직되므로 이는 문법, 통사론, 문체론 등의 영역에 속한다. 담

론은 그 작동질서 속에서 랑그의 소통적 기능에 따른 랑그의 개별적 현실화에서 나타난다. 즉 담론은 어떤 자가 다른 자에게 메시지로서 발화(enoncé)를 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적 담론은 모든 담론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언어소통의 도식에 포함된다. 다음은 Roman Jakobson이 제시하는 언어과정의 도식이다.



의사소통에서 발화(ÉNONCÉ)는 한편으로 결과 또는 산물(발화행위(enonciation)의 결과, 즉 개인적 표현행위의 산물)로서 나타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전달 대상 자체, 전달해야 하는 정보, 메시지(MESSAGE)로서 나타난다. 발화는 그 자체가 하나의 시니피앙의 총체이며 그 자체로 충분한 의미가 부여된 하나의 언어적 구성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텍스트는 하나의 발화이며 이 텍스트의 문장들 각각은 또한 하나의 발화이다. 따라서 발화는 최소한 하나의 문장이다.

발신자(ÉMETTEUR)는 의사소통의 첫 번째 적극적 주체로서 발화하는 자(발화자)이다. 발화를 구성하는 언어적 기호들을 제시하는 것은 발화자이다. 따라서 발화자는 개인적으로 의사소통의 수단(통로(canal) 또는 매체(medium)), 엄격한 언어적 수단에 한정한다면 음성 또는 문자 등을 이용한다. 또한 발화자는 메시지 기호체계(code du message), 즉 의사소통수단을 구성하는 랑그 속에서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를 부호화 한다.

수신자(DESTINATAIRE)는 메시지를 수신하는 자이며 의사소통의 또 다른 적극적 주체이다. 왜냐하면 수신자가 메시지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수신자는 메시지를 해독하고 그 지시대상(RÉFÉRENT), 즉 발화가 가리키는 것을 포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사소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신자가 접촉되어 있어야 하고(첫째 조건), 수신자는 발신자가 사용하는 부호체계를 이해하고(둘째 조건), 발화의 기호들이 지시하는 실재를 이해(셋째 조건)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법적 담론은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의사소통의 모든 요소를 반드시 갖추고 있다.

II. 전문언어로서의 법언어

1. 전문용어와 일반용어에 관한 일반적 논의

어떤 전문분야에 대해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 분야의 용어와 그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개념을 알 필요가 있다. 이는 전문용어는 일반 어휘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다른 개념구조와 명명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¹²⁾ 전문용어와 일반용어의 차이점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 Wüster는 전문용어의 연구는 일반어휘에 대한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세 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 먼저 일반 어휘를 연구하는 어휘론에 비해서 전문용어론의 연구는 개념이 그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반어휘론이나 전문용어는 모두 ‘어휘 단위’와 추상화에서 이루어지는 ‘사물들의 분류’작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용어는 어휘론과 달리 명명 그 자체, 조직적 분류작업, 어휘적 구조에서 나타나는 전문용어의 의미에 대한 연구를 담당한다. 전문용어론은 각 전문 분야별 명명체계를 연구하고, 사물의 개념을 먼저 연구함으로써 그 사물에 대응하는 적절한 언어적 기호를 연관시키는 다양한 의미론적 과정들을 연구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전문용어론은 일반 어휘에 대

12) 강현철·엄태현, 『동유럽체제전환기의 법률용어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3, 11쪽.

한 연구와는 달리 형태론적 문제나 통사론적 문제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전문용어론과 일반어휘는 언어사용의 규범화와 관련하여 차이점을 보인다. E. Wüster에 따르면 “Ist-Norm”과 “Soll-Norm”의 차이에 있어서 전문용어론에서는 일반 언어사용에 있어서 “Soll-Norm”의 창조에 대해서 연구하며,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단어의 의미의 규정과 표준화에 대해서 연구한다는 것이다.¹³⁾

E. Wüster의 견해에 따르면 전문용어 및 일반어휘 연구는 연구의 대상과 연구의 목적에서 차이점이 있다. 연구대상과 관련한 전문용어의 특징을 J. C. Sager는 전문언어에 속하는 어휘 단위로서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특정 의미 구역만을 나타낸다는 데서 찾고, 이 점에서 일반 단어가 다양한 분야의 일반 언어군에서 일반적이며 공통적인 의미구역을 나타내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한다.¹⁴⁾ 연구목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D. Rusu는 “표현성”과 “의사소통”이라는 두 가지 다른 기능에 따라서 일반언어와 전문용어의 차이를 좀 더 구체화시키고 있다. 언어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전문용어는 전체 언어 체계 내에서의 기능적 하위코드로서 다른 하위코드들과의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즉, 하위 코드 체계 내에서 사고의 언어적 표현을 가능하게 하며 의사소통 기능을 하는데 중심이 되는 것이 전문용어이다. 따라서 전문용어는 단일성을 중시한다. 반면에 표현성은 다양성을 추구한다. 은유적 표현, 신조어, 동의어 등은 이런 표현성을 돕는 것으로 일반 단어의 기능이다.

2. 법언어에서 전문언어와 일반언어의 사용

입법자는 법령문에서 법에 고유한 전문언어와 일상언어 가운데 어느 것을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사용하여야 하느냐의 문제는 법률용어와 관련하여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일상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전문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대립이 있어 왔다. 가령 벤담은 입법자는 “모든 사

13) 강현철·엄태현, 위의 책, 12-13쪽.

14) 강현철·엄태현, 위의 책, 13쪽.

람들에게 친숙한 언어로 말해야 한다”¹⁵⁾고 하여 일상언어의 사용을 주장하여 왔다. 프랑스에서 1960년대부터 전개되어온 법언어 현대화의 흐름은 이와 같은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에 대해 François Génys는 랑가주(langage)를 “법기술의 수단”으로 이해하면서 일반언어(langue commune)로부터 그 목적에 따라 특수하게 맞추어진 기술언어를 도출하고 구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¹⁶⁾

입법자에게 부과되는 다음의 두 가지 요구는 동일한 중요성을 가진다. 첫째, 가능한 모든 경우에 입법자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문을 표현하여야 한다. 둘째, 필요한 모든 경우에 입법자는 자신의 전문언어의 정확성을 이용하여야 한다. 이는 또한 법령의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에 대한 보장이기도 한다. 문제는 이 두 가지 목적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며 양립할 수 없는 것인가, 아니면 조정이 가능한가에 있다.

Gérard Cornu는 전문언어와 일상언어의 사용에 관한 문제는 해결이 가능한 몇 가지 문제로 축소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두 목적은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는 점, 진정한 문제는 이러한 논쟁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 그리고 이 두 목적이 진정으로 대립한다면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한다.¹⁷⁾ 아래에서는 프랑스 법률용어와 관련한 Gérard Cornu의 이러한 견해를 소개한다.

(1) 문제제기의 오류

법언어에서 전문언어와 일상언어의 문제를 이해하는 출발점은 랑그와 랑가주의 구별이다. 랑그와 랑가주간의 관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법랑가주(langage du droit)는 이를 담고 있는 자연언어(langue naturelle) 가운데서 전문화된 랑가주일 뿐이다. 따라서 프랑스 법언어는 프랑스어(langue française)와 대립하지 않는다. 프랑스 법언어는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프랑스 법언어는 그 사용에

15) Jérémie Bentham, *Traité de législation civile et pénal* t. III, p. 399.

16) François Génys, *Science et technique en droit privé positif*, III, Élaboration technique du droit positif, Sirey, 1921, p. 450.

17) Gérard Cornu, *Linguistique juridique*, Montchrestien, 2000, p. 318.

있어서 특수한 전문용어와 관용표현을 도입하고 있을 뿐이다. 통사론, 문법 및 기초어휘에 있어 프랑스 법언어는 프랑어일 뿐인 것이다. 따라서 대립하는 진정한 문제 영역은 프랑어라는 몸체 위에 몇몇 기술적 특수성의 가치를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언어에 고유한 용어로서 이해되는 전문용어들만이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는 인식은 근본적인 오류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일반언어의 많은 용어들이 법의 관점에서 고유의 전문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법률용어의 거의 대부분은 일상언어에서도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의미는 동일할 수도 있으나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동일한 용어가 일상언어와 법언어에서 사용되고 각각의 영역에서 다른 의미를 가지는 현상을 ‘외부적 다의성’(polysémie externe)이라 한다. 이러한 외부적 다의성을 가지는 용어에 비추어 볼 때, 전문언어와 일상언어를 대립시키는 것은 오류이다.

사실 자연언어에 속하는 용어들이 점진적으로 ‘법화’(juridicisation) 되는 현상은 일반적인 것이다. 법령의 작성시 전문적이지 않았던 용어들은 법적 세계에 편입되는 순간부터 조금씩 해석과 정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2) 다른 영역의 문제

법언어의 난해성의 한 요인은 고어의 문제이다. 그런데 이 고어의 문제는 법언어의 전문(기술)성의 문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술적인 모든 것이 반드시 고어는 아니며, 모든 고어가 반드시 기술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법령용어의 고어와 문장의 고어가 구별된다.

(3) 개념틀(불확정적 의미의 용어)의 문제

법령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불확정적 의미의 용어와 관련한 문제는 전문언어와 일상언어의 문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법령문에서 엄격한 정확성과 지향적 유연성 각각의 장단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이다. 곧 모호성이 일상언어의 속성은 아니며, 정확성(명확성)

이 전문언어의 속성은 아닌 것이다. 법은 통상적으로 정확한 개념에 의지하고 있으나, 역으로 많은 용어 및 개념들은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가령, 신의성실, 선량한 풍속, 권리남용, 상당한, 정당한 등). 주의할 것은 이러한 개념들의 사용은 기하학의 문제가 아니라 섬세함의 문제이다. 이 섬세함의 문제는 정확성이 요구되는 사항과 유연성이 요청되는 사항에 대한 인식과 구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4) 진정한 선택의 조정

법령문 작성에 있어 전문언어와 일상언어 가운데에서 선택하여야 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전문용어만이 입법자의 의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는 전문용어를 사용한다. 즉 해당 전문용어와 동등한 의미를 가지는 일반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전문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이 가장 먼저 요구되는 분야는 고도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사항일 것이다.

둘째, 반대로 입법자의 의사가 전문적 표현이나 일상적 표현을 통해 동일하게 표현될 수 있는 모든 경우에는 일상적 표현을 사용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일상적 표현이 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기 때문이다. 이는 프랑스의 전통, 적어도 프랑스 민법전 작성에 있어서의 전통이다.

셋째, 가능한 모든 경우에 일상적 표현과 전문적 표현이 동일한 문장에서 결합될 수 있도록 한다.

III. 법 텍스트 번역의 문제점과 특수성

1. 번역의 문제 : 동일성과 동등성

오직 엄밀한 언어학적 분석에 기초하여 번역이 드러내는 현상을 연구한다면, 이로부터 번역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해야만 할지도 모른다.¹⁸⁾ 각각의 언어는 상이한 방법으로 자신의 의미론적 영역의 배분을

18) 이하 Jean-Claude G emar, "Le langage du droit au risque de la traduction. De l'universel et particulier", *Fran ais juridique et science du droit*, Bruylant, 1995, p. 143 이하 참조.

조직하기 때문에, 이 한계에서 어떤 언어에서의 특정 단어를 다른 언어에서 이에 대응하는 것을 찾아 일치시킬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일성은 실현될 수 없으나, 그래도 ‘랑가주(langage)의 보편성의 원리’로 인하여 동등성은 상황이 비교 가능할 경우에는 실현할 수 있는 목적이다. 이 점에서 랑그(langue)는 최소한의 언어적 공통점, 즉 동일한 랑그를 말하는 인간집단이 공유하는 공통점이다. 그리고 랑가주는 최대한의 공통분모, 즉 모든 인류의 공통분모인 것이다.

따라서 이는 성격에 관한 의미가 아니라 정도에 관한 것이다. 기능적 동등성(équivalence fonctionnelle)의 원리는 실용적인 텍스트들의 번역에 적용되는데, 이는 또한 법 텍스트의 번역에도 적용될 수 있다. 번역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의 성격에 관계없이 이 원리는 동일하다. 즉 그 형태에 관계없이, 수신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텍스트에서 다른 텍스트로 전달시키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J. P. Vinay는 “의미만이 고려된다.”는 전제를 확립하였다. 달리 말하면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해하기 위해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시키기 위해 번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의미가 존중되는 한 번역에 있어서는 모든 수단이 좋은 것이 된다.

이 전제를 법 텍스트의 번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 기술적 즉 언어적 인(어휘, 통사, 문체 등) 장애들의 어려움은 언어에 따라 동일하지 않을 지라도, 번역 대상 텍스트의 형태에 관계없이 거의 동일하다. 이 점에서 번역의 기능적 동등성의 원리는 법영역에서도 타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법의 번역은 법의 특수한 성격으로 인해 몇 가지 점에서 번역과 관련한 통상적인 규칙 및 원리와는 부분적으로 다른 예외를 드러낸다.

2. 법 번역의 특수성

법률가나 법언어학자들이 법 텍스트와 다른 텍스트의 차이점으로 주로 지적하는 것은 법 텍스트는 그 성격으로 인해 책임이나 의무의 형태를 적용할 수 있는 효과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법의 구속적 성격에 기인한다.

비교법학자들이나 법철학 및 법논리학자들의 연구에서는 법과 다른 언어로의 법의 번역의 특성을 강조한다. 법규범의 특수한 지위 이외에 이들이 주로 지적하는 그 특수성은 법 시스템들 간의 개념들이 일치하지 않는 점, 사회적 전통을 표현하는 언어 및 문화들이 언어들 간에 매우 다르다는 특수성, 동등한 법적 효과 및 법 자체의 번역 등이다.

법규범은 법 텍스트에 특수성을 부여하며 그 결과 그 번역에 특수성을 부여한다. 벨기에의 J. B. Herbots는 다른 번역과 비교할 때 법 번역의 차이점은 번역해야 하는 텍스트가 원하는 기대하는 법적 결과를 가지는 법규, 사법결정 또는 법률행위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불가피하다. 이는 법에 내재하는 부분이며 법시스템에 대한 모든 객관성 이전에 우연성을 구성하는 것이다.

법규범이 제기하는 근본적인 문제와 더불어 법 시스템들 간에 일치하지 않는 개념들의 문제가 있다. 이 장애는 사회과학과 관련된다. 번역에서 특히 법의 번역에서 어려움은 두 가지에 의해 증폭된다. 즉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있어 하나는 언어의 비교이고 다른 하나는 시스템의 비교이다. 이탈리아 법률가인 Rodolfo Sacco는 이와 관련하여 “번역의 진정한 어려움은 단어와 개념 간의 관계가 모든 법언어에서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한다. 비교법학자들이 외국법 시스템을 소개할 때, 어떤 자들은 분석대상의 개념에 상응하는 것을 제안하기 보다는 외국의 용어를 사용하기를 선호한다는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언어와 문화의 특수성에 대한 문제는 번역의 가능성에 반대하는 언어학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이다. Humboldt에 따르면, 각각의 언어는 “고유한 세계관”을 제공한다. Benvéniste는 “우리는 우리의 언어가 먼저 형성한 세계를 생각한다”고 한다. 즉 우리가 세계를 생각할 때 그 세계는 우리의 언어가 이미 먼저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단어 들뿐만 아니라 또한 그 단어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비교하거나 동등한 것을 찾기에 어려운 특수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화적 특수성은 동등한 것을 찾고자 할 때 중대한 장애물을 형성한다.

번역대상 텍스트의 법적 효과의 동등성의 문제는 번역자와 법률가에게 있어 동일한 견지에서 제기되지 않는다. 극단적으로 도식화하면, 번역자

는 법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생각하면서 자의(字意) - 의미 - 가 존중되도록 언어적 동등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비해 법률가는 법이 표현되면 문자는 필연적인 결과로 따른다고 판단하면서 법적 동등성을 실현하고자 한다. 그런데 바람직한 동등성을 생산하는 것은 텍스트의 두 구성요소인 형식(contenant)과 내용(contenu)의 일치와 조화적 혼합일 것이다.

문제는 법에 있어서 동등성(équivalence)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이다. Michael Beaupré는 법의 번역에 있어 두 가지 목적 즉 각각의 언어에 있어 그리고 각각의 시스템에 있어 어느 한쪽을 희생시키지 않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희생이 있다면, 법규의 적용 및 기능적 동등성의 목적과 기능적 동등성을 실현하는 관점에서 법규의 표현 가운데 어느 쪽을 희생시키야 하는가라고 묻는다. 이는 법 번역의 딜레마이다.

제 3 장 프랑스 법률용어의 법언어학적 특징

I. 프랑스 법률용어의 기본적 특징

아래에서는 전문화된 언어로서 프랑스 법률용어의 특징을 언어적 측면과 개념적 측면에서 각각 살펴보도록 한다.

1. 언어적 측면

먼저 프랑스 법령용어를 형태론적 측면에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법률 프랑스어는 별개의 언어라 할지라도, 프랑스어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점에서 법률 프랑스어는 지식분야에 고유한 일련의 파생어의 존재라는 모든 기술용어들이 가지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즉 민법적 의미에서의 disposition(처분)은 disposant(처분자), disponible(처분가능한) 및 disposer de(처분하다)를 동반한다. 이러한 술어적 배열은 disposer de를 동반하는 통상적 의미의 disposition의 계열과 형태론적으로 대조를 이룬다. 또한 재판의 결정이라는 의미에서의 dispositif(판결주문)와 구별해야 한다. 더욱이 이러한 단어들의 각각은 법적이든 그렇지 않든 라틴어의 disponere에서 원의를 찾을 수 있으며, 그 법적 성격은 별개의 개념을 둘러싼 단어군에서 어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한편 법률용어는 프랑스 고어에 속하면서 어휘적으로 완전히 구별되는 경우도 있다. 가령, cannaissance(선하증권)는 18세기에 connaissance(알기, 지각, 지식)와 동의어이었으나 해양법에서 그 사용이 전문화된 이래로 “선장이 어떤 상품을 수취하였거나 선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법률 프랑스어가 다른 대부분의 전문언어와 공유하는 또 다른 형태론적 특징은 sécurité sociale(사회보장)과 같은 합성적 명명의 사용이다. 이는 합성명사로서 간주할 수 있으며, 법률용어집에서 그 수를 보면 이에 해당하는 표제어가 수 만개가 있다. 게다가 동일개념에 대한 형태적 변형이 존재함에 따라 그 수는 더욱 증가한다. 그 예로서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는 용어로는 TVA, T.V.A., *taxe sur la valeur ajoutée*와 *taxe à la valeur ajoutée*가 있다.

다음으로 통사적 측면에서 법률 프랑스어는 더욱 프랑어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언어의 통사론은 형태론과 마찬가지로 언어의 실질적인 핵심에 해당한다. 프랑스어에서 법 및 과학과 관련한 통사론적 특징은 ① 비인칭 및 수동구문, ② 명제를 압축한 추상적 명사그룹의 사용빈도가 특별하다는 점, ③ 관용표현의 경향이 있는 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①의 측면은 특히 규범텍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모든 언어들에서 일반적인 규범문체로서 확인된다. ②는 특히 명사화로서의 변형 형태(가령, “*le principe selon la loi n’est pas rétroactive*”(법률은 소급하지 않는다는 원칙)를 “*le principe de non-rétroactivité de la loi*”(법률불소급의 원칙)와 같이 보다 간결한 명사그룹으로의 변형)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 점에서 프랑스 법이론은 추상적 표현에 대한 특별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의 측면인 관용표현은 앞의 두 측면과 같이 전체적인 문장이 아니라 주로 단어집단의 통사적 차원 또는 연사와 관련이 있다. 표현의 측면에서 보면, 주된 어려움은 단어와 문장 사이의 중간에 있는 이 차원에 있다. 즉 전문적 텍스트에서 어떤 명사가 어떤 동사 또는 어떤 형용사를 동반하는지가 문제된다. *disposition*을 예로 들면, *disposition à titre gratuit*(무상처분) 및 *disposition à titre onéreux*(유상처분)로 표현하며, *disposition gratuite*, *disposition onéreuse*라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다의적 법률용어들에 있어서, 동사의 사용은 관련 개념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예는 *prestation*에서 잘 나타난다. *fournir une prestation*(급부를 제공하다)에서 *prestation*(급부)은 채권채무법에서의 개념이며, *percevoir des prestations*(급여를 받다) 또는 *verser des prestations*(급여를 지급하다)은 사회법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언어에서 행해지는 이러한 차이로 인해 *prestation 1-prestataire 1*(급부제공자)과 *prestation 2-prestataire 2*(수급자)는 구분된다. 이러한 어휘적 취급은 *prestation 1*과 *prestation 2*의 상이한 구문구성에 의해 강화된다. 첫 번째 용어는 보충명사 그룹이 따르는 것이 전형적이

며(가령 *prestation de service*; 노무의 제공), 두 번째 용어는 관계형용사를 통상적으로 수반한다(가령 *prestations familiales*(가족수당) 또는 *prestations sociales*(사회수당)).

2. 개념적 측면

모든 언어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어도 다의성의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그렇지만 프랑스 법률용어는 다의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명확성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어떻게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는 세 종류의 규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하나는 역사적 논리이며, 다른 하나는 언어기능의 논리이고 마지막으로 개념의 논리인데, 가장 우월한 것은 마지막의 논리이다.

prêt(대차), *prestation de service*(노무의 제공) 및 *prestation de serment*(선서)은 역사적으로 볼 때 공통의 어원어로서 *praestare*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각각의 경우는 ‘제공되는 어떤 것’과 관계가 있다. *prêt-nom*(명의대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프랑스어는 두 가지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동일한 단어를 불편없이 사용한다는 것이다. 가령 영어에서는 *service*(노무)와 *benefits*(급부)라는 별개의 단어로서 각각의 개념을 표현하나 프랑스어에서는 *prestation de service*와 *prestations familiales*와 같이 *prestation*이라는 한 단어로서 두 개념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기원적 동족성은 통사론적인 흔적을 가진다. *prestation de service*(노무의 제공)는 언어학적으로 *prêter service*라고 표현할 수 없다면, *prestation de serment*은 *prêter serment*(선서하다)에 대응한다. 그렇지만, *prêter serment*은 법적 발화행위에서 필요한 관용표현일 뿐이며, 통상적인 프랑스어는 *faire un serment*으로 표현하는데 그친다. 이 경우 *prêter*(빌려주다)의 시니피에는 현재 ‘대여를 동의하다’(consentir un prêt)를 개념을 가지지 않는다. 선서자는 대여자(*prêteur*)가 아니기 때문이다.

법적 개념을 소쉬르의 주장에 따라서 하나의 형태에 부착된 하나의 시니피에로만 생각한다면, 동일한 단어인 *prestation*가 법률용어에서 네 가지의 서로 상이한 정의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Wüster의 주장과 같이 개념들은 (구체적 또는 추상적) 대상의 필요하고 충분한 특성들의 총체임을 인정하면 하나의 단어인 *prestation*에 네 가지의 개념이 존재하는 것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 사실 이 네 가지 개념의 각각은 법의 하위영역에 대응한다. 즉 “일반적인 채권채무의 목적”이라는 개념은 민법, “사회보장기관에 의해 부여되는 이익”이라는 개념은 사회법, “금전급부”라는 개념은 조세법, “선서하는 행위”라는 개념은 소송법에 각각 대응한다.

이러한 하위영역의 각각에서 *prestation*의 번역을 가능하게 하고 쉽게 하는 것은 *prestation 1*과 *prestation 2*가 정의되는 방식이 외국 언어에서 이에 상응하는 정의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대응성이 항상적인 것은 아니며, 법적 번역은 불일치성의 문제에 부딪칠 수 있다. 그러나 법은 점점 상이한 역사, 문화, 언어적 차이를 넘어 폭넓게 공유되는 개념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법적 개념의 국제화의 촉진으로 법기술 자체의 국제화뿐만 아니라 각각의 언어에서 이를 명명하는 용어의 일의성(一義性, *univocité*)도 촉진되고 있다. 이러한 일의성은 모호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거나, 특수한 통사적 조합을 통해 표현의 애매성을 제거하거나(예를 들면, *prestations sociale*), 전통적 용어의 재정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다의성을 차치하는 경우에 작용과 해당 주체를 결합하는 개념영역의 구축이 가능하게 된다. 즉, *prestation 1*은 *prestataire 1*과 연계되어 있으며 수익자를 의미하는 *prestation 2*와는 완전히 다르다. 단어들의 이러한 개념적 자율화는 명백히 구별되는 법적 실재의 명명으로부터 요구되는 것이다.

“자신의 재산을 파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프랑스어 *vendeur*(매도인)는 영어의 *seller*(매도인)와 완전히 동일하다. 그런데 *vendeur*는 백화점의 *vendeur*(점원)과 형태론적으로 동일하며 이로 인해 영어의 *seller*와

salesman(점원)간의 차이를 나타내지 못한다. seller와 salesman간의 차이는 또한 프랑스어에서도 준수되지만 여성형인 venderesse(매도인의 여성형)와 vendeuse(점원의 여성형)의 형태론적 범위 내에서만 그렇다. 그렇지만, 사회적 의사소통에서 남성형인 vendeur 1(매도인)과 vendeur 2(점원)간의 혼동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념적 영역은 언어간에 완전히 공유된다. 법적 의미에서 vendeur(매도인)은 “un disposant qui transfère à titre onéreux la propriété d’un bien”(재산의 소유권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처분자)라는 의미를 가지며, seller는 “transfers.....the property in goods to the buyer for a money consideration”라는 의미를 가진다. 물론 이러한 경우는 공학분야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법에서는 드물기 때문에 종종 “기능적 등가성”에 만족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한편 동일한 단어가 전문적 의미와 일상적 의미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은 전문성은 단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념 속에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II. 프랑스 법률용어의 범주별 분석

1. 범주별 분석의 의의

법령문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은 그 자체 법률어휘, 법률용어의 구성요소들이다. 법언어의 기초적 개체로서의 단어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먼저, 단어들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의미단위(unites significative)이다. 이 기능에서 볼 때, 각각의 단어는 그 자체로서 의미를 생산하고, 표시하기에 충분한 별개의 자율적인 하나의 언어개체를 이룬다.

다음으로 단어들은 법적 의미를 지닌다. 단어들은 법의 관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래에서 검토하는 단어들은 프랑스 법시스템에서 자신들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갖고 있다. 법적 의미의 탐지는 두 방향에서 이루어진다. 먼저 용어가 그 의미를 통해 법률용어에 속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어서 이 용어가 법적 측면에서 담당하고 있는

넓은 의미의 의미론적 모든 내용을 분류, 정리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접근은 법적 측면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용어들을 구분하여 법률 용어와 일상용어에서 하나의 의미를 가지는 모든 용어들을 일체가 되게 함으로써, 일상용어에 대하여 법률용어를 위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충적으로 두 번째 접근은 법률용어 내에서 이를 구성하는 용어들의 의미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단어들의 법언어에의 소속관계(appartenance)를 결정하고 그 법적 역할을 분석해야 한다. 법적 소속관계라는 측면에서의 접근은 단어들의 의미를 통해 단어들이 법률용어에만 속하는 것인지, 또는 일상용어에도 속하는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첫 번째의 경우를 배타적인 법적 소속 또는 간단히 배타적 소속이라 하고, 두 번째 경우를 이중적 소속이라 한다.¹⁹⁾ 아래에서는 Gérard Cornu의 *Linguistique juridique* 제2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프랑스 법률용어의 범주별 내용과 특징을 살펴본다.

2. 배타적 소속관계

프랑스어에서 어떤 용어들은 하나 또는 복수의 법적 의미만을 가진다. 이 단어들은 법적 관점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이 단어들은 법률용어 이외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이 단어들은 프랑스어 단어이지만, 그 의미를 통해 법언어에 배타적으로 속한다. 이는 범외적인 심지어 비유적인 의미조차 가지지 않는다. 배타적 소속의 이 단어들의 존재사실은 법언어의 특수성의 징표들 중 하나를 이룬다.

배타적 소속의 단어들은 그 구성요소들이 법령용어사전의 단어 목록에서 셀 수 있을 정도의 한정된다. 아래에서는 주제별로 이 그룹에 대해 소개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도록 한다.²⁰⁾

19) Gérard Cornu, *Linguistique juridique*, Montchrestien, 2000, p. 318.

20) Gérard Cornu, op. cit. pp. 68-74.

(1) 주제별 분류

1) 배타적 소속관계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단어들은 절차언어(사법언어)에 속한다.

Ampliatif 등본의	Greffier 법원서기
Assertoire (선서증언이) 확인적· 긍정적인	Inquisitoire 규문주의적, 직권주의적
Audiencer 기일(특히 구두변론기 일)을 정하다	Inquisitorial 규문적인, 직권주의 적인
Audiencier 정리	Interjeter 항소하다
Attraire (원고가 피고를 통상의 토 지관할에 의한 것과는 다른 법원 에) 호출하다	Interlocutoire 선행의(판결)
Cassation 파기	Intimation (항소인이 피항소인에 대하여 하는) 항소통고
Colitigant (소송의) 공동당사자	Intimé 피항소인
Comparant 출두하는 자	Irrépétible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 는 비용의
Compéter ~의 관할에 속하다	Juratoire 선서에 의한
Compromissoire 중재	Licitation 환가처분
Conciliatoire 화해의, 조정의	Liciter 공유재산을 경매하다
Condamnatoire 유죄판결의	Litispendance 사건계속
Décisoire 결송적인	Monumenter 법률행위를 공증증서 로 작성하다
Déclinatoire 관할의 항변	Pétitoire 부동산물권확인소송에 관한
Déclaratif 확인적인	Placet (법원에 대한) 심리청구서
Déport (재판관의) 회피	Possessoire (부동산의) 점유에 관한
Émender (항소심판사가 원재판을) 취소·파기하다	Procureur 대리인, 주임검사관
Ester 출정하다	Postulation (절차진행행위로서의) 대송
Estoppel 금반언	Pourvoi 상소
Exequatur 집행명령	Processualiste 절차법학자
Extradition 범인인도	Processuel 소송에 관한
Exciper 항변하다	Promissoire 서약을 내용으로 하는
Exécutoire 집행력이 있는	Prud'homal 노동법원에 관한

제 3 장 프랑스 법률용어의 법언어학적 특징

Prud'hommes 노동법원판사, 노동법원	Réintégrande 점유회복소권
Réassignation 재소환	Rescioire 재심청구
Réceptice 통지를 요하는	Supplétoire 보충된
Recréance 소환장	Surarbitre 제3중재인
Reconventionnel 반소청구	Suspensif 정지의
Récursoire 구상소송	

2) 재산과 의무에 관한 일반이론

Acquéreur 취득자	Coutrage 중개업
Acquisitif 취득의	Créancier 채권자
Admnicule 간접·정황증거	Dation 대물변제
Aliénabilité 양도가능성	Dation en paiement 대물변제
Aliénable 양도할 수 있는	Débiteur 채무자
Aliéateur 양도인	Délictuel 불법행위에 관한
Arrérages (연금 등의 기한을 초과한) 정기지급액	Délictueux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Captatoire (증여, 유증의) 사기의	Dirimant 무효원인이 되는
Cédant 양도인	Dirimer 무효로 하다
Cessibilité 양도가능성	Distrat 계약해제의 합의
Cessible 양도할 수 있는	Dol 사기
Cessionnaire 양수인	Dolosif 사기의
Codébiteur 공동채무자	Extracontractuel 계약외적인
Coéchangiste 재물교환의 당사자	Fongible 대체할 수 있는
Collusoire 공모한	Illégal 위법의
Commettant (피용자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용자	Illégalité 위법성
Consumptible 소비가 가능한	Illicéité 위법성
Contreprestation 반대급부	Illicite 위법의
Contreseing 부서	Impenses 지출, 부동산유지비
Coobligé 공동채무자	Inaliénabilité 불가양도성
	Inaliénable 양도할 수 없는
	Incessibilité 불가양도성
	Incessible 양도할 수 없는

Instrumentaire 증서	Rédhibition (목적물의 하자에 의
Irréfragable 번복할 수 없는	한) 매매계약의 해제
Licéité 적법성	Réfragable 반증이 허용되는
Licite 적법한	Rémérer (환매약관에 의해) 도로사다
Nue-propriété 허유권	Rendant compte 청산인
Oyant compte 수지보고 수리자	Répétition de l'indu 비채변제
Pollicitation 청약	Rescinder 취소(해제)하다
Préemption 선매권	Rescision (과잉손해를 이유로 하
Procuration 위임장	는 법률행위의) 취소
Quasi-contrat 준계약	Retrocession 환부
Quasi-délit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Stipulation 약정
Quasi-usufruit 준용익권	Subrogation 대위
Reddition (군대, 도시 등의) 향복,	Synallagmatique 쌍무의
명도	Usucapion 취득시효

3) 상속법

Ab Intestat 무유언	Exhérédation 상속권박탈
Adition d'hérédité 상속의 승인	Fideicommiss 신탁적 계전처분
Avancement d'hoirie 상속분의	Hoirie 상속
선도	Indivisaire 공동상속인
Cancellation 취소	Légataire (유증) 수유자
Codicille 유언보충서	Nuncupatif 구두의
Coïndivisaire 공동상속인	Olographe 자필의
Coliciant 공동경매인	Pétition d'hérédité 상속회복청구
Comourant 동시사망자	Préciput 선취권
Deshérence 상속인의 부존재	Préciputaire 선취권에 관한
Dévolutif (권리, 재산의) 이전을	Quotité disponible 자유분
생기게 하는	Réservataire 유류분
Donataire 수증자	Saisine 유산점유
Donateur 증여자	Successible 상속할 수 있는
Dotal 지참금의	Testateur 유언자
Dotalité 지참금제도	

4) 금융관련법

Acquit 영수증	Délaissement 위부
Anatocisme 복리법	Dettier 체납유치
Antichrèse 부동산질	Domiciliaire 유가증권 지불인
Cambiaire 환어음거래의	Fidejusseur 보증인
Cautonnement 보증계약	Fiduciant 신탁적 양도인
Cédule hypothécaire 저당증서	Fiducie 신탁적 양도
Chirographaire 사서증서	Hypothécaire 저당권에 의해 보증된
Cofidejusseur 공동보증인	Moratoire 지연의
Collocation 채권의 변제순서	Nantissement 질
Contre-passation (부기의) 기입	Pignoratif 매매계약을 가장한
Crédit-bail 장기임대차	Prôtet (상업증권에 관한) 거절증서
Crédirentier 연금수령권리자	Sequestre 계쟁물기탁
Créditeur 대주	Stellionat 사기적 전매
Débirentier 정기금채무자	Stellionataire 사기적 전매인
	Warrant 동산담보증서

5) 특수계약법

Affermage (농지의) 임대차	Emphytéote 부동산의 장기임차권자
Amodiation 국유지임대차	Emphytéotique 부동산의 장기임 대차와 관계하는
Bailleur 대주	Exponse 농지차지권 포기
Colon partiaire 분익소작제	Location 임대차
Colonage 소작제	Louage (물건의) 임대차
Colonat 소작제	Loyer 임대료
Emphytéose 장기 부동산임대차	

6) 기타 법분야

Angarie 비상징용	Anticonstitutionnel 위헌의
Anomie 무질서	Arretiste 판례평석자

Cautèle 신중	Expectant 기대하는
Constitutionnaliser 합헌성을 여하다	Extrapatrimonial 비재산적
Constitutionnalité 합헌성	Flagrance (범죄 등의) 명백
Constitutionnellement 헌법에 따	Franchisage 프랜차이즈계약
Contumace 결석재판	Franchiseur 프랜차이즈 모회사
Contumax 결석자	Garnissement 설비
Correctionnalisation 경죄화	Hétéronomie 타율
Cotitularité 공동명의	Légitimant 준정의
Criminalisation 범죄화	Légitimation 준정
Criminaliste 형법학자	Multipropriété (아파트 등의) 공 동소유
Débudgétisation 권한위양	Ombudsman 옴부즈만
Décriminalisation 경죄화	Parère 상사관행에 관한 공지사실 확인서
Dénationalisation 비국유화	Plurilégislatif 다면적 적용법
Défends 금지	Placier 방문판매인
Dévolutaire 권리·재산의 수익자	Récriminatoire 비난하는
Dispache 해손정산서	Salarial 보수의
Drogman 선택관	Surestaries 초과정박
Ducroire 지불보증	Staries 정박기간

(2) 배타적 소속관계의 분석

왜 이 단어들은 전파되지 않았는가? 왜 이 단어들은 일상언어에서 전혀 달리 사용되지 않았으며, 법률용어에서 이 단어들이 차지하는 위치는 무엇인가? 이 단어들은 파생되지 않은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표지를 보이고 있는가? 아래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도록 한다.²¹⁾

1) 기 원

배타적 소속관계에 속하는 단어들 가운데 새로운 단어들은 거의 없다. 예외적으로 anomie(무질서), hétéronomie(타율), juridicité(법대상

21) Gérard Cornu, op.cit. pp. 72-74.

성), constructible(건축할 수 있는), salarial(보수의) 등은 대부분이 학술적 또는 기술적으로 형성된 신조어이다. 이와 같이 신조어인 점, 학술적, 기술적 기원을 가진다는 점 등은 이 단어들이 전파될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대부분의 모든 단어들은 매우 오래되었기 때문에 전파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졌을 것이므로 그러하지 못한 것은 다른 점에서 찾아야 한다.

2) 사 용

이 단어들은 기술적 의미에서나 파생적 의미에서 일반인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으며, 전문가들만이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들 중에서조차 그 이용은 매우 다양하다.

먼저 어떤 단어들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 단어들이 지시하는 사물이 역사적이거나 적극적으로 소멸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하는 단어들은 colonat(소작제), fidéicommis(신탁유증), nuncupatif(구두 유언의), adition d'hérédité(상속의 승인) 등이 있다.

다음으로 다른 단어들은 매우 적게 사용된다. 그 이유는 이 단어들이 지시하는 적극적인 사물은 법 실태에서 매우 예외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antichrèse(부동산질), emphytéose(장기부동산임대차), abandonnement(점유의 포기), dettier(채납유치) 등의 단어들이 해당한다.

그리고 또 다른 단어들은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그 이유는 법률가 집단 내에서 모두가 이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매우 제한된 직업 집단(의회, 공증인 등)에서만 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속하는 단어들은 hoirie(상속), oyant compte(수지보고 수리자), audiencer(기일(특히 구두변론기일)을 정하다), irrépétible(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의)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고어이기 때문에 쓰이지 않는 단어들이 있다.

그렇지만 배타적 소속관계에 속하는 단어들의 대부분은 위와 같은 범주들에 속하지 않는다. 즉 배타적 소속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단어들은 여전히 사용되고 있으며 모든 법률가들에게 알려져 있다. 다시 말

하여 모든 법률가들이 이 단어들이 지시하는 것을 명명해야 할 때 사용하는 것은 이 단어들이다. 예를 들면, préciput(선취권), saisine(유산 점유), séquestre(계쟁물기탁), licitation(환가처분), dation(대물변제), olographe(자필의), cambiaire(환어음거래의) 등이다. 이 단어들이 전파되거나 파생되지 못한 이유는 다른 측면에서 찾아야 한다.

3) 가치(valeur)

이 단어들이 파생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시니피앙의 폐쇄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단어들의 대부분은 그 자체 전혀 환기력(pouvoir d'évocation)을 가지지 않는다. 이 이유는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닌다. 먼저 이 단어들은 그 의미를 드러내지 않는다. 즉 시니피앙은 시니피에를 명확히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난해함 속에서 이 단어들의 형태론적 특성은 전혀 중계되지 않는다. 이 특성은 비유적 의미의 실마리인 이미지를 창출할 수 없게 한다.

그렇지만 배타적 소속관계에 속하는 단어들의 모두가 그러한 것은 아니다. 그 중에는 créancier(채권자), débiteur(채무자), délictuel(불법행위에 관한), licite(합법의), illicite(위법의), légal(적법한), illégal(불법의), aliénable(양도할 수 있는), cessible(양도할 수 있는) 등과 같이 명확하고 상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다. 이러한 단어들, 보다 일반적으로는 배타적 소속관계에 속하는 모든 단어들이 이러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또 다른 이유에 기인한다.

4) 지시대상

배타적 소속관계의 모든 단어들은 정확한 기술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단어들은 법시스템의 특징요소를 매우 정확하게 지시한다. 이러한 성격은 두 가지 특징을 포함한다. 첫째, 단어와 그 지시대상간의 관계가 매우 엄정하다는 것이다. 둘째, 매우 법적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그 지시대상에 상당하는 것이 없다. 이러한 부착력과 지시대상

의 법적 속성의 결합은 이 단어들의 모든 파생을 방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 단어들의 시니피앙은 하나의 특수한 법적 사물에 대한 유일한 지적 표상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적 밀도의 완전함은 해당 단어들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차단한다. 이와 같은 특수성은 구체적 용어들(cédule; 증서, acquit; 영수증, codicille; 유언보충서) 및 추상적 용어들(incessibilité; 불가양도성, synallagmatique; 쌍무적인, quasi-contrat; 준계약, aliénabilité; 양도가능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근하기 어려운 용어들(chirographaire; 사서증서, déclinaire; 관할의 항변, adminicule; 간접·정황증거, pétitoire; 부동산물권확인소송에 관한, litispendance; 사건계속)에서 뿐만 아니라 보다 개방된 용어들(donateur; 증여자, donataire; 수증자, cédant; 양도인, cession; 양도, cessionnaire; 양수인)에 있어서도 그렇다. 이는 배타적 소속관계에 속하는 단어들의 가장 강력한 공통점이다.

5) 경쟁효과

이러한 소속관계에 있는 단어들은 전과과정에서 자신을 앞서거나 배제하는 동의어는 아니지만 자신과 유사한 단어들을 가지고 있다. 배타적 소속관계에 있는 단어가 확산되지 않았다면, 이는 이 단어의 가까이에서 이 단어에 다소 상응하는 그러나 보다 명확하고 보다 환기력이 있는 다른 단어들이 그 기능을 완수하였으며, 법적 의미를 가지고 또한 파생의미를 생산하면서 일상용어 속에 침투하였음을 의미한다.

즉, abandonnement(포기)은 abandon(포기)으로 antichrèse(부동산질)와 nantissement(질)는 gage(담보)로 stipulation(약정)은 clause(조항)로 hoir(상속인)은 héritier(상속인)로, incessibilité(양도불가능성)는 indisponibilité(처분불가능성), pollicitation(청약)은 offre(청약), synallagmatique(쌍무적인)는 réciproque(상호의) 또는 mutuel(상호의), procuration(위임장)은 mandat(위임)로 대체되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쟁효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환기력이 낮은 단어들은 기술적 의미에 봉쇄된다는 것이다.

(3) 배타적 소속관계의 의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타적 소속관계에 있는 단어들의 아주 까다로운 특징들은 법의 핵심에 해당하는 것들인가. 즉 이러한 특징들은 법적 현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이 그룹은 유용하고 흥미로운 단어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법시스템을 표상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이 배타적 소속관계에는 법의 핵심적인 것들을 지시하는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크게 보아 이 관계에는 법에 있어 한계적이거나 부차적인 요소들만이 포함되어 있다. 이 그룹은 법률용어 속에서 차라리 고어집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단어들로서는 법을 배울 수 없다. 역설적이게도 언어적으로는 가장 법적인 단어들이 전체적으로 가장 법적이지 않는 것이다.

3. 이중적 소속관계

법률용어의 거의 대부분은 일상언어에서도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법적인 그것과 동일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법률용어의 일상언어에서의 의미는 법적인 의미와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이 경우, 동일한 용어는 그 의미들의 복수성에 의해 법언어와 일상언어의 양쪽에 걸쳐있다. 이를 이중적 소속관계라 부를 수 있다. 이중적 소속관계에 있는 용어들은 법언어와 일상언어에서 각각 적어도 하나의 의미를 가지는 용어들을 말한다.

동일한 단어가 법언어와 일상언어의 어느 하나에서 또는 양쪽에서 부분적으로 일치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서 복수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하나의 단어가 법언어에서 복수의 법적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내부적 다의성(polysémie interne)이라 부를 수 있다면, 이중적 소속관계에 있는 경우를 이와 대비하여 외부적 다의성(polysémie externe)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외부적 다의성은 법적 의미가 부여된 한 단어가 또한 법 외적 의미를 갖추고 있기만 하면 존재한다. 내적 다의성에 관해서는 후술하고 여기서는 외부적 다의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외부적

다의성에 대한 연구는 전체언어에서 법률용어와 자연언어의 일상적 사용과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용어의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중적 소속관계에 속하는 단어들의 내부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법적 의미가 주된 것이고 법 외적 의미가 파생적인 단어들이고, 다른 하나는 이와 반대로 일반언어에서 주된 의미를 가지는 단어들이다. 첫 번째 범주를 법적 소속이 주된 경우라 하고, 두 번째 범주는 잔여적인 것으로 분류한다.²²⁾

(1) 법적 소속이 주된 경우

어떤 다의적 용어들은 법률용어 속에서 주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경우 이 용어들은 일반언어에서는 부차적 의미로 사용된다. 이러한 법적 소속이 주된 경우란 해당 용어가 법의 영역에서 첫째 의미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즉 단어가 법률용어에서 강한 의미를 가지며 일상언어에서는 파생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법언어가 일반언어의 영역에서 파생적 의미를 발생시키고 사용된다는 것은 일반언어에 대한 법적 언어의 특수한 기여를 보여준다. 이러한 기여는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표본적으로 몇 개의 단어에 대해 검토하는데, 소속관계의 이중적 측면에 따라서 법률언어에서 이 용어들이 표현하는 것, 그리고 이 용어들이 일상언어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검토한다.²³⁾

1) 법언어에서 이 단어들의 위치

자신의 고유한 의미인 강한 의미를 법의 영역에서 표현하는 법적 소속이 주된 단어들은 법시스템의 핵심적인 분야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각각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단어들은 다음과 같다.

22) Gérard Cornu, op.cit. pp. 74-93.

23) Gérard Cornu, op.cit. pp. 75-80.

◆ 기초어휘에 해당하는 주요어들

Droit 법	Permission 허가
Justice 사법	Interdiction 금지
Loi 법률	Sanction 제재
Autorité 권력, 권한	Prérogative 권능
Règle 법규범	Dérogação 적용제외
Règlement 명령	Valable 유효한
Gouvernement 정부	Valid 유효하게 형성된
Équité 형평	Légitime 정당한
Autorisation 허가, 인가	

◆ 사법용어의 주요어들

Juge 법관	Requête 신청
Juger 재판하다	Plaideur 소송인
Jugement 재판, 판결	Plaidoirie 진술
Jurisdiction 재판권	Témoin 증인
Tribunal 법원	Témoignage 증언, 진술
Compétence 권한, 관할	Procès 소송
Contestation 이의신청, 항변	Procédure 소송절차
Contentieux 소송	Débat 변론, 심문
Avocat 변호사	Sursis 연기, 유예
Arbitre 중재인	Transaction 화해
Arbitrage 중재	Sentence 심판, 판결
Audience 기일, 법정	Statuer 명령하다, 판결하다
Magistrat 사법관	Recevable 수리가능한
Magistrature 사법관직	Juste 적법한, 합법적인

◆ 주요법률거래, 일상 법률행위를 가리키는 주요어들

Contrat 계약	Clause 조항, 약관
Convention 약정, 계약	Dette 채무
Promesse 낙약	Païement 지불, 변제

제 3 장 프랑스 법률용어의 법언어학적 특징

Aliénation 양도	Legs 유증
Acquisition 취득	Gage 동산담보
Rente 정기적인 수입, 연금	Garantie 담보, 담보책임
Donation 증여	Emprunt (대차계약에 기초한) 차금
Don 증여, 증여의 목적물	Prêt 대차
Testament 유언	Caution 보증인

◆ 기타 다른 주요어 그룹

Patrimoine (특정목적을 위한) 특 정재산체,	Héritier 상속인
Héritage 상속재산, 유산	Cohéritier 공동상속인
Usufruit 용익권	Tutelle 후견
Privilège 선취특권	Délit 불법행위
Divorce 이혼	Préjudice 손해

이상의 단어들이 지니는 성격과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주요어이다. 위의 단어들은 법의 기초적 개념을 갖고 있으며 법시스템의 핵심에 있다. 이 단어들은 법시스템의 범주들을 구성하고 기본적인 원리(forces essentielles)를 나타낸다.

②명확한 단어이다. 간결한 이 단어들은 바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단어들은 그 고유한 의미에서 쉽게 이해된다. 그렇다고 하여 이 단어들에 정확한 기술적 의미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단어들의 경우 기본적 개념에 내재되어 있는 법정신이 명백한 것이다.

③사회적 경험을 가진 단어들이다. 이는 이 단어들 자체가 많이 사용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단어들이 지시하는 사물들이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있어 많은 사용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 기초적인 언어총체는 사회적 인식과 관련하여서는 기초적 지식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며 법질서에서는 법의 관문이라 할 수 있다. 사물의 바탕에서 추출된 이러한 힘은 또한 매력적인 언어표시에 의해 고무된다. 이 단어들은 대개 간결하고, 단음절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와 닿는 소리를 가지고 있다(don; 증여, droit; 권리, loi; 법률,

legs; 유증, prêt; 대차, gage; 동산담보, règle; 법규, juge; 법관, témoin; 증인, arbitrage; 중재, sentence; 판결). 이러한 특징은 파생을 위한 발판으로 기능한다.

2) 일반언어에서 이 단어들의 가치

법적 소속이 주된 단어들이 일상언어에서 어떠한 파생적 의미를 가지고 이러한 법 외적 사용을 통해 일상언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⁴⁾

① 대부분은 비유적인 언어에 속한다. 이 단어들은 일상언어에서 일종의 말투가 되었으며 은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언어의 이러한 비유들은 독창적인 전문적 의미를 전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적 비유는 전문적 의미에 매우 가깝다. 언어적 비유는 법률용어의 환기력 또는 보다 정확히는 법률용어가 포착하고 그 영향 아래에서 계속하여 작동하는 측면들의 가치들을 보여준다.

언어비유는 그것이 차용하는 이미지를 언제나 보여준다. 가령, 일상언어에서 정당의 분열을 표현하기 위해 “divorce”(이혼)을 사용하는데 이는 rupture(단절)을 환기시킨다. 재산에 설정된 담보가 그 재산을 위협하는 것에 비유할 만한 위협이 재정적 또는 정치적 상황에 축적될 경우 이를 이른바 “hypothéquée”(저당잡힌, 난처한)라 한다. 가족을 부유하게 하고 안정되게 한다는 의미의 “patrimoine”(가산)으로부터 보존하여 이익을 남겨야 한다는 가치의 관념이 차용되어 일상언어에서 patrimoine는 “문화” 또는 “도덕유산”으로 사용된다. 이 이외에도 “déguerpissement”(과세 또는 물상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부동산 동산의) 권리포기)은 fuite(도주)로, “jurisdiction”(재판권)은 권한, 권위(autorité)로, “tribunal”(법원)은 비판의 모든 원천으로, “plaidoirie”(진술)는 유리한 모든 개입으로, “tutelle”(후견)는 약간 억압적인 모든 권위로, “legs”(유증)은 모든 자선으로 각각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차용은 선택적이다. 파생으로 인해 단어 본래의 의미가 상실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파생은 단어의 본래적 개념에서 매우 단편적인 측

24) Gérard Cornu, op.cit. pp. 77-80.

면만을 채취하는 경우가 많다. 일상언어에서 hypothéque는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보증’이 아닌 채무자에게 과해지는 ‘부담’을 위해 사용되며, divorce(부부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해 법률이 정하는 원인과 절차에 따라 법원이 선언하는 혼인의 해소)는 ‘사법메카니즘’이 아닌 ‘분리’의 관념으로, patrimoine는 ‘경제적 부’가 아니라 ‘보존해야 할 가치’ 등에서 그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비유는 어떤 관계 하에서만 행해지며, 이 관계 하에서 비유는 해당 단어의 환기력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비유는 법적 용어와의 비교를 통하여 그 의미를 단순화하는 것이자, 법적 용어의 여러 측면들 가운데 하나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이러한 선택을 하게 하는 동기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해당 법률용어에 대한 사회적 멘탈리티를 포착할 수 있고, 우선시하는 이미지를 통하여 법이 사회적 멘탈리티에 의해 인식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②법적 소속이 주된 단어들 가운데 어떤 단어들은 일상언어에서는 종종 법적 의미와는 동떨어진, 분리된 독립적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이 단어들은 본래의 전문적 의미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환기시키지도 않는다. 이 단어들은 전달하는 의미가 법적 이미지의 중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정신에서 직접오기 때문에 고유한 의미를 표현한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일반언어에서 사용될 때 그 법적 속성은 약화된다. 즉 “juger”(재판하다)는 일상언어에서 apprécier(판단하다), estimer(평가하다)의 의미로, “arbitre”(중재인), “arbitrer”(중재하다)는 arbitre des élégances(멋을 감상하는(아는) 자)로, “débat”(변론)은 discussion(토론)으로, “novation”(경개)은 renouvellement(혁신)으로, “sursis”(유예)은 rémission(면죄), gain de temps(보류)으로, “témoin”(증인)은 comme on peut l’être de son temps(목격자)으로 사용된다.

③어떤 법적 표현은 일상언어에서 일상적인 관용구로 되었다.

Mettre en cause 법정에 끌어내다. 문제로 삼다. 의심(비난)하다.

Sans autre forme de procès 정식절차를 밟지 않고, 간단히

S’inscrire en faux contre 부인하다, 이의를 제기하다.

Séance tenante 개회 중에, 회의 중에
 À tour de rôle 차례로, 번갈아
 Sur le champ 당장, 즉석에서
 Prendre fait et cause 변호하다, 지지하다
 À bon droit 정당하게, 당연히
 Sous bénéfice d'inventaire 후에 확인한다는 조건부로
 Être sur la sellette 고소당하다. 비평의 대상이 되다
 En connaissance de cause 사정을 잘 알고
 Les tenants et aboutissants 인접지, 자세한 내용, 자초지종
 En tout état de cause 소송이 어떠한 단계에 있어도, 어쨌든, 하
 여간

앞의 그룹의 단어들과 마찬가지로 이 표현들은 법적 의미가 없다. 심지어 이 표현들을 일상에서 사용할 때, 그 본래적 기억은 사라진다. 이 표현들의 거의 대부분은 절차법에서 유래한다. “cause”는 여기서 소송을 가리킨다는 것은 기억되지 않는다. “séance tenante”, “sur le champ”은 먼저, 그 자리에서 판결하는(판결을 이송하지 않고) 또는 현장에서 판결하는 판사에 대해 사용되었음을 또는 “sellette”는 증인이 배심원에게 증언하기 위하여 앉게 되는 조그만 걸상임을 “rôle”는 목록(명부)이었음 등은 기억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러한 파생을 제외하고 일상적 의미는 소송행위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 행위를 일상의 사물로 매우 충실히 전환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즉 여기에는 “mettre en cause”, “sous bénéfice d'inventaire”, “tour de rôle”, “prendre fait et cause”등이 해당된다. 법과 일상의 영역에서 의미의 유사성은 “en connaissance de cause”, “séance tenante”, “sur le champ”에서 발견되며, 심지어 법적 기초와 관계없이 그러나 정당한 질서에 준거하여 à raison, à juste titre의 의미에서 사용되는 “à bon droit”에서도 발견된다. 이는 마치 대중적 표현이 소송메카니즘을 일상적인 일에 적용하기 위하여 그 에센스를 발췌한 것처럼 보여진다.

(2) 기타 이중적 소속관계

이 잔여적 분류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일반용어와 법률용어에 동시에 속하는 그러나 앞의 경우와는 달리 법률용어가 일반용어를 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잔여적 분류에 해당하는 단어들은 대부분이 일반언어에서 주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법언어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획득한 경우이다. 이 그룹은 단연 가장 많은 단어들을 포함하고 있고 또한 취급하기가 가장 어렵다. 가장 많고 가장 중요한 이 측면에 대해 검토하게 되면, 외부적 다의성은 복잡하고 중대한 언어학적 현상임을 알 수 있다. 복잡한 이유는 법적 의미와 법 외적 의미가 언제나 동일한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법률용어가 일상언어와 유지하는 의미론적 접촉의 중요성은, 사회적 소통에서, 가치와 목적의 문제를 제기한다.²⁵⁾

1) 의미관계의 유형

이중적 소속관계란 정확히 말하자면 동일한 단어가 일상언어에서 사용되는 의미와는 다른 의미를 법으로부터 부여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먼저 넓은 의미의 이중적 소속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반언어와 동일한 의미에서 법언어가 사용하는 단어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법언어와 일상언어에서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이중적 소속관계의 단어들

대개의 경우에 수많은 단어들은 법에서 사용될 때에 일반언어가 부여하는 강한 의미를 유지한다. 여기서 법률용어는 일상적 단어를 일상언어에서와 같이 그 주된 의미를 매우 충실히 사용하면서 일상용어를 바꾸지 않고, 그 의미를 변화시키지 않고 사용하는데 그친다. 이 단어들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다음의 것들이다.

25) Gérard Cornu, op.cit. pp. 80-93.

Constater 확인하다, 인정하다	Proposition 제안, 제출
Constatation 확인, 검정	Énoncé 표명, 언도, 진술, 내용, 조문
Examen 심사, 조사	Énoncer 표명하다, 언도하다
Examiner 조사하다, 심리하다	Exposé 설명, 보고
Vérifier 확인하다, 검사하다	Exposer 설명하다, 보고하다
Vérification 검사, 확인, 증명	Développer 발달하다, 상술하다
Doute 의심, 의혹	Développement 발달, 상술, 발전
Certitude 확실함, 확신	Démontrer 논증하다, 증명하다
Incertitude 불확실함	Démonstration 논증, 증명
Vraisemblance 진실임직함,	Objecter 반대하다
Vraisemblable 진실임직한	Objection 반론, 이의
Probabilité 가능성	Réplique 항변
Probable 가능성이 있는	Répliquer 항변하다
Supposer 가정하다, 위조하다	Argument (법률상의) 주장, 논증,
Supposition 가정, 위조	논법, 해석
Hypothèse 가정, 가설	Argumenter 주장하다, 논증하다
Présumer 추정하다	Argumentation (법률상, 사실상의)
Indice 정황증거, 지수	주장, 논증
Document 문서, 기록	Discuter 토의하다, 심의하다
Établir 제정하다, 입증하다, 창설하	Discussion 토의, 심의, 변론
다, 작성하다	Réfuter 반박하다
Prouver 증명하다, 입증하다	Réfutation 반박, 반론, 반증
Exact 정확한	Raison 이성, 이유, 동기, 논거, 비
Inexact 부정확한	례, 분담금
Sincère 성실한, 공정한	Raisonner 논증하다, 추론하다
Spontané 자발적인, 자율적인	Raisonnement 추론, 논증, 논법
Étude 검사, 조사, 연구	Admettre 인정하다, 승낙하다, 수
Étudier 검사하다, 조사하다, 연구	리하다
하다	Rejeter 각하하다, 기각하다
Considérer 고려하다	Écarter 배제하다, 제외시키다
Considération 고려, 중요성	Concéder 양도하다, 허가하다, 인
Observer 준수하다, 관찰하다, 지	정하다
적하다	Affirmer 확인하다
Observation 준수, 지적, 관찰	Affirmation 확인
Proposer 제안하다, 제출하다	Nier 부정하다

Négation 부정, 거절	Induction 귀납, 유추, 유도
Contredire 반박하다	Conséquence 결과, 영향, 결론
Contradiction 반론, 항변	Corollaire 당연한 결과
Déduire 공제하다, 추론하다	Évidence 명백성
Déduction 할인, 공제	Conviction 확신
Induire 귀납하다, 유발하다	A fortiori 하물며

이 리스트에 있는 모든 단어들은 인간사고의 기본적인 두 과정, 즉 사실의 확인과 주장에 대한 토론과 결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단어들은 증명적 성질을 가지거나 논리적 성질을 가지거나 또는 양쪽의 성질 모두를 가진다. 이는 모든 관찰수단을 이용하여 어떤 사실의 존재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 또는 모든 추론방식을 통하여 어떤 주장의 정당성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 인간사고가 이용하는 주요한 도구들이다.

이 점에서, 법언어가 자신의 기본적인 작용을 법적 현실에 적용함에 있어서, 이러한 도구단어들을 그 공동적 의미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사용한다. 법언어는 도구단어들을 그 힘이나 가치를 변질시키지 않고 그 고유한 의미에서 그대로 전환시킨다.

이 순수한 언어학적 관찰은 법의 사명에 대한 인지, 보다 일반적으로 법적 사고의 기능적 다양성에 대한 파악을 위하여 중요하다. 법을 인식하는 것은 법적 사고에 고유한 것이다. 그렇지만, 또한 다음과 같은 것도 법적 사고에 맡겨져 있다. ①법규가 적용되는 것이 예정된 사실들에 대해 확인하는 것, ②이러한 적용이 행해지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근거를 설명하는 것이 그러하다. 즉 법률가가 법을 안다면, 사실을 확인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하는 것 또한 법률가의 몫이다. 그런데 법에 대해 아는 것이 법률가의 전유물이라고 하더라도, 법률가가 확인하거나 주장할 때, 법률가에게 작동하는 사고방식은 모든 과학 또는 도덕분야의 모든 연구자들에게 있어 어떤 명제에 대한 참 또는 정당화에 대한 증명을 이끄는 사고방식과 다르지 않고 정확히 동일하다. 법률용어가 공통적 사고에 대한 용어들을 이용하는 것은, 법적 사고가 그 자체에 증명과 논리의 공통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 법적 의미가 변경되거나 혹은 그렇지 않고 공동적인 총칭적 의미의 특별한 전환을 나타내는 단어들

흔히, 법언어는 총칭적 의미가 부여된 일반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그 단어의 성질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이 과정에서 법적 사고는 분석적 사고라는 보편적 도구를 이용한다,

Principe 일반원리, 일반규범	Qualification 법적 성질결정
Nature 법적 성질	Opération 법률행위, 작용, 사고, 거래
Essence 본질	Acte 행위, 서면
Substance 실체	Fait 사실, 행위
Matière 목적, 사항, 구성요건	Intérêt 이익, 이자
Qualité 신분, 자격, 자질	Valeur 가치, 가격, 효력, 증권, 주식
Fond 실체, 실질	Mérite 가치, 정당성
Forme 형식	Aptitude 능력, 자격
Sujet 주체	Puissance 권력
Objet 목적	Pouvoir 권력, 권능, 권한
Cause 원인	Capacité 능력
Motif 동기, 이유	Incapacité 무능력
Mobile 동기	Besoin 필요
Intention 의도	Protection 보호
Volonté 의사	Contrôle 검사, 감사, 관리, 감독
État 상태, 상황, 신분	Avantage 이익
Ordre 질서, 명령	Profit 이익, 이득
Catégorie 범주, 부문, 계층	Gain 이익, 수익
Élément 요소, 요건	Bienfait 선행, 무상의 행위
Mesure 조치	Œuvre 작업, 저작, 작품, 공사
Rapport 반환, 관계, 수익, 취소	Ouvrage 일, 공사, 건조
Relation 관계, 진술	Ressources 자재, 재산, 자금, 자원
Moyen 방법, 이유	Chose 물건, 사항, 문제
Modalité 태양, 방식	Bien 재산
Mode 방법	Usage 관행, 관습, 사용
Degré 등급	Jouissance 사용, 수익
Origine 기원, 원인, 출신, 원산지	

제 3 장 프랑스 법률용어의 법언어학적 특징

Défaut 불출석	Unilatéral 일방적인
Vice 하자, 결함	Bilatéral 쌍방적인
Violence 강박, 폭력, 폭행	Oblique 채권자대위권
Abus 남용	Direct 직접의
Erreur 착오	

이 단어들의 대부분은 일상언어와 법언어에서 복수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복잡함을 제외하고 생각하면, 법적 의미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법질서에 적용되는 하나의 일반적인 총칭적 의미에 상응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법 외적 의미와 법적 의미는 속(genre)과 종(espèce)의 관계에 있다. 그렇지만, 그 사용의 법적 특수성은 법적 의미가 일반적 의미와의 관계에서 매우 특수하고 기술적인 성격을 가질 만큼 해당 단어에 많은 특수성을 가지게 한다. 계약성립 이론에서 erreur(착오)와 violence(강박)는 각각 의사의 잘못된 표현 및 강압의 일종이지만, 이들은 법적 성질을 가지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요구하는 구성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착오나 강박, 즉 동의의 하자(vice de consentment)가 합의(convention)의 무효를 발생시킨다. 채무의 원인(cause de l'obligation)은 목적인(cause final)의 일종이다. 그러나 이러한 총칭적인 결함은 그 정의를 철저히 검토하지 못한다. 그 정의는 cause가 cause-mobile(원인-사유)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체를 가질 수 있다. 동일한 것으로는 capacité(juridique)(법적 능력), contion de forme ou de fond d'un acte juridique(법률행위의 형식적 또는 실체적 조건), objet d'une obligation(채무의 목적), erreur sur la substance(목적물의 본질에 관한 착오), nature(juridique)(법적 성질), qualification(juridique)(법적 성질결정) 등은 법에 의해 부가된 그 특유한 가치가 결정적인 정확한 전문적 개념에 해당한다. 따라서 총칭적 의미에의 연결은 법적 개념의 첫 번째 관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하나 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불충분하다.

심지어 법적 전환은 혼동의 원인일 수 있다. 일상적 의미의 법적 전환이 법적 의미를 특수화하여 이를 일반적 의미와 대립하게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일상언어에서 les actes d'une personne(사람의 행위들)은 faits(사실)와 gestes(행위)를 모두 가리킨다. 그런데 법적 사고는 법률행위와 법률사실을 대비시킨다. 이 둘은 모두 일정한 법 효과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 효과를 획득하려는 의도에서 행해지는 활동이며, 법률사실은 모든 행위 또는 사건으로서 법이 어떤 법 효과를 부여하는 (인간의, 자연의 또는 사회의) 모든 상황을 의미한다. 또한 총칭적 결부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법적 사용은 가장 대중적인 의미가 아니라 보다 엄밀한 분석에 준거하기 때문이다. “enfant légitime”(적출자)와 “enfant naturel”(비적출자)에서 légitime(법률에 의해 부여된)와 naturel(자연적인)를 대비하면 naturel은 보다 인위적이라는 것만을 상상하게 한다. 그러나 이는 통상적인 의미로 쓰이지 않는다. 이는 “자연-제도”의 대비관계 하에서 혼외의 아이를 가리킨다.

◆ 법적 의미가 일상적 의미와의 관계에서 언어의 비유로부터 발생하는 용어들

일상언어에서 그 고유의 의미를 유지하는 단어들이 법적 언어에서는 비유적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이 단어들은 법적 언어에서 그 본래의 의미와는 다른 의미를 획득하지만 본래의 의미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차용에는 세 흐름이 있다.

먼저 어떤 단어들은 법적 사용에서 은유적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언어의 비유이며 이러한 언어방식은 이 단어들로부터 창출되는 이미지의 힘에서 유래한다.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 magistrat(사법관)은 magistrat du siège 내지 magistrat assis(법관)와 magistrat debout(검찰관)로 나누어지는데, 이를 구분하는 siège(좌석), assis(앉아 있는)와 debout(서 있는)는 법정에서의 법관과 검사의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이미지에 비유한 것이다.

다음으로 단어들이 법적 사용에서 자신의 은유적인 가치를 언제나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더 이상 언어의 비유가 아니며 통상적인 방법

으로서 비유가 지시하는 것을 명명한다. 이 때 파생적 의미는 발생시킨 이미지와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면서, 법에서 중립적인 고유의 의미가 되었다. 이러한 전개는 그 단어의 가치를 선명하게 하기 위해 이 모이미지를 재현시키는 것이 적절함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단어들을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단어로써 법률용어에 화체시키는 것은 입법자, 판사, 행정예 의한 공식적 사용이 완전히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 가령, 일상언어에서 선, 줄을 의미하는 ligne는 법언어에서는 ligne paternelle(부계), ligne maternelle(모계), ligne direct ascendante(직계존속), ligne collatérale(방계) 등과 같이 사용되어 가계, 혈통의 의미로 사용된다.

이와는 반대로 단어의 환기적 가치를 위해 의도적으로 이미지화된 표현의 그룹이 계속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ricochet는 일상언어에서 물수제비뜨기를 표현하며 비유적으로는 여파, 영향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법언어에서는 이를 이미지화하여 préjudice par ricochet(간접손해)를 나타낸다.

◆ 의미의 단절

이는 동일한 단어가 법적 의미와 법 외적 의미를 소유하는데, 현실적 사용에서 그들 사이에 충분한 또는 인식할만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법률용어와 일상언어 사이에 이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적 단절이 있게 된다. 이러한 단절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먼저 법적 의미와 일반적 의미 사이에 어떤 유사한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 의미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absence의 일반적 의미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할 곳에 없는 사실”(부재)을 의미하는데, 법적 의미는 “자신의 집에서 사라진 이후 소식이 없어 생사를 알 수 없는 개인의 상황”(생사불명, 실종)이다. liquide의 일반적 의미는 ‘액체의’, ‘투명한’, ‘맑은’을 표현하는데, 법적 의미에서는 (채권·채무 등이) ‘확정된’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다음으로 단어의 법적 의미와 일상적 의미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서, 그 단절이 심하여 일반인은 법적 의미를 일상적 의미에 근거하여서는 이해할 수 없거나 일상적 의미로 이해할 경우에 반대 의미 또는 모호함을 발생시키는 경우이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예가 있다. Distraction의 일반적 의미는 ‘부주의’, ‘기분전환’인데 법적 의미는 ‘사전공제’, ‘직접징수’이다. Délivrance의 일반적 의미는 ‘해방’, ‘출산’인데 법적 의미는 ‘교부’, ‘양도’이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 있어 법적 의미의 특수성은 이를 일반적 이해와 분리시키고 그 바깥에 위치시킨다. 이러한 이중 소속관계의 위험과 운명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2) 외부적 다의성 전체의 가치

다양한 형태로 이중적 소속관계에 연관된 다의성은 언어적 사실이다. 이는 일반인은 물론이고 전문가조차도 혼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가능하다면, 다의성의 이러한 불편함을 교정하기 위해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입법, 교육 기타 국가적 강제와 방식으로 이러한 노력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바람직한 것인가. 외부적 다의성은 축소되어야 할 언어적 오류인가. 아래에서는 외부적 다의성을 둘러싼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검토하도록 한다.

A. 기초적 다의성

이 논의와 관련하여 다의성의 순수한 사실은 다의성이 발생시키는 혼동의 위험을 제외하고 고려될 필요가 있다. 객관적으로 외부적 다의성은 중요한 현상이다. 법률용어를 특수화시킴으로써 외부적 다의성을 축소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다의성을 제거하는 하나의 방법은 법적 개념을 지칭할 때에 배타적 소속관계의 전문용어들, 즉 법률용어에 고유한 용어들만으로 법적 개념을 지칭하고 일상용어를 배제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법적 개념의 지칭에서 일상용어를 배제하고서는 전문화를 이루는 것은 어렵다. 위에서 살펴본 형태론에 준거하면, 법적 언어에서 의미를 보유하는 단어들에서, 법적 의미가 총칭적 의미의 특수한 적용인 단어들로부터 그리고 법적 의미가 언어의 비유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단어들로부터 일

반용어를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법적 개념의 전체를 그 수가 한정되고 제한적인 배타적 소속관계에 속하는 단어들이나 법적 소속이 주된 단어들로 표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B. 모호한 이중적 다의성

의미의 복수성이 극단적인 혼동의 위험을 악화시킬 경우에는 적어도 그 다의성을 피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법적 의미와 일상적 의미 사이에 완전한 단절이 있을 경우에 제기된다. 모든 다의성이 혼돈을 유발할 여지가 있다면, 그 위험은 단절의 영역에서 극에 달한다. 그렇다면 법률용어에서 일상적인 의미하는 전혀 무관한 법적 사물을 지시하는 일상단어를 제거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여기서 제거한다는 것은 이러한 단어를 다른 단어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의할 것은 대체되는 단어가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다의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 하나는 새로운 단어가 보다 명확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새로운 단어가 구체적이고 오래된 것이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역진성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대체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법률용어의 가장 중요한 특징과 관계된 근본적인 이유에 기인한다. 즉 법적 용어에서 시니피에의 수는 시니피앙의 수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며 다루어야 할 법적 개념들은 이를 지시하는 단어들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다. 법적 사고의 분석적 특징으로 인해 어떤 개념이 정련될 때까지 점점 더 세밀한 구분이 진행되며 이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명명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지적 창조는 무한한데 비해 법적 용어의 창고는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신조어나 복합용어가 형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단들을 가질지라도, 법적 사고가 일상적 단어들을 광범위하게 사용하지 않고 표현될 수 있거나 고안될 수는 없다. 여기에 외부적 다의성의 대체할 수 없는 뿌리가 있다. 그리고 내부적 다의성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동일한 이유들이 법언어와 일상언어와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법률용어의 내부에서조차도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4. 내부적 다의성

법적 측면에서 어떤 단어들은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며, 다른 어떤 단어들은 잠재적으로 복수의 의미를 가진다. 동일한 단어가 잠재적으로 적어도 두 가지 법적 의미를 보유하는 것을 법적 다의성 또는 내부적 다의성이라 부를 수 있다. 내부적 다의성은 종종 외부적 다의성과 더불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복수의 법적 의미가 부여된 하나의 단어가 또한 법외적 의미를 가지는 경우이다.

프랑스 법언어는 다른 언어에 비해 내부적 다의성의 현상이 널리 퍼져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아래에서는 먼저 내부적 다의성의 의미를 확정하고, 이어서 법시스템의 전체 속에서 다의성의 현상을 검토한 후, 내부적 다의성의 문제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를 검토하기로 한다.²⁶⁾

(1) 내부적 다의성의 의미

법적 측면에서 동일한 단어가 실제 사용에서 서로 다른 둘 또는 그 이상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 내부적 다의성이 존재한다. 모두가 법에 고유하거나 어떤 것들이 일상언어에서 인정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하나의 단어가 내부적 다의성을 갖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시니피앙이 적어도 잠재적으로 경쟁하는 서로 다른 두 시니피앙에 대응한다는 것으로 필요하고 충분하다. 주의할 것은 다의성을 모호성(amphibologie)이나 개념들(notions-cadres)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모호성 또는 애매성은 다의성의 불규칙성으로 인한 것이다. 모호성은 텍스트에서 다의적 단어가 화자에 의해 수신자에게 애매함을, 즉, 텍스트에서 해당 단어가 사용되어야 하는 의미에 대해 의심과 망설임을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나타난다. 텍스트에서 다의성을 지니는 단어를 서투르게 사용할 경우에 이 단어의 복수의미의 충돌이 야기되고 이 단어의 의미는 경합적으로 해석의 대상이 된다.

26) Gérard Cornu, op.cit. pp. 93-138.

따라서 모호성은 다의성을 전제로 하지만, 상호적인 것은 아니다. 다의성은 혼돈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으나 반드시 혼돈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위험은 잘못 또는 비정형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나타난다. 따라서 다의성은 의미의 잠재적 복수성을 특징으로 하며, 이는 충돌적 복수성에 빠질 수도 있고 그 의미들 가운데 하나만을 사용하여 명확하게 실현할 수도 있다.

어떤 단어들 또는 법적 표현들은 의도적으로 불확정적인 경우가 있다. 선량한 풍속(*bonnes mœurs*), 공서(*ordre public*), 과실, 정당한, 현저한 등의 표현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개념들의 특수성은, 그 불확정성이 이 개념들의 윤곽을 보여주는 틀 내에서 가능한 현재 및 미래에 있어 다양한 적용에 개방되어 있다는 점, 특별한 사례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관(또는 다른 적용주체)의 매개를 필요로 한다는 점 등에 있다. 이 틀은 모든 종류의 사례를 수용하지만, 어떤 사례를 그 틀에 위치시키기 위해서는 비교적 검토가 부과된다. 개념들은 다의성과는 두 특질에서 구별된다. 먼저 적용의 복수성은 의미의 복수성과는 다르다. 개념들은 다의성과 마찬가지로 잠재적이다. 그러나 개념들의 잠재성은 현재 또는 미래의, 예측된 또는 예측되지 않은 일련의 무한한 적용에 이를 수 있는데, 이에 비해 다의적 복수성은 애초부터 별개의 확정된 그리고 알 수 있는 의미들 사이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개념들의 적용은 언제나 지적 작업을 요구하는데, 텍스트에서 다의성에 의해 포착되는 의미를 인식하는 것은 의미가 명확한 통상적인 경우에는 지적 작업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심지어 다의성이 애매함까지 가지고 있을 경우에조차도, 취해야 할 의미를 찾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단지 해석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개념들의 적용은 해석이 아닌 평가이다. 법관은 사전에 존재하는 의미들 중에서 선택할 여지가 없으며 당해 개념의 기준들에 따라서 사건의 사실을 평가하는 것이다. 자유가 있다면, 평가의 이유에 있다. 즉 어떤 상황이 공서에 부합하는지 또는 공서에 반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개념들의 지향적 기준(*critère directif*)이 유보하고 있는 다양하고 가변적인 여건(도덕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등)의 영향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 내부적 다의성의 중요성

프랑스에서 법률용어 내부에서 양적인 질적인 측면에서 다의성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 복수의 법적 의미를 가지는 단어들은 단일의 의미를 가지는 단어들 보다 훨씬 많다. 대략적으로 다의성을 가지는 단어는 전체 법률용어 가운데 3분의 2이상이다. 질적 측면에서 다의성은 법언어의 가장 대표적인 단어들과 관계가 있다. 모든 주요어는 다의성을 드러낸다. 따라서 법적 의미의 복수성을 부차적 현상이나 법언어의 우연성으로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오류이다. 그 양과 가치에 의해, 내부적 다의성은 프랑스 법 용어의 중요한 특성을 구성하고 있다.

다의성과 비교할 때 단의성은 양적으로 적고 질적으로도 대표적이지 않다. 배타적 소속관계에 속하는 단어의 대부분은 단의성이며 거꾸로 단의성 단어들은 대부분 배타적 소속관계에 속한다. 달리 말하면, 법적 관점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단어들은 또한 법에서 하나의 단일한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역도 같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치는 주로 두 언어현상에서 나타난다. 단의성은 특히 전문적, 학술적 용어에서 보여지며, 다른 한편으로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단어들도 또한 절대적 단의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단어들이 의미의 단일성을 가지는 이유는 주로 이 단어들이 특정의 지시대상을 정확히 지시하기 때문이다. 단어와 지시대상이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들은 일상언어에서 파생하지 않았으며 법에서 단 하나의 사물을 지시하는 것을 유일한 기능으로 한다는 것이다.

(3) 내부적 다의성의 분석

다의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현상은 동일한 단어의 복수의 의미들은 매우 다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의미들은 그들 속에서 다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 다양성은 다의성의 유형론 속에서 다양한 종류의 다의성을 특징지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의미관계들의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모든 다의성은 역사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다의성은 언제나 각 단어에 있어 언어행위의 복수성의 전개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의성의 전개에 있어서는 의미들 상호간에 일관적 관계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1) 일관성이 있는 다의성

한 단어의 복수의 의미가 뚜렷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많다. 의미들의 공존이 창조적인 것과 같이 법적 사유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질서가 있다는 인상을 준다. 여기서 다의성은 어떤 논리에 대응하여 전개된다. 텍스트에서 다의성이 우연히 모호성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의미의 공존은 개념적으로 중복되지 않고, 심지어 대립을 표현하는 경우에조차도 지적인 모순 없이 전개되어 왔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의미관계들은 매우 다양하다.

어떤 단어에서 다의성은 하나의 동일한 실재의 모든 차원을 연속적으로 포함하기 위해 연속적으로 행해진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의미출현이 연대기적 순서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중심적 실재를 위한 전체적인 포장이라는 것이다. 이를 ‘구심적 파생관계’라 할 수 있다. 다음의 두 단어는 이를 잘 보여준다.

● conseil는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리킨다.

- 해야 할 것에 관한 의견(이는 견해이다, 협의의 결과)
- 타인에게 이 의견을 주는 자
- 일정한 경우 의견제시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회의체
- 자문기관이 소재하는 장소; 자문기관을 입주시키는 건물

● dépôt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 임치계약(contrat de dépôt)
- 맡겨지는 물건을 임치하는 행위
- 맡겨지는 물건
- 임치장소

파생유무와 관계없이, 한 단어의 다양한 의미들은 동일한 사물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측면들 중에 하나를 각각 포착하고, 의미들 간에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다의성은 지시대상의 개념을 분석적으로 해체하고 해체된 소개념의 어느 하나에 대응한다. 따라서 이 경우 다양한 의미들은 전체적으로는 개념적 한 쌍을 형성한다. 그 사례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구체적 의미와 추상적 의미가 결합하는 경우이다.

● objet는 다음을 가리킨다.

- 구체적 의미에서, 합의가 대상으로 하는 촉진할 수 있는 물적 사물, 유체물, 예를 들면 부동산매매나 부동산임대차에서 부동산(목적물)
- 추상적 의미에서, 법률행위에서 당사자가 기대하는 급부, 이익. 예를 들면 부동산매매에서 매수자에 대해 부동산소유권을 위한 양도, 부동산임대차에서 임차인에게 있어 부동산의 사용, 수익(목적).

◆ 지적(실체적) 의미와 물질적 의미가 결합하는 경우

● acte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가리킨다.

- 지적 의미에서, 어떤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예를 들면, 대여, 위임, 근로계약, 매매 등.
- 물질적 의미에서, 법률행위를 인증하기 위해 작성된 서면으로 대개 증서(acte instrumentaire)라 불려진다.

◆ 적극적 의미와 소극적 의미가 결합하는 경우

● décision은 다음의 내용을 가리킨다.

- 적극적 의미에서, 결정하는 행위, 결정행위
- 소극적 의미에서, 이 행위의 결과, 결정된 것, 취해진 조치

한 단어의 다양한 의미들이 서로 대칭을 이루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의미들이 동일한 총칭적 개념에 준거하면서 유사하거나 또는 심지어 대조적인 응용 상태에 있는 특별한 측면들을 포착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는 다음과 같다.

- force(언제나 힘의 개념을 포함함)가 가리키는 것은 다음과 같다 :
 - 사실상의 구속(force majeure; 불가항력) 또는 법적 구속(force de loi; 법률의 구속력)
 - 어떤 효력 또는 가치(force probante; 증거력, 증명력)

- facultés(잠재적 능력의 관념을 포함하는 단어)는 (개인에 대해) 다음의 것들을 가리킬 수 있다.
 - 개인적 능력(지적 · 육체적 능력)
 - 자력 및 재정적 가능성

- facultatif(자유의 개념에 준거하는 단어)는 다음의 것을 가리킬 수 있다.
 - 이해관계자의 의사에 맡겨진
 - 법관의 판단에 맡겨진

- état(존재방식에 준거한 단어)는 다음의 것을 가리킬 수 있다.
 -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가 처해있는 사실적 또는 법적 상황
 - 사물에 대해서는, 그 물질적 상황

- forcé(구속적인 이행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다음을 의미한다.
 - 위법하게 강제된(consentement forcé; 강박에 의한 합의)
 - 반대로, 합법적으로 강제된(cession forcée; 강제양도, vente forcée; 강제매매, exécution forcée; 강제집행)

다의성의 내부에는 속의 의미와 종의 의미가 공존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contrat)은 약정(convention)의 일종이지만, 종종 계약은 약정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것이 그 예이다. 내부적 다의성에서 이러한 종과 속의 관계는 법률용어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다.

2) 무질서한 다의성

동일한 단어의 의미의 복수성이 혼돈적 또는 팽창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이는 우연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의미들 간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한 단어의 다양한 의미가 서로 병렬적이거나 이질적인 경우이다. 이 의미들은 상호 아무런 역사적, 합리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다양한 의미들은 복잡한 실재의 다양한 측면들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물을 지시한다. cause는 이러한 모습의 한 사례이다.

● cause

- 민사책임과 관련하여, 손해의 원인
- 계약에서, 계약당사자가 추구하는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동기(mobile)(추진적이고 결정적인 원인(cause impulsive et déterminante))나 계약당사자 쌍방에 대해 어떤 법률행위유형이 나타내는 객관적 이익(이른바 추상적 원인) : 이 두 경우는 법률행위의 목적과 효과에, 즉 이 행위가 표상하는 이익 및 계약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에 의해 추구되는 목적에 결부된 고려의 목적인(cause finale)과 관계된다.
- 법 및 소권에 관한 일반이론에서, 어떤 법적 효과의 획득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
- 소송이론에서 청구의 원인(cause de la demande)(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유지하기 위해 원용하는 사실의 총체)

- 소송(procès)에서, 사건(affaire), 사안(espèce), 사유(cas) 또는 소송절차(instance) 및 절차의 전개

위의 cause의 의미를 보면 마지막 세 의미 사이에는 관련성이 존재하나 첫 번째 의미와 다른 의미들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며 두 번째와 나머지 의미들과는 관련성이 희박하다.

◆ 한 단어의 여러 의미들이 동일한 실재와 서로 관계되나 그 실재의 구별되고 보완적인 측면을 분리하여 지시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있다.

● action

- action은 신민사소송법전(nouveau Code de procédure civile)에서 구체적인 의미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droit d'agir en justice)를 가리킨다.
- action은 또한 법원이나 법률용어사전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의미를 가리킨다.
 - 재판상의 청구((demand en justice)
 - 보다 특별히는, 부대청구(demand incidente)와 대비하여 주된 청구(demand principale, initiale)
 - 보다 확장적으로는 모든 소송절차

◆ 의미의 복수성은 고도의 법적 섬세함으로 인한 분석적 해체의 산물인 경우가 있다. 이러한 단어의 모든 의미들은 마치 실타래의 갈래와 같이 그 의미들을 구별하는 미묘한 뉘앙스의 관찰을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다. 가령, consentement은 언제나 법률행위에서 의사의 표시를 가리키지만, 그 외피 내에는 다음과 같이 매우 다른 정확한 의미들이 유통되고 있다.

● consentement

- 계약당사자 쌍방의 의사의 합치
- 이러한 합의에서, 계약당사자들 각각의 의사

- 보다 특별히는 계약당사자 일방의 청약에 대해 타방이 주는 승낙
 - 확장적으로는 단독행위자의 의사
 - 계약당사자들이 행한 법률행위에 제3자의 가입
- ◆ 한 단어의 다양한 의미가 비조직적으로, 산발적으로 펼쳐지는 경우가 있다. 이는 형용사의 경우에 많이 나타난다. 가령, principal은 6개의 의미, public는 15개의 의미, libre는 19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 matériel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정신적’(moral) 및 ‘신체적’(corporel)인 의미와 대조적인 의미로, ‘재물과 관계되는 금전적인’, ‘재산적인’, ‘경제적인’
 - ‘영토상’(territorial) 및 ‘절차상’(processuel)의 의미와 대조적인 의미로, ‘법의 실체와 관련된’ 또는 ‘법분야에 근거한’(compétence matérielle 사물관할, droit matériel 실체법)
 - ‘형식적’(formal) 및 ‘구성적’(organique)인 의미와 대조적인 의미로, ‘행위의 내용 및 목적에 관한’
 - ‘법률상’(juridique)의 의미와 대조적인 의미로, 법률효과가 제외된 ‘사실상의’
 - ‘법’(legal) 및 ‘도덕’(moral)과 대조적인 의미로, ‘사실의’(élément matériel de l’infraction 범죄의 사실적(객관적)요소)
 - ‘지적’(무형의)(intellectuel)인 의미와 대조적으로 ‘구체적인’, ‘물적인’(faux matériel 유형위조)
 - ‘본질적인’(fondamental) 및 ‘의도적인’(intentionnel)의 의미와 대조적인 의미로, 단순히 ‘형식적인’(erreur matérielle 형식적 과오)

제 3 장 프랑스 법률용어의 법언어학적 특징

- ‘형식적’(formel)과 대조적인 의미로, ‘객관적인 결과를 발생시키는’(délit matériel 실질범 ↔ délit formel 형식범)
- ‘정신적인’(intellectuel)인 의미와 대조적인 의미로, ‘구상이 아닌 행위를 실행하는 것’(auteur matériel d’une infraction 범죄 실행범 ↔ auteur intellectuel d’une infraction 범죄의 계획자)

제 4 장 법률용어 및 문장과 관련한 입법정책

I. 입법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근거

벤담은 법언어가 간결하게 되면 “이를 해석하기 위한 법학과도, 이를 논평하기 위한 전문가들도, 이의 이해를 위한 용어사전도, 모호함을 해결하기 위한 결의론자도 필요가 없을 것이다.”고 하고 “가능한 한 인민들에게 친숙한 법 용어들만을 법률에 포함시켜야 한다. 전문용어들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법률 자체 내에 이를 정의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⁷⁾ 벤담의 이러한 완벽한 입법의 원칙은 모든 시대의 법률가들에 있어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에 있어 입법언어의 복잡성에 대한 요인들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 전문성의 세분화, 관료적 법률의 생산, 입법기술에 대한 공무원들의 미흡한 교육 등으로 인해 입법언어는 일반인들에게 여전히 모호하게 존재한다.

영미법계에서는 일상적이고 간결한 법언어로의 회귀를 위한 총체적인 운동으로서 Plain Language Movement가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²⁸⁾ 프랑스에서도 사법언어의 현대화와 간결화는 정부의 관심을 끄는 주제였다. 프랑스 대통령은 1975년 상원 1백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우리 시민들은 명확하고, 간결하며, 안정적인 법률”,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모호하지 않게 말하고 시민들의 언어로 쓰여진 법률들을” 원한다고 선언하였다. 1985년 수상이 법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이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가장 최근에는 1995년 5월 19일 대통령이 법전화 작업과 관련하여 의회에 “법령의 법전화와 간결화의 실현은 이를 보다 접근가능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고 이는 외국에서는 이와 같은 노력이 행해지고 있고, 이는 정책적 책임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와 같이 법언어에 관한 입법정책의 기본방향은 명확성, 접근가능성, 이해가능성, 간결성 등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법언어를 이해

27) J. Bentham, *Traité de législation civile et pénal*, p. 370.

28) 이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로는 Nicole M. Fernbach, “La simplification du texte juridique : Étude comparative”, *Français juridique et science du droit*, Bruylant, 1995, p. 105 참조.

하기 쉬운, 쉽게 알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희망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정책의 기본방향은 법이론적으로, 법규범적으로 정당하다.

법이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다면, 법언어도 또한 그렇다. 법언어는 법의 전달수단으로서 법이 가는 모든 곳에 법을 안내해야 한다. 『Nul n'est censé ignorer la loi』 (어느 누구도 법을 모르는 것으로는 간주되지 않는다)²⁹⁾, 즉 어느 누구도 법률의 무지를 이유로 법률을 면할 수 없다는 의미의 이 법언은 법언어에 대해 일종의 지침을 제공한다. 이 법언은 누구나 법률을 알고 있음을 즉 누구나 이를 이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법적 전제이자 언어적 전제이다. 그러므로 언어적 측면에서 법을 만드는 자는 명확성의 의무를 요구받는 것이고 이해될 수 있는 법을 만들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다.

법규는 행위규범이자 통제규범이기 때문에 ‘일관성’, ‘위계성’, ‘정확성’ 및 ‘명확성’이라는 불가결한 특성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법규는 이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그 용어를 사용할 때에 명확하고, 정확하고, 확실한 단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법규에 모호하고 충분히 정의되지 않은 법적 개념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그 법규는 불확실하게 된다. 이 경우 개념의 의미와 관련 규범의 의의는 법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장래의 분쟁해결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특정 사실 상황에 적용되는 법적 해결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사실들을 법언어로 표현해야 하며, 역으로 법률용어는 법시스템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실 상황에 적합한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³⁰⁾

법령용어는 사실적합성이 요구되지만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하여서는 확실성(명확성)이 더욱 중요하다.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표현으로 요약되며, 이는 『자유주의, 법치주의, 국민주권 및 권력분립의 원리에 입각한 것으로서 일차적으로 무엇이 범죄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29) 법률행위의 효력과 관련하여 당사자에 의한 법원칙의 존재 또는 해석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는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30) Jean-Louis Bergel, *Théorie générale du droit*, Dalloz, 2004, p. 240.

입법부가 제정한 성문의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³¹⁾이다. 다시 말하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형법법규의 내용이 애매모호하거나 추상적이어서 불명확하면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를 국민이 알 수 없어 법을 지키기가 어려울뿐더러 범죄의 성립여부가 법관의 자의적 해석에 맡겨져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주의 이념은 실현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³²⁾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가운데 하나가 법규내용명확성의 원칙이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이 명확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 법률을 적용하는 단계에서 가치판단을 전혀 배제한 무색투명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입법자의 입법의도가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다소 광범위하고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여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없는 이상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요구에 배치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고 하고 있다.³³⁾

31) 헌재 1999. 2. 25. 87 헌바 3.

3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3, 397쪽.

33) 헌재 1989. 12. 22. 88 헌가 13; 1994. 7. 29. 93 헌가 4등(병합); 2001. 12. 20. 2001 헌가 6등(병합). 『이 사건 미성년자보호법 조항(제2조의2 제1호)은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하여도 그 규범내용이 확정될 수 없는 모호하고 막연한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아동복지법 조항(제18조) 역시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하여도 그 규범내용이 확정될 수 없는 모호하고 막연한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헌재 2002. 2. 28. 99 헌가 8); 『부단히 변화하는 다양한 생활관계를 제대로 규율하기 위하여 처벌법규

프랑스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는 1999년 12월 16일 결정에서 『이 목적(9개의 법전을 완성하는 것)은 결국 법률에 대한 접근 가능성(accessibilité)과 이해가능성(intelligibilité)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사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의 선언 제6조³⁴⁾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 앞의 평등과 동 선언 제16조³⁵⁾에서 요구하는 "권리의 보장"은 시민들이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규범들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실질적일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지식은 권리와 자유의 행사는 법률에 의해 정해진 제한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동 선언 제4조³⁶⁾ 및 법률로서 금지되지 않은 모든 것은 방해될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법률이 명하지 않은 것을 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제5조³⁷⁾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와 자유의 행사에 필

에서 어느 정도의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인 뜻을 지닌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득이하다고 할 수밖에 없고, 당해 법률이 제정된 목적과 다른 법률조항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명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가릴 수 밖에 없다』 (헌재 2000. 2. 24. 99헌가 4);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인 형법 제21조 제1항 중 '상당한 이유'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일찍부터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그 의미를 어느 정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헌재 2001. 6. 28. 99헌바31); 『죄형법정주의는 누구나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구성요건이 명확히 규정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어느 정도 명확하여야 하는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각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적 규제의 원인이 된 여건이나 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헌재 1999. 2. 25. 97헌바3; 1998. 7. 16 97헌바22; 1997. 3. 27. 95헌가17; 1996. 12. 26. 93헌바65; 1990. 1. 15 89헌가103; 1989. 12. 22 88헌가13).

34) 『법률은 일반의사의 표현이다. 모든 시민은 누구나 자신이 직접하거나 또는 그의 대표자를 통해서 법률의 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법률은 보호하든가 처벌하든가 간에 만인에 대해서 평등해야 한다. 법률 앞에 평등한 모든 시민은 덕성과 재능에 의한 차별 이외에는 누구나 그의 능력에 따라서 공적인 고위직, 지위, 직무 등에 동등하게 임명될 수 있다』 .

35)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의 분립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

36) 『자유란 타인을 침해하지 않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데 있다. 따라서 각 개인의 자연권의 행사는 사회의 여타 구성원들에게 동일한 권리의 향유를 보장해 주는 경우에 한해 제한이 있다. 이러한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정해질 수 있다』 .

37) 『법률은 사회에 유해한 행위만을 금지할 권리를 갖는다. 법률로서 금지되지 않은 것은 어떠한 방해도 받을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법률이 명하지 않은 것을 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다』 .

요하다.”고 하여 ‘법적 안정성’의 원칙을 포괄적으로 승인하고 있다.³⁸⁾

유럽인권재판소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법률, 즉 법률문(text) 그 자체 또는 그 법률에 대한 판례의 해석은 시민들이 접근가능하고 예측가능하여야 함을 함의한다고 판단하고, “법률의 일반성 원칙으로 인하여, 법률의 작성이 절대적인 명확성을 나타낼 수 없더라도”, 그렇지만 당사자는 “관련 규정의 작성에 바탕하여 그리고 필요한 경우 그 규정에 대한 법원의 해석의 도움으로 어떠한 행위와 부작위가 자신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³⁹⁾

법령에 대한 이해가능성과 접근가능성은 법적 안정성의 확보를 위해 요구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요구의 보다 궁극적인 목적은 평등원칙의 확보라고 하는 견해는 주목된다.⁴⁰⁾ 이에 따르면 시민들의 평등은 입법언어 간결화의 목적에 있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먼저 시민들의 평등은 법률의 보다 나은 이해에 접근할 평등한 권리를 요청하기 때문에, 평등은 이론적으로 법언어 간결화의 목적을 정당화시키는 것이다. 다음으로 입법언어 간결화는 법주체들의 살아있는 평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차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 평등은 그 목적의 구체적 실현을 지도하는 것이다.

입법언어 간결화를 정당화하는 원리로서 평등은 사회학적·철학적·법적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학적 측면에서 입법언어 간결화의 목적은 법률가의 계급적 폐쇄성의 종식에 있다고 한다. 법률가들의 언어적 난해성은 언어의 민주화를 통한 법의 민주화를 위해 종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언어의 민주화와 관련하여 몽테스키외와 벤담은 최저 수준에 맞춘 평등화를 주장한다. 몽테스키외와 벤담은 법률은 “사고력이 가장 없는

38) François Terré, *Introduction générale au droit*, Dalloz, 2003, p. 32.

39) 이 사건은 비타민 C나 피로회복 크림이 백화점이나 슈퍼마켓과 같은 대규모 상점에서 판매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art. L. 511 C.S.P.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품(médicament) 개념의 범위와 관계된 것이었다 (Cour EDH, 15 nov. 1996, *Cantoni c. France*, Dr. pénal 1997. comm. 11).

40) 이에 대한 논의는 Daniel Gutmann, “L’objectif de simplification du langage législatif”, *Les mots de la loi*, sous la direction de Nicolas Molfessis, Economica, 1999, pp. 76-77.

사람들”⁴¹⁾은 아닐지라도 “빈약한 이해력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⁴²⁾고 한다. 최근 널리 논의되고 있는 의사소통 철학에서는 이에 대해 전혀 비난하지 않는다. 이에 따르면 법을 의사소통의 매개물 또는 민주주의 게임 참가자들 사이의 토론의 산물로 하고자 한다면, 언어가 보다 작은 공통의 분모로 축소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곧 입법언어의 간결화와 민주주의 이른바 ‘의사소통적’ 토대간에는 내밀한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법의 영역에서도 이러한 관계는 무시되지 않는다.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의 전문에서는 “간결하고 명백한 원칙”들 이라고 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으며, 위에서 살펴본 헌법위원회의 결정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

II. 입법정책의 전개 및 현황

프랑스는 1992년 6월 25일 법률 n° 92-554에 의한 헌법 개정시 1958년 헌법 제2조 제1항 다음에 “공화국의 언어는 프랑스어이다”는 새로운 조항을 삽입하였다. 프랑스어의 사용과 관련한 최근의 중요한 법령은 프랑스어의 사용에 관한(relative à l’emploi de la langue française) 1975년 12월 31일의 법률을 대체한 1994년 8월 4일의 법률이다.⁴³⁾ 이 법률은 1995년 3월 3일의 데크레(décret)⁴⁴⁾ 및 1996년 3월 19일의 행정지침(circulaire)⁴⁵⁾에 의해 보완되었다. 이 법률에서는 “헌법에 의해 공화국의 언어인 프랑스어는 프랑스의 인격과 자산의 기본

41) J. Bentham, op. cit., p. 398.

42) Montesquieu, *De l’esprit des lois*, p. 294.

43) 프랑스의 프랑스어 보호정책과 관련하여서는, 김현권, “프랑스어 모국어 보호정책과 법제”, 『새국어생활』, 제13권 제2호, 국어국어연구원, 2003 ; 김진수, “프랑스어 사용관련법”, 『프랑스어문교육』, 제11집,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2001 등을 참조.

44) 데크레는 대통령령과 국무총리령에 상당한다. 데크레는 제정절차에 따라 국사원(Conseil d’Etat)의 심의를 거친 데크레,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데크레 및 단순한 데크레 등으로 구분되고, 개입영역에 따라 독자명령과 집행명령으로 구분된다.

45) 행정지침(circulaire)은 상급의 기관이 계층적 권한에 근거하여 서면으로 하위의 공무원에게 발하는 직무상의 훈령을 말한다.

적 요소”(제1조 제1항)이고, 프랑스어는 “교육, 노동, 교역 및 공공서비스의 언어”(제1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보에 게재되는 법령문의 작성, 서명 및 공포규칙과 수상소관의 특별절차의 실시에 관한 2004년 7월 1일의 지침”⁴⁶⁾에서는 “프랑스어에 속하는 용어만을 사용할 것. 외국어의 용어 또는 표현은 프랑스어에 상당하는 표현 또는 용어가 있는 한 사용하지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법령 간결화에 관한 정책은 다양한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먼저, 정부법령안의 작성단계에서 행정지침에 따른 간결화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의회심의 단계에서 동일한 작업이 실시된다. 마지막으로 법전화 작업과 관련하여 역시 법령용어 및 문장에 대한 순화 작업이 이루어진다.

1. 정부법령안 작성과 법령간결화 정책

“관보에 게재되는 법령문의 작성, 서명 및 공포규칙과 수상소관의 특별절차의 실시에 관한 2004년 7월 1일의 지침”에서는 법령간결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이 지침은 법적인 질을 개선하고, 행정객체에게 이해를 쉽게하기 위하여 법령문의 작성과 기초를 규율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이와 관계되는 모든 공무원에게 배포하는 단일문서로서 유의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작성되었다.
- “프랑스어에 속하는 용어만을 사용할 것. 외국어의 용어 또는 표현은 프랑스어에 상당하는 표현 또는 용어가 있는 한 사용하지서는 아니된다.”
- “관용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사전에 게재되어 있지 아니한 새로운 용어의 사용은 피할 것”

46) “Circulaire du 1er juillet 2004 relative aux règles d’élaboration, de signature et de publication des textes au Journal officiel et à la mise en oeuvre de procédures particulières incombant au Premier ministre”. 이 지침은 1997년 1월 30일의 지침을 개정한 것이다(1997년 1월 30일의 지침에 대한 해설 및 번역문은 박영도, 『법령입안기준개발에 관한 연구(I)』, 한국법제연구원, 2003. 10, 75쪽 이하 참조).

- “일반적으로 동사의 활용은 현재형으로 하고, 미래형으로 하지 아니한다. 현재형은 명령형의 의미를 가진다.”
- “법률용어 또는 기술용어로부터의 차용어는 그 명확한 의미내용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 “약호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것이 일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그것을 처음으로 사용한 법령문에서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독점의 규칙은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것은 법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며, 최근 콤마에서 세미콜론으로 바꾼 음료가게법전(code des débits de boissons) 제17조의 개정은 그 의미를 현저히 변경하였다. 구독점에 결합이 있는 법령문의 공포는 당해 법령문에 부여되는 의미를 불명확하게 하고, 그 때문에 소송을 야기하게 된다.”

또한 “법률안 및 국사원 데크레안이 동반하는 영향 조사의 실험에 관한 1995년 11월 21일 지침”⁴⁷⁾에서는 법령안의 작성자로 하여금 법적 구성의 복잡성의 측면에서 사전에 그 법령안의 영향을 평가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⁴⁸⁾

한편 정부제출법안에 대한 국사원의 심의 단계에서도 법령문의 용어와 문장에 대한 검토가 행해지고 있다.⁴⁹⁾ 국사원의 심의는 보고담당관이 심의대상 법령안에 대해 보고안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국사원심의회가 이루어진다. 보고담당관은 보고안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문체의 질과 내용의 정확성에 유의하는 한편 입법목적달성에 있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인 수정을 가한다.

47) “Circulaire du 21 nov. 1995 relative à l’expérimentation d’une étude d’impact accompagnant les projets de lois et de décrets en CE”.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행정지침으로는 “Circulaire du 26 janvier 1998 relative à l’étude d’impact des projets de loi et de décrets en Conseil d’Etat”가 있다.

48) 이에 관해서는 박영도, 『법령입안기준개발에 관한 연구(Ⅰ)』, 한국법제연구원, 2003. 10, 21-24쪽 참조.

49) 박영도, 위의 책, 59-60쪽.

특히 보고담당관은 법령기초시의 일반적 주의사항에 관한 지침에 유의하여 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형식적인 주의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 간결한 문체로 하되, 표현은 명확하고 해석이 용이하여야 한다. 명확성의 추구는 필수적이며, 문체의 우아함을 위해 혼돈을 가져올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일정한 용어를 반복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기존의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적 용어는 존중되어야 한다.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망설임없이 사전을 이용하여야 한다. 또한 아직 일상화되지 않은 용어의 사용은 엄격히 한정되어야 한다. ③ 법령문에서 괄호를 치는 것은 타당하다고 여겨질 때에만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장차 부회이나 총회에서의 심사시 제기될 수 있는 형식에 대한 지적을 피하도록 법령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법전화작업과 법령간결화 정책

프랑스 법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법전화이다. 최근 입법의 인플레이션⁵⁰⁾이라는 문제에 대응하여 법전화에 대한 논의는 활성화되어 왔으며 그 정책은 국가개혁(réforme de l'Etat)의 하나로써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법전화의 일반적인 목적은 접근가능성과 이해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데 있다.

법전화는 그 목적과 범위에 따라 다양한 측면을 지닌다. 전통적인 법전화작업은 법의 실체적 내용의 제개정을 동반하는 입법적 성격이 강하였다. 그런데 최근 프랑스 법전화작업과 관련하여 주목을 끄는 것은 이른바 “행정적 법전화”(codification administrative)이다. 행정적 법전화란 현존하는 법률의 규정에 대한 실체적 변경이 없고, 원칙적으로 행정부의 명령을 통해 법전화 작업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즉 행정적 법전화의 목적은 흩어져 있는 수 많은 법령을 통합함으로써 법령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촉진시키는 데에 있다. 프랑스에서의 법전화 정책에 대한 이해를 위해 그 전개과정을 살펴보자.

50) 1999년 현재 프랑스에서 시행중인 법률은 8,000개, 시행령은 90,000개 알려져 있다.

1948년 5월 10일의 데크레에서는 Présidence du conseil 소속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법전화 작업의 촉진을 위한 현행 법령문 전체의 통합, 여러 행정부처에 의해 이미 행해진 작업의 조정·보완, 정부에 법령의 간결화에 관한 제안의 제출 등을 맡도록 하였다.⁵¹⁾

1989년에는 법전화에 대한 새로운 움직임이 형성되면서 위의 1948년 데크레를 폐지하고 1989년 9월 12일의 데크레⁵²⁾를 제정하였다. 이 데크레에서는 이전의 위원회를 대체하는 ‘법전화 최고위원회’(Commission supérieure de codification)을 설립하여 법전화 작업의 전개를 목적으로 ‘법의 간결화 및 명료화’(la simplification et la clarification du droit)에 대한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행정적 법전화는 법률과 명령을 대상으로 하고, 형식 이외의 규정내용은 바꾸지 않는(codification à droit constant)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지만, “유용하고 적용되는 오래된 법규가 언어의 변화에 따라 이해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 이를 재작성하는 것은 배제되지 않았다.

이러한 법전화의 작업에 따라 입안된 법전들은 국사원(Conseil d’Etat)의 데크레에 의해 공포되었는데, 그 결과 효력, 구속력, 이후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의 점에서 불확실성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이러한 절차를 포기하고 법전의 법률부(partie législative)⁵³⁾는 의회에서 채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상황은 다시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법전화 최고위원회에서 입안된 법전이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의회의 의사일정 과잉,

51) 이 위원회의 활동으로 1951년에 공무원·군인의 퇴직연금법전(code des pensions civiles et militaires de retraite), 1953년에 공중보건법전(code de la santé publique), 1956년에 가족 및 사회부조법전(code de la famille et de l’aide sociale), 1973년에 노동법전(code du travail), 1978년에 사법조직법전(code de l’organisation judiciaire)이 만들어 졌다.

52) “Décret relatif à la composition et au fonctionnement de la Commission supérieure de codification”(법전화최고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관한 데크레).

53) 프랑스의 법전은 제정형식별로 나누어 법률 또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오르도낭스로 구성되는 “법률부”, 국사원의 심의를 거쳐 제정되는 데크레로 구성되는 “명령부”, “단순데크레” 등과 같이 2부 또는 3부의 구성을 취하는 경우가 많으며, 경우에 따라 장관령 및 훈령까지 추가된 5부의 구성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법제처, 『외국법령 검색방법』, 2004, 151쪽.).

행정에 의한 법전화에 대한 다양한 견해 등으로 인해 법전의 채택은 지연되었다. 1996년과 2000년 사이에 22개의 새로운 법전과 18개의 개정법전이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어느 것도 채택되지 않았다.

법전화 절차에서 존재하는 이러한 지연은 무시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왜냐하면 법전의 채택 이전에 해당 법전과 관련된 새로운 법률이 의회에서 가결되면 법전의 개정 내지는 연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법전화를 둘러싼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자 프랑스 정부는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게 된다. 즉 정부는 법전화 최고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헌법 제38조⁵⁴⁾에 근거하여 1999년 6월 16일에 “오르도낭스를 통해 몇몇 법전들의 법률부의 채택을 행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수권에 관한 법률안”⁵⁵⁾을 제출하였고, 이는 1999년 12월 16일의 법률 n° 99-1071로 채택되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9개 법전⁵⁶⁾의 법률부에 대한 법전화작업을 할 수 있다. 이 법률은 두 측면에서 혁신적인 것이다. 첫째, 의회절차의 지연이라는 장애를 받지 않고 신속하게 법전화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종래부터 법전화 작업의 범위는 형식 이외의 규정내용은 바꾸지 않는 (codification à droit constant) 것을 원칙⁵⁷⁾으로 하였는데, 이 법률에서는 “법전화되는 규정들은 오르도낭스의 공포시에 시행중인 규정들

54) 제38조 ①정부는 시정방침의 수행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는 입법 사항에 속하는 조치를 법률명령으로써 하도록 그 승인을 국회에 요구할 수 있다.

②법률명령은 국사원의 의견을 청취한 후 국무회에서 채택된다. 법률명령은 공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수권법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를 승인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③본조 제1항에 정하는 기간의 만료 후에는 법률명령은 입법사항에 관하여는 법률에 의하며만 이를 개정할 수 있다. 법률명령에 관해서는, 박영도, 『법령입안기준개발에 관한 연구(Ⅰ)』, 한국법제연구원, 2003. 10, 15-16쪽 참조.

55) “Projet de loi portant habilitation du Gouvernement à procéder, par ordonnances, à l’adoption de la partie législative de certains codes.

56) 농업법전(code rural)의 일부, 교육법전(code de l’éducation), 상업법전(code de commerce), 행정법원법전(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 도로법전(code de la rout), 사회사업법전(code de l’action sociale), 화폐 및 재정법전(code monétaire et financier)

57) 이에 대해서는 “Circulaire du 30 mai 1996 relative à la codification des textes législatifs et réglementaires”.

이며, 다만 법규범의 단계의 준수와 통합되는 법령문들의 편집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법의 상태(état du droit)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정은 예외로 한다.”(제1조 제3항)는 규정을 됴으로써 법전화의 범위에 종래의 ‘편집의 통일성’, ‘법규범의 단계 준수’와 더불어 ‘법 상태의 조화’라는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였다. 법령문의 용어와 문장과 관련하여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용되지 않거나 최근의 법률에 의해 추월된 단어들, 표현들 및 개념들은 시행중인 법 및 현재의 언어에 해당하는 개념들로 대체”⁵⁸⁾되는 범위에서 법전화의 대상이 된다.

한편 위의 1999년 2월 16일 법률에 대해서는 법률사항에 관한 헌법 제34조 및 주권의 원리에 대한 침해, 오로드낭스에 관한 헌법 제38조 및 입법자의 권한 등의 불준수 등을 이유로 헌법위원회에 위헌심사가 제기되었다. 위헌심사제기의 주요 동기는 의회 의사일정의 과잉(encombrement)과 관련한 법전화의 지연을 이유로 헌법 제38조의 절차이용을 정당화하는 것은 헌법의 관점에서 불충분하다는 것이었다. 헌법위원회는 1999년 12월 16일의 결정⁵⁹⁾에서 “정부는 의회 의사일정의 과잉으로 인해 방해된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9개 법전의 완성에 결부된 일반이익(intérêt général)을 상기시키면서 의회에 필요한 상세한 설명을 제시하였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헌법위원회는 이 결정에서 “이 목적(9개의 법전을 완성하는 것)은 결국 법률에 대한 접근가능성(accessibilité)과 이해가능성(intelligibilité)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사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의 선언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 앞의 평등과 동 선언 제16조에서 요구하는 ”권리의 보장“은 시민들이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규범들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실질적일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지식은 권리와 자유의 행사는 법률에 의해 정해진 제한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동 선언 제4조 및

58) “Les mots, expressions et concepts désuets ou dépassés par une législation plus récente seront remplacés par les notions correspondant au droit en vigueur et à la langue actuelle”(Circulaire du 30 mai 1996 relative à la codification des textes législatifs et réglementaires)

59) Cons. cons. déc. n° 99-421, 16 déc. 1999.

법률로서 금지되지 않은 모든 것은 방해될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법률이 명하지 않은 것을 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제5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와 자유의 행사에 필요하다.”고 하여 법률 간결화의 헌법적 의의에 대해 확인하였다.

3. 의회입법평가국과 법률간결화

의회입법평가국은 1996년 6월 14일의 법률⁶⁰⁾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입법이 규율대상인 상황에 타당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수집과 검토, 입법간결화 등을 임무로 하고 있다.

60) “Loi n° 96-516 du 14 juin 1996 tendant à créer un Office parlementaire d'évaluation de la législation”.

제 5 장 결어 : 한국 · 프랑스 법률용어 관련 비교 검토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법언어의 확보를 위한 정책실행은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의 일반적 과제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헌법의 기본원리가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과 더불어 이를 전달하는 ‘언어’에 대한 민주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법언어의 기본요소인 법률용어를 대상으로 프랑스 법률용어와 관련 정책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국과 프랑스의 사례를 비교·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법령용어 자체에 대한 한국과 프랑스의 비교는 언어의 성격 자체가 상이함에 따라 곤란하고, 한국 법령용어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국내에 풍부한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비교보다는 입법정책적 내용의 비교에 중심을 둔다.

I. 언어 관련 입법정책

법언어는 각 국가의 언어의 한 부분을 구성한다. 따라서 각 국가의 언어정책이 법률용어와 문장 및 이와 관련된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즉, 언어정책은 한편으로 법언어에 관한 정책을 직접적으로 구속하고 지도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정책의 실시로부터 얻어진 언어적 성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법언어의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전자의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과 프랑스의 언어정책의 주요내용을 비교·검토하기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종래 언어정책과 관련한 법률의 하나로는 1948년에 제정된 『한글전용에관한법률』이 있었다. 이 법에서는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공문서규정』은 “문서의 용어는 한글로 띄어서 쓰되, 표준말을 쓴다”(제11조 제1항)고 하고, “법규문서 중 법률문서에 대하여는 이 영의 적용을 받는 기관 외의 기관에서 다른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종래의 법령에서는 법률의 경우에 한글과 한자의 병용이 가능하였고 행정입법의 경우에는 한글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비교할 때 2005년 1월 27일 『한글전용에관한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이 제정된 『국

『국어기본법』은 법률용어와 문장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문자를 쓸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문서에 대한 ‘한글작성’과 ‘어문규범의 준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법률의 경우에도 모두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⁶¹⁾ 나아가 모든 공문서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⁶²⁾ “어문규범”이란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표준어발음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동법 제3조 제3호)으로서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이 제정한 규범을 말한다(동법 제11조). 그러므로 적어도 법규정으로 볼 때 ‘어문규범’이 법령용어나 문장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률용어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법률용어가 ‘한자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다는데 있음을 생각하면 단순히 한자를 한글로 표기한다고 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법률용어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다. 그러므로 전체 언어 정책적 차원에서 국어기본법은 이 문제의 해소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정이라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동일의미의 프랑스어 표현 또는 용어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어의 표현이나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입법관련 지침에서도 이러한 규정과 더불어 라틴어에 대한 사용과 영어식 표현법에 대해 제한하고 있다.⁶³⁾ 이를 우리나라의 언어상황에 응용하

61)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존의 모든 법률을 한글화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62) 『국어기본법』 제3조 제4호에서는 “공공기관”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는 국회도 포함된다.

63) 2005년 내각사무처와 국사원이 공동으로 법령문작성과 관련한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한 “법령문 작성을 위한 지침”(Guide pour l'élaboration des textes législatifs et réglementaires; http://www.legifrance.gouv.fr/html/Guide_legistique/accueil_guide_leg.htm)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프랑스어에 속하는 용어만을 사용할 것. 외국어의 용어 또는 표현은 프랑스어에 상당하는 표현 또는 용어가 있는 한 사용하지는 아니된다.”

여 한자어 사용 자체에 대해 재검토를 할 수 있는 규정을 국어기본법에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물론 어문규범에 이러한 내용을 둘 수도 있으나 한자어 문제의 심각함을 고려하면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국어기본법』에서 주목되는 것은 제17조의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법령 중에는 법률분야 이외의 각종 전문적·학술적 분야의 전문어가 상당하며 이 또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전문용어의 표준화·체계화 작업은 법률의 이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을 끄는 프랑스의 제도로는 각 행정부서의 전문용어위원회(CMT)이다. 현재 프랑스어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 중의 하나가 전문용어의 문제이다. 프랑스는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각 행정부처별로 전문용어위원회를 설치하였고 1996년 7월 3일의 “프랑스어 풍부화에 관한 데크레”⁶⁴⁾에서는 ‘전문용어 및 신조어에 관한 일반위원회’(Commission generale de terminologie et de neologie)의 권고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 용어는 국가행정과 서비스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위의 국어기본법 제17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프랑스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II. 법언어 관련 입법정책

법률용어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정부는 법제처를 중심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체계적인 사업을 진행하여 왔고 이러한 성과로서 6차에 이르는 ‘법령용어순화편람’과 최근의 ‘법령용어순화정비편람’을 발간하였으며, 이 성과는 기존 법령의 개정과 입법에 반영되어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 라틴어 역시 동일한 조건에서 일상언어에 속하는 것들을 포함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즉 “in fine”, “in situ”, “a contrario”, “exnihilo”, “de jure” 또는 “cursus”와 같이 프랑스어로 쉽게 번역될 수 있는 용어들이 그러하다. 그렇지만 라틴어의 번역이 곤란한 경우에 이 규칙에는 예외가 있다. 가령, “quantum”, “a priori”, “a posteriori” 및 “référéndum” 이 이에 해당한다.

- 또한 영어식 표현법을 피해야 한다. 예를 들면 “supposer”에 대해 “présumer”의 사용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64) “Decret du 3 juillet 1996 relatif a l’enrichissement de la langue francaise”

하고 아직까지 순화해야 할 법령은 무수하며 새로이 제정되는 법령도 철저한 한글 순화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입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령의 입안과 관련하여 1995년 8월 10일 제정된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제14748호) 제8조에서는 법령입안시의 유의사항으로 법령의 입안은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의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표현할 것”, “적용대상이 되는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전체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배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법령입안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법령입안심사기준』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의 법률안 입안 및 심사와 관련하여서는 『법률 용어의 표준화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령안의 입안·심사단계에서 순화작업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통해 법령용어순화에 대한 연구성과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잘 쓰이지 않는 오래된 한자어나 단순한 일본식 용어에 대한 순화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기존 법령에서 이미 법률개념어로 자리잡고 있는 한자어와 일본식 용어는 순화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기존 법령의 순화작업과도 연계되는 근본적인 것이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처리에서 보여지듯이 일괄적인 단순 한글화작업도 절차적으로 쉽지 않은데, 개별적 검토와 개별입법이 요구되는 이러한 문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법전화작업은 목적은 다르지만 제도운영의 형태에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먼저, 이해가능성과 접근가능성을 목표로 하는 법전화작업은 ‘국가개혁’의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법전화작업의 국가적 중요성과 정책적 우선 과제임을 강조함으로써 강력한 정책추진의 근거가 되고 있다. 다음으로, 법전화작업은 ‘법전화 최고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는 수상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사원, 내각사무처, 각 부처의 관련자, 사법부, 입법부의 주요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원회가 법전편찬과 관련을 가지는 모든 국가기관의 구성원들로 구성됨에 따라 작업방향이나 내용에 있어 사전에 심층적인 검토와 조율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논란과 절차

의 복잡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관련 오르도낭스를 채택하여 행정부에 법전화작업에 대한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물론 이는 법전화작업의 국가적 중요성과 법전화편찬위원회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의 이러한 사례는 법령용어순화와 관련한 현재의 제도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부록】 프랑스어-한국어 법률용어집

일러두기

■ 용어선정

- 프랑스 법률용어의 선정은 *Lexique de termes juridique*, 14^e édition, Dalloz, 2003을 중심으로 한국에 동일 내지 유사한 법적 용어나 개념의 존재를 기준으로 하였다.

■ 법 분야의 약어

- 용어의 대비에서 해당 용어가 사용되는 법 분야를 표기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용어대비 앞 부분에 아래와 같은 해당 법 분야의 약어를 기재하였다.

- 법 분야의 약어

【행정】 Droit administratif(행정법)

【보험】 Droit des assurances(보험법)

【민법】 Droit civil(민법)

【상법】 Droit commercial(상법)

【헌법】 Droit constitutionnel(헌법)

【재정】 Droit financier(재정법)

【일반】 Droit général(법일반)

【부록】 프랑스어-한국어 법률용어집

【국사】 Droit international privé(국제사법)

【국제】 Droit international(국제법)

【해상】 Droit maritime(해상법)

【형법】 Droit pénal(형법)

【사법】 Droit privé(사법)

【공법】 Droit public(공법)

【노동】 Droit du travail(노동법)

【행소】 Procédure administrative(행정소송법)

【민소】 Procédure civil(민사소송법)

【형소】 Procédure pénal(형사소송법)

【소송】 Procédure(소송법일반)

【사보】 Sécurité social(사회보장)

참고 문헌

《국내 문헌》

- 국회사무처, 『법률용어·법문표현·입법모델: 입안방법』, 2005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3,
- 강현철, 『법령용어의 순화와 정비에 관한 법언어학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3
- 강현철·엄태현, 『동유럽체제전환기의 법률용어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3
- 김진수, “프랑스어 사용관련법”, 『프랑스어문교육』, 제11집,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2001
- 김현권, “프랑스어 모국어 보호정책과 법제”, 『새국어생활』, 제13권 제2호, 국어국어연구원, 2003
- 류창호, 『민법개정안의 법률용어와 문장의 순화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3
- 박영도, 『법률용어에 관한 연구 - 용어정비를 위한 기초이론 -』, 한국법제연구원, 1995
- _____, 『법령입안기준개발에 관한 연구(I)』, 한국법제연구원, 2003.
-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 순화정비의 체계화·민주화를 위한 연구』, 2004

참 고 문 헌

성낙인, 『프랑스 헌법학』, 법문사, 1995

장병일, 『부동산등기법의 법령용어 및 문장의 정비와 순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

한국법제연구원·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외국법의 계수와 법령용어』, 2002

《외국문헌》

Gérard Cornu, *Linguistique juridique*, Montchrestien, 2000

_____, *Vocabulaire juridique*, Puf, 2003

_____, “Français juridique et science du droit”,
Français juridique et science du droit, Bruylant,
1995

Jacques Vanderlinden, “Du droit et de la langue ou de la
langue et du droit?”, *Français juridique et science
du droit*, Bruylant, 1995

Jean Louis Sourieux et Pirre Lerat, *Le langage du droit*,
Puf, 1975

_____, “Le français juridique comme langue
spécialisée”, *Français juridique et science du droit*,
Bruylant, 1995

- Marie-Laure, Mathieu-Izorche, *Le raisonnement juridique*, Puf, 2001
- Jean-Claude Gémard, “Le langage du droit au risque de la traduction. De l’universel et particulier”, *Français juridique et science du droit*, Bruylant, 1995
- Nicole M. Fernbach, “La simplification du texte juridique : Étude comparative”, *Français juridique et science du droit*, Bruylant, 1995
- Jean-Louis Bergel, *Méthodologie juridique*, Puf, 2001
- _____, *Théorie générale du droit*, Dalloz, 2004
- François Terré, *Introduction générale au droit*, Dalloz, 2003
- Daniel Gutmann, “L’objectif de simplification du langage législatif”, *Les mots de la loi*, sous la direction de Nicolas Molfessis, Economica, 1999
- Denis Alland et Stéphane Rials, *Dictionnaire de la culture juridique*, Puf, 2003
- Patrick Glenn, “Droit comparé et langages juridique”, *Français juridique et science du droit*, Bruylant, 1995
- Denis Tallon, “Le choix des mots au regard des contraintes de traduction”, *Les mots de la loi*, sous la direction de Nicolas Molfessis, Economica, 1999

A

Abandon 【민법】 포기,유기 【형법】 유기	Abus de faiblesse 【민법】 위약의 남용
Abandon d'enfant 【민법】 자의 유기	Abus de majorité 【상법】 다수결의 남용
Abandon de famille 【형법】 가족의 유기	Abus de minorité 【민법】 소수의 남용
Abattement 【개정】 공제 【사보】 감액	Abus de position dominante 【민법】 지배적 지위의 남용
Abattement à base 기초공제	Abusus 【민법】 처분권
Abattement pour charges de famille 부양가족공제	Acceptation 【민법】 승낙, 승인 【상법】 인수
Abattement de zone 지역별감액	Acceptation de succession sous bénéfice d'inventaire 상속의 한정 승인
Abattement d'âge 연령별감액	Acceptation de donation 증여의 수락
Abordage 【민법】 선박의 충돌	Acceptation de succession(legs) 상속(유증)의 승인
Abornement 【민법】 토지의 경계확정	Acceptation de lettre de change 환어음의 인수
Aboutissants 【민법】 인접지	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행정】 행정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Abrogation 【국제】 (법률·국제조약 등의) 폐지	Accession 【민법】 부합
Absence 【민법】 생사불명	Accessoire 【일반】 부속적, 부수적, 부대적
Absentéisme 【노동】 결근	- chose accessoire(종물)
Absolution 【형법】 형의 면제	- clause accessoire(부대조항)
Absolutisme 【헌법】 절대주의	- demande accessoire(부대청구)
Abstention 【소송】 (판사의) 회피	- frais accessoire(부대비용)
Abstention délictueuse 【형법】 부작위 범죄	Accident de mission 【민법】 기업외의 재해
Abus d'autorité 【민법】 권위의 남용	Accident de trajet 【민법】 통근재해
Abus de biens sociaux 【상법/형법】 회사재산의 남용	Accident du travail 【민법】 산업재해
Abus de blanc-seing 【형법】 백지위임장의 남용	Accipiens 【민법】 수령자
Abus de confiance 【형법】 배임	Accises 【재정】 개별소비세
Abus de domination 【상법/형법】 지배의 남용	Acconier 【해상】 항만운송업자
Abus de droit 【민법】 권리의 남용	Accord 【일반】 합의

Accord atypique 【노동】 비전형협정	Acte authentique 【민법】 공정증서
Accord collectif 【노동】 단체협정(협약)	Actes d'autorité et de gestion (distinction des) 【행정】 권력행위와 관리행위(의 구별)
Accord dérogatoire 【노동】 특례협정	Acte bilatéral 【민법】 쌍방적 행위
Accord de modulation 【노동】 탄력적 근로시간제 협정	Acte à cause de mort 【민법】 사인 행위
Accréditer 【국제】 (외교관을) 임명하다	Acte de commerce 【상법】 상행위
Accréditif 【상법】 (은행 등이 발행하는) 신용장	Acte-condition 【일반】 조건행위
Accroissement 【민법】 (상속인 등의 지 분의) 증가	Acte consensuel 【민법】 낙성행위
Accusatoire 【소송】 당사자주의적, 탄핵 주의적	Acte conservatoire 【민법】 보존행위
Achalandage 【상법】 고객	Acte constitutif 【민법】 창설적 행위
Acompte 【노동】 가불임금	Acte déclaratif 【민법】 선언적 행위
Acquêts 【민법】 (혼인 후에 부부 또는 각각이 취득한) 후득재산	Acte déguisé 【민법】 가장된 행위
Acquiescement 【민소】 인락	Acte détachable 【민법】 분리할 수 있 는 행위
Acquiescement à la demande(청구 의 인락)	Acte de disposition 【민법】 처분행위
Acquisition 【민법】 취득	Acte de l'état civil 【민법】 신분증서
- Acquisition à titre onéreux(유 상취득)	Acte exécutoire 【민법】 집행력이 있는 증서
- Acquisition à titre gratuit(무 상취득)	Acte extrajudiciaire 【민소】 재판외 문서
Acquit 【민법】 수령증	Acte fictif 【민법】 가장행위
Acquittement 【형소】 (중죄)무죄판결	Actes de gestion 【행정】 관리행위
Acte 【민법】 증서, 행위	Acte de gouvernement 【헌법】 통치 행위
Acte administratif 【행정】 행정행위	Acte gracieux 【민소】 비송행위
Acte d'administration 【민법】 관리 행위	Acte individuel 【행정】 개별행위
Acte apparent 【민법】 표현증서, 표현 행위	Acte d'instruction 【형소】 예심행위
Acte d'appel 【민소】 항소신청	Acte instrumentaire 【민법】 증서
	Acte judiciaire 【소송】 재판상의 행위 (증서)
	Acte juridique 【일반】 법률행위

Acte juridictionnel 【소송】 재판행위	Action cotée 【상법】 상장주
Acte mixte 【상법】 일방적 상행위	Action déclaratoire 【민소】 확인소권, 확인의 소
Acte notarié 【민법】 공증인 증서	Action directe 【민법】 직접소권
Acte de poursuite 【형소】 소추행위 【재정】 강제징수	Action disciplinaire 【소송】 징계소권, 징계의 소
Acte de procéder 【소송】 절차행위	Action d'état 【민법】 신분소권, 신분의 소
Actes préparatoires 【형법】 예비행위	Action à futur 【민소】 장래를 위한 소권, 장래를 위한 소
Acte recognitif 【민법】 승인증서	Action illicite sur les prix 【상법/형법】 가격조작행위
Acte-règle 【민법】 법규행위	Action immobilière 【민소】 부동산소권,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소
Acte sous seing privé 【민법】 사서증서	Action en inscription de faux 【민법/민소】 공정증서위조의 소
Acte à titre gratuit 【민법】 무상행위	Action de jouissance 【상법】 향익주식
Acte à titre onéreux 【민법】 유상행위	Action en justice 【소송】 소권, 재판상의 소
Actes de tolérance 【민법】 허용행위	Action mixte 【민소】 혼합소권, 혼합의 소
Acte translatif 【민법】 이전행위	Action mobilière 【민소】 동산소권, 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소
Acte-type 【행정】 표준문서양식	Action nominative 【상법】 기명주식
Acte unilatéral 【민법】 일방적 행위	Action de numéraire 【상법】 금전출자주식
Acte unique européen 【국제】 단일 유럽의정서	Action oblique 【민법】 채권자대위소권, 채권자대위의 소
Acte entre vifs 【민법】 생전행위	Action personnelle 【민소】 대인소권, 대인의 소
Actif 【민법】 적극재산 【상법】 자산	Action au porteur 【상법】 무기명주식
Action 【소송】 소권, 소송	Action possessoire 【민법】 점유소권, 점유의 소
Action(s) 【상법】 주식	
Action d'apport 【상법】 현물출자주식	
Action associationnelle 【민소】 비영리사단의 소권	
Action de capital 【상법】 자본주식	
Action civile 【형소】 사소, 사소권, 범죄피해자의 손해배상의 소	
Action de concert 【상법】 협조행위	
Action confessoire 【민소】 지역권 확인소권, 지역권 확인의 소	
Action en contestation d'état 【민소】 신분이의소권, 신분이의의 소	

Action de priorité 【상법】 우선주식	de redressement et de liquidation judiciaires) 【상법/민소】 법정관리인
Action publique 【소송】 공소	Administrateur légal 【민법】 법정재산 관리인
Action en réclamation d'état 【민법】 신분주장소권, 신분주장의 소	Administrateur provisoire 【상법】 임시이사
Action récursoire 【민법】 구상소권, 구상의 소	Administrateur-séquestre 【민법/민소】 계쟁물관리인
Action réhabilitaire 【민법】 해제소권, 해제의 소	Administrateur de société 【상법】 (회사의) 이사
Action réelle 【민법】 대물소권, 대물의 소	Administration 【행정】 행정, 행정기관 【민법】 관리권, 관리
Action syndicale 【민소】 노동조합(또는 직업조합의) 집단적 소권 · 소송	Administration légale 【민법】 법정재산관리
Actionnaire 【상법】 주주	Admissibilité 【민법】 증거능력
Actionnariat des salariés 【노동】 근로자지주제	Admission 【국제】 가맹의 승인
Adage 【일반】 법격언	Admission des créances 【상법/민소】 채권의 확정
Ad agendum 【민소】 소권을 목적으로	Admonestation 【형법】 계고
Ad exhibendum 【민소】 제출을 목적으로 하는	Adoptant 【민법】 양친
Ad hoc 【일반】 특별의	Adopté 【민법】 양자
Adhésion 【민법】 부합 【노동】 가입 【국제】 가입, 가맹	Adoptif 【민법】 양자의
Adjudicataire 【민법】 경락인 【행정】 낙찰자	Adoption 【민법】 양자결연
Adjudication 【행정】 입찰 【민법/민소】 경락, 경매	Adoption plénière 【민법】 완전양자결연
- Adjudication publique ouverte (일반경매입찰)	Adoption simple 【민법】 단순양자결연
- Adjudication publique restreinte (지명경쟁입찰)	Agent d'affaires 【상법】 거래중개업자, 거래대리인
Administrateur 【민법】 재산관리인	Agent de change 【상법】 (주식 등의) 중매인
Administrateur judiciaire 【민법】 재판상 관리자	Agent commercial 【상법】 상업대리인, 판매대리인
Administrateur judiciaire (procédures	Agent comptable 【재정】 회계관
	Agent diplomatique 【국제】 외교관

Agent général d'assurances 【노동】 보험대리업자	Alignement 조정
Agent de probation 【형법】 보호관 찰관	Alignement des prix 가격조정
Agent public 【행정】 공무원	Alignement monétaire 통화조정
Agios 【상법】 수수료	Alimentaire 【민법/사보】 부양의 - obligation alimentaire(부양의무)
Agrément 【일반】 승인	Aliments 【민법】 부양료
Agression 【국제】 침략	Allégation 【민소】 주장
Agressions sexuelles 【형법】 (범 죄로서의) 성적 공격	Alliance 【민법】 혼인관계
Agriculture 【민법/상법】 농업	Allocataire 【사보】 수급권자
Aide à l'accès au droit 【소송】 권리 실현부조	Allocation 【사보】 수당
Aide aux pays en voie de développement 【국제】 개발도상국 원조	Allocations de chômage 【사보】 실 업수당
Aide judiciaire 【소송】 사법부조	Allocation familiale 【사보】 가족수당
Aide juridictionnelle 【소송】 사법부조	Allotissement 【민법】 분할
Aide juridique 【소송】 법률부조	Alternance 【헌법】 정권교체
Aide sociale 【사보】 사회복지부조	Alternatives à l'emprisonnement 【형법】 구금형의 대체
Ajournement 【일반】 연기, 정회	Ambassade 【국제】 대사관
Ajournement d'un projet de loi 【공법】 법안심의의 연기	Ambassadeur 【국제】 대사, 사절
Ajournement du prononcé de la peine 【형법】 형의 선고유예	Aménagement foncier 【행정】 토지정비
Alerte 【상법】 경고	Aménagement du territoire 【행정】 국토정비
Alibi 【형소】 현장부재증명	Amende 【일반】 벌금
Aliénabilité 【민법】 양도가능성	Amendement 【헌법】 수정안
Aliénation 【민법】 양도	Amiable compositeur 【민법】 중재인
Aliénation mentale 【민법】 정신이상	Amnistie 【형법】 (법률에 의한) 일반 사면
Aliéné 【민법】 양도된	Amodiation 【행정】 국유지임대차 (특히 광산개발위탁계약)
Aliéner 【민법】 (재산·권리를) 양도하다	Amortissement (부채의) 상환, 감가 상각
Aliéné mental 【민법】 정신병자	Amortissement des obligations 사 채의 상각

Amortissement du capital	자본	Appel incident	부대항소
상각		Appel d'offres	경쟁입찰의 공고
Amortissement financier	부채상각	Appel principal	주된 항소
Amortissement industriel	사업상각	Appelant	항소인, 상소인
Ampliatif(ive) 등본의		Appelé	피지정자
- Acte ampliatif	등본	Apport	출자
Ampliation	등본	Apport(s) en société (회사에의)	출자
Analogie	유추	Appréciation de légalité 【행정】	적법
Anatocisme 【민법】	복리법	성심사	
Animus 【민법】	의도	Apprentissage 【노동】	견습
Ancienneté 【노동】	근속연수	Approbation 【국제】	승인
Annexe	첨부서류	Arbitrage 【노동】	중재 【민소】 중재 【공
Annexion 【국제】	병합	법】	재정
Annonce	공고, 공표	Arbitrage international 【국사】	국제
Annonce administrative	행정공고,	중재	
고시		Arbitre 【민소】	중재인
Annonce judiciaire(légal)	사법(법정)	Argument	주장, 논증, 증명
공고		Armes	무기
Annualisation	취소	Armistice	휴전협정
Annulabilité	취소가능성	Arpentage	토지측량
Annulation	취소	Arrestation	체포
Antériorité	선재성, 선행성	Arrêt	판결, 체포, 구속, 구금
Antériorité du brevet(de la marque)	특허증(상표)의 선행성	Arrhes	예약금
Antériorité du budget	예산선재성	Arrondissement	구
Antichrèse	부동산질	Ascendant	존속
Apatride	무국적자	Asile diplomatique	외교적 비호
Apériteur 【민법】	대표보험자	Assassinat	모살
Apparence 【민법/상법】	외관, 표현	Assemblée constituante	헌법제정의회
Apparent(ente) 명백한, 표현적인		Assemblée générale	총회
- Mandat apparent	표현대리	Assemblée générale des Nation Unies	국제연합총회
Apparemment	정책연합	Assemblée national	국민의회
Appel	항소, 상소	Assemblée plénière	대법정

Assesleurs 배심법관	금보장보험
Assiette(des cotisations) 보험료의 산정기초	Assurance invalidité 폐질보험
Assiette de l'impôt 과세표준	Assurance maladie 질병보험
Assignation 호출	Assurance maternité 출산보험
Assignation à résidence 【국사】 거소지정	Assurance veuvage 생존배우자보험
Assistance 부조	Assurance vieillesse 노령보험
Assistance mutuelle 상호부조	Assurance volontaire 임의가입보험 - Assurance personnelle 개별가입보험
Assistance publique 공적 부조	Assuré social 피보험자
Association 비영리사단	Atermoiement 변제유예
Association internationale de développement (AID) 국제개발협회	Atteinte à la dignité 인간의 존엄에 대한 침해
Association en participation 익명사단	Atteinte à la liberté du travail 노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
Associé 사원	Atteinte sexuelle 성적 침해
Assujettissement 【사보】 가입의무	Atteintes involontaires 고의가 아닌 침해
Assurance 보험	Atteintes à la sûreté de l'Etat 국가의 안전에 대한 침해
Assurance automobile 자동차보험	Atteintes à la vie privée 사생활에 대한 침해
Assurance caution 보증보험	Attendu 판결이유
Assurance crédit 신용보험	Attestation 증언서, 증거
Assurance contre les accidents corporels 상해보험	Attestation d'embauche 고용증명서
Assurances de dommages 손해보험	Attributaire 수급자
Assurance de groupe 단체보험	Attribution de juridiction 재판권의 부여
Assurance contre l'incendie 화재보험	Audience 법정, 기일
Assurance contre le vol 도난보험	Audition des parties 당사자의 심문
Assurance de responsabilité 책임보험	Audition des témoins 증인심문
Assurance sur la vie 생명보험	Audition des tiers 제3자 심문
Assurance chômage 실업보험	Auteur 【민법】 피승계인 【형법】 행위자,
Assurance décès 사망보험	
Assurance garantie des salaires 임금	

정범
 - Co-activité(공동실행)
 - Complicité(공범)
 Authenticité 【민법】 공정성
 - Acte authentique(공정증서)
 Authentification 공정, 감정
 Autodétermination 자기결정
 Autofinancement 자기금융
 Autonomie financière 재정자치
 Autonomie de la volonté 의사자치
 Autorisation 허가
 Autorité judiciaire 사법권, 사법기관
 Autorité de chose jugée 기판력
 - Chose jugée(기판사항)
 Autorité parentale 친권
 Autorités publiques 공권력
 - Pouvoirs publics(공권력)
 Avant-contrat 예약
 Avantage en nature 현물급여
 Avantages acquis (maintien des) 기
 득권(의 유지)
 Avantages contributifs 기여제급여
 Avantages non contributifs 비기여
 제급여
 Avenant (계약의) 변경
 Avertissement 납세통지, 계고, 통지,
 경고
 Aveu 자백
 Avis 의견
 Avis d'imposition 납세통지
 Avis de mise en recouvrement 납세
 결정통지
 Avis à tiers-détenteur 제3채무자에의

압류통지
 Avocat 변호사
 Avortement 낙태
 Ayant cause 승계인
 Ayant cause à titre particulier 특
 정승계인
 Ayant cause à titre universel,
 Ayant cause universel. 포괄승계인
 Ayant droit 【민법】 권리자, 권리승계인
 【사보】 피부양자

B

Bail 【민법】 임대차
 Bail commercial 【상법】 상사임대차
 Bailleur 【민법】 임대인
 Balance des forces 【국제】 세력균형
 Balance des paiements 【일반】 국제
 수지
 Bannissement 【형법】 추방
 Banque 【상법】 은행
 Banque centrale européenne (BCE)
 【국제】 유럽중앙은행
 Banque de données juridiques 【일
 반】 법률데이터뱅크
 Banque européenne d'investissement
 (BEI) 【국제】 유럽투자은행
 Banque de France 【재정】 프랑스 은행
 Banque internationale pour la
 reconstruction et le développement
 (BIRD) 국제부흥개발은행
 Barreau 변호사회

Base mensuelle de calcul 【사보】 산정기초월액	- Monnaie(화폐, 통화)
Bénéfices 【상법】 이익	Bipartisme 양당제
Bénéfice de discussion 【민법】 검색의 이익	Blanc-seing 백지서명, 백지증서
Bénéfice de division 【민법】 분별의 이익	Bloc de contrôle 지배주
Bicamérisme ou bicaméralisme 이 원제, 양원제	Blocus 【국제】 봉쇄
Bien 재산, 재물	Bon 인환권, 증서, 어음, 채권
Biens communs 공동재산	Bons d'achat 【노동】 구매권
- Biens propres(고유재산)	Bon de caisse 【상법】 채권
Biens consommables 소비재산	Bon de délégation 【노동】 대표활동증 명서
- Choses consommables(소비물)	Bons offices 【국제】 주선, 알선
Biens corporels 유체재산	Bons du Trésor 【재정】 단기국채
- Biens incorporels(무체재산)	Boni de liquidation 【상법】 청산잉여금
- Chose corporelles(유체물)	Bonne foi 【민법】 선의, 성실 【형법】 선의
- Droit corporel(유체재산권)	Bonnes moeurs 선량한 풍속
Biens de famille 가족재산	Bornage 【민법】 경계 획정
Bien-fondé 【민소】 이유가 있는	Bourse de commerce ou de marchandises 【상법】 상품거래소
Bien incorporel 무체재산	Bourse de valeurs 증권거래소
- Droit incorporel(무체재산권)	Boycottage 보이콧
Biens insaisissables 가압류금지재산	Brevet 원본교부증서
Biens propres 고유재산	- Minute(원본)
Biens réservés 유보재산	Brevet d'invention 【상법】 발명특허
Bigamie 중혼	Budget 예산
Bilan 【상법】 대차대조표	Bulletin de greffe 【민소】 통지서
Bilan consolidé 연결대차대조표	Bulletin de paie 임금지불명세서
Bilan de santé 【사보】 무상건강진단	Bulletin de vote 투표용지
Bilan social 【노동】 노동조건보고서	Bulletins nuls 무효투표
Billet à ordre 【상법】 약속어음	Bureau 【민법】 집행부
Billet de banque 은행권	Bureau international du travail ILO 사무국
- Cours forcé(강제통용력)	Bureau de placement 민영직업소개소
- Cours légal(법정통용력)	

C

Cabinet ministériel 내각	conditions(조건등가이론)
Cadastre 토지대장	Cause 【민법】 원인 【민소】 원인, 소송
Cadre 【사보】 관리직	Cause réelle et sérieuse 【노동】 (해고의) 현실적이고 중대한 이유
Caducité 【민법】 실효	Caution 【민법】 보증인
Caisses de Sécurité sociale 사회보장 금고	- Cautionnement(보증)
Cambiaire 어음의	- Consignation(공탁)
Campagne électorale 선거운동	Cautionnement 【민법/상법】 보증, 보 증금공탁
Candidature 입후보	Cautionnement électoral 선거공탁금
Cantonnement 【민법】 제한	Cédant-cessionnaire 양도인, 양수인
Capacité 【민법】 능력	- Cession de créance(채권양도)
Capacité d'ester en justice 【민소】 소송능력	Célibat (clause de) 【노동】 결혼퇴직 조항
Capital 【민법】 자본, 원본	Censure 【행정】 검열 【헌법】 불신임
- Intérêt(이자)	Centralisation 중앙집권
Capitalisation 【사보】 적립방식	Centralisme démocratique 민주집 중제
Capital social 【상법】 (회사의) 자본	Centres de détention 【형법】 (수형 자의 사회복지를 주 임무로 하는) 구 류센터
Capital variable 가변자본	Centre des impôts 세무서
Capitaux propres 자기자본	Certain 【민법/민소】 확정된, 특정한
Carte nationale d'identité 신분증 명서	Certificat de nationalité 국적증명서
Carte professionnelle 직업증명서	Certificat de non-paiement 지불거절 증명서
Cartel 카르텔	Certificat de propriété 【민법/상법】 소유증명서
Cas fortuit 【민법】 불가항력, 내재적 불가항력	Certificat de travail 【노동】 노동증 명서
Casier judiciaire 【형법】 전과부	Certification (en matière de chèque) 지불보증
Cassation 파기	Cessation des paiements 지불정지
Causalité 【민법】 인과관계	
- Théorie de la causalité adéquate (상당인과관계)	
- Théorie de l'équivalence des	

Cessibilité(Arrêté de) 【민법】 수용허용(결정)	Charte sociale européenne 유럽사회헌장
Cession 양도	Charte du travail 노동헌장
Cession à bail 【국제】 조차(租借)	Chef de l'Etat 국가원수
Cession de créance 채권양도	Chef d'entreprise 기업장
Cession de dettes 채무인수	Chef de famille 가장
Cession de droits litigieux 제쟁 중의 권리의 양도	- Administration légale(법정재산 관리)
Cession de droits successifs 상속 권의 양도	- Autorité parentale(친권)
Cession de salaire 임금채권의 양도	Chèque 수표
Chambre 【헌법】 의원(議院) 【민소】 부	Chèque barré 횡선수표
Chambre civile 민사부	Chèque postal 우편수표
Chambre de commerce et d'industrie 【상법】 상공회의소	Chèque de voyage 여행수표
Chambre commerciale et financière 【민소】 상사부	Chirographaire 무담보의
Chambre criminelle 【형소】 형사부	- Créancier chirographaire(일반 채권자)
Chambre sociale 【민소】 사회부	Chômage 실업
Chambre réunies 【민소】 연합부	Choses 물건
Chantage 【형법】 공갈	Choses communes 【민법】 공동물
Chapitre budgétaire 【재정】 예산과목	Choses consommables 【민법】 소비물
Charges 【민법】 부담 【사보】 사회보장 부담	Choses corporelles 유체물
Charges indues 【사보】 부당부담	- Biens corporels(유체재산)
Charte 헌장	- Biens incorporels(무체재산)
Charte des droits fondamentaux de l'Union européenne 유럽연합 기본권헌장	- Droit corporel(유체재산권)
Charte européenne des droits sociaux fondamentaux des travailleurs 근로자의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유럽 헌장	- Droit incorporel(무체재산권)
	Choses fongibles 【민법】 대체물
	Choses frugifères 【민법】 원물
	Choses de genre 【민법】 종류물
	Chose jugée 【민소】 기판사항
	- Opposabilité(대항력)
	- Tierce opposition(제3자 이의의 소)
	Circonscription électorale 선거구
	Circonstances aggravantes 【형법】

가중사유		노동】 경업금지조항
Circonstances atténuantes 【형법】 경감사유		Clause de non-réembauchage 【노동】 경업금지조항
Circonstances exceptionnelles 【행정】 예외상황 【헌법】 비상사태 - Pouvoirs exceptionnels(비상사태 태권한)		Clause de non-rétablissement 【민법/노동】 영업재개금지조항
Circulaires 【행정】 통달, 지침		Clause pénale 【민법】 과태약관, 제재 조항
Citation (en justice) 【민소】 (재판상의) 호출		Clause de réserve de propriété 【상법】 소유권유보조항
Citoyen 시민, 공민		Clause de sécurité syndicale 【노동】 단결보장조항
Civilement responsable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자)		Clause de style 【민법】 전형조항
Classement 【행정】 공용개시		Clientèle 고객
Classement sans suite 불기소처분		Clientèle (droit de) 고객(권)
Clause 조항		Closed-shop (Clause) 클로즈드샵 (조항)
Clause abusive 부당조항		Co-activité 【형법】 공동실행
Clause d'agrément 【상법】 승인조항		Coalition 【노동】 (파업을 위한 일시적) 단결
Clause commerciale 【민법】 영업재산 조항		Code 법전 - Codification(법전화)
Clause de conscience 【노동】 양심조항		Codécision 공동결정
Clause d'échelle mobile 【민법】 슬라이딩 스케일조항 - Echelle mobile des salaires(임금 슬라이드제) - Indexation(지수슬라이드방식)		Codification 법전화
Clause de garantie de passif 【상법】 부채보증조항 - Garantie de passif(부채보증)		Coexistence pacifique 【국제】 평화적 공존 - Guerre froide(냉전)
Clause de mobilité 【노동】 전직조항		Cofidésseurs 【민법】 공동보증인
Clause de la nation la plus favorisée 최혜국조항		Cogestion 【노동】 공동관리
Clause de non-concurrence 【상법/		Cohabitation 【민법】 동거 【헌법】 좌우 동거
		Colitigants 【민소】 공동소송인 - Litigants(계쟁당사자) - Litisconsorts(공동소송인)

Collatéral 방계	administratifs(CADA) 【행정】 행정문서 공개청구 심사위원회
Collectivités locales 지방자치단체	- 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Droit d')(행정 문서공개)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지방자치단체	Commission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유럽인권위원회
Collégialité 【소송】 합의제	Commission d'indemnisation des victimes d'infractions 범죄피해자보상위원회
Collocation 【민소】 순위결정	Commission mixte paritaire 양원 합동 동수위원회
Colonisation 식민지화	Commission nationale de la négociation collective 단체교섭전국위원회
- Annexion(병합)	Commission des opérations de bourse 증권거래위원회
- Cession à bail(조차)	Commission parlementaire 국회의 위원회
- Concession(조계)	Commissionnaire 【상법】 중개상
- Condominium(공동통합)	Commodat 사용대차
- Décolonisation(비식민지화)	Common law 커먼로
- Porte ouverte(문호개방)	Communauté entre époux 【민법】 부부공동재산
- Protectorat(보호관계)	- Acquêts(후득재산)
Colportage 【형법/상법】 행상	Communauté européennes 유럽공동체
- Démarchage(방문판매)	Communauté européenne de défense (CED) 유럽방위공동체
Comité électoral 선거후원회	Communauté politique européenne 유럽정치공동체
Comité d'entreprise 기업위원회	Communauté de vie 【민법】 생활공동
Commandement 【민소】 (가압류 전의) 최고	Communes 【행정】 시군구
Commanditaire 유한책임사원	Communication du dossier 【행정】
Commandité 무한책임사원	
Commencement d'exécution 【형법】 실행의 착수	
- Tentative(미수)	
Commerçant 상인	
Commettant 위탁자, 위임자	
Comminatoire 【민법/민소】 위협적인	
Commissaire aux comptes 【상법】 회계감사	
Commission 【민법/상법】 수수료 【소송】 위임	
Commission d'accès aux documents	

일건서류의 전달	Compétence territoriale 토지관할
Communication de pièces 【민소】 증서의 전달	Complicité 공범
Comparution 【민소】 출두	Cmpromis 【민법】 가계약 【민소】 중재 계약
Comparution immédiate 【형소】 즉 시출두	Comptabilité 기업회계
Comparution personnelle 【소송】 본인출두	Comptabilité publique 공회계
- Audition des parties(당사자청문)	Comptable assignataire 지불담당회계
- Mesures d'instruction(증거조사)	Compte administratif 【행정】 결산서
Comparution volontaire 【형소】 임의 출두	Comptes consolidés 【상법】 연결계산 서류
Compensation 【민법】 상쇄	Compte de dépôts 예금구좌
Compétence 【사법/공법】 (관할)권한	Compte de gestion 회계보고서
Compétence d'attribution 【행소/민 소】 사물관할	Compte joint 복수명의구좌
- Compétence territoriale (토지 관할)	Compte de pertes et profits 손익 계산서
Compétence civile 민사관할	Compte de résultat 성과계산서
Compétence commerciale 상사관할	Compulsoire 【민법/민소】 등본교부신청
Compétence discrétionnaire	Computation 【소송】 산정
Compétence liée 재량권한, 기속권한	Conception 임신
- Pouvoir discrétionnaire(재량권한)	Concertation 【행정】 협의
- Pouvoir lié(기속권한)	Concession 【행정】 특허 【국제】 족계
Compétence exclusive 전속관할	Concession commerciale 특약점 계약
Compétence internationale 국제재 판관할	Concession immobilière 부동산이용 권 설정
- Conflit de juridictions(재판관 할권의 저촉)	Conciliation 【국제】 조정 【노동】 알선 【민소】 화해
Compétence matérielle 사물관할	Concordat 【상법】 강제화의의
Compétence nationale (domaine de la) 국내관할권	Concours 【행정】 경쟁시험
Compétence pesonnelle 인적 관할	Concours (ou cumul) idéal d'infractions 범죄의 관념적 경합
	Concours (loi du) 【민법】 경합의 (법칙)
	Concours réel d'infractions 범죄의 실제적 경합

Concubinage 【민법】 내연	Conflit mobile 【국사】 법률의 복합저촉
Concurrence 【상법】 경쟁	Conflit de nationalités 국적의 저촉
- Droit de la concurrence(경쟁법)	Confrère 동업자
Concurrence déloyale 【상법】 부정경쟁	Confrontation 【소송】 대질
Concussion 【형법】 공금횡령	Confusion 【민법】 혼동
Condition 【민법】 조건	Confusion des peines 【형법】 형의 흡수
- Terme(기한)	Congé 【민법】 해지신청 【노동】 휴가, 해고
Condition des étrangers 외국인의 법적 지위	Congé spécial 【행정】 특별휴직
Condition potestative 【민법】 수의 조건	Congédiement 【노동】 해고
Condition préalable 【형법】 전제조건	Conjoint à charge 【사보】 부양배우자
Condominium 【국제】 공동통치	Conjoint survivant 생존배우자
Confédération 【국제】 국가연합 【노동】 총연합체	Conjonctif 【민법】 공동의
Conférence 【국제】 회의	Connaissance 【해상】 선하증권
Confirmation 【민법】 추인 【민소】 (원 판결) 유지	Connexité 【민소/형소】 관련성
Confiscation 【형법】 몰수	Conseil d'administration 【상법】 이사회
Conflit collectif de travail 집단적 노동분쟁	Conseil constitutionnel 헌법재판소
Conflit collectif d'ordre juridique 집단적 권리분쟁	Conseil d'Etat 국사원
Conflit collectif d'ordre économique et social 집단적 이익분쟁	Conseil de l'Europe 유럽심의회
Conflit de compétence 【민법】 관할 권한의 저촉	Conseil européen 유럽이사회
Conflit de juridictions 【국사】 재판 관할권의 저촉	Conseil de prud'hommes 노동법원
Conflit de lois 【국사】 법률의 저촉	Conseil de sécurité 【국제】 안전보장 이사회
Conflits de lois dans le temps 【국사】 법률의 시간적 저촉	Conseil de tutelle 【국제】 신탁통치 이사회
	Consensualisme 【민법】 의사주의, 낙성주의
	Consentement 【민법】 동의, 합의
	Consentement de la victime 【형법】 피해자의 동의
	Considérant 【소송】 이유, 이기 때문에

Consignation 공탁	Contrat 계약
- Exécution provisoire(가집행)	Contrat administratif 행정계약
Consolidation 【민법】 혼동	Contrat d'adhésion 부합계약
Consolidation de blessure 【사보】 증상의 고정	Contrat aléatoire 사행계약
Consolidation comptable 【상법】 (계 산서류의) 연결	Contrat d'entreprise 도급계약
- Bilan consolidé(연결대차대조표)	Contrat innomé 무명계약
- Comptes consolidés(연결계산서류)	Contrat de licence 라이선스계약
Consommateur 소비자	Contrat de mariage 부부재산계약
Consummation 【형법】 기수	Contrat nommé 유명계약
Consumptible 【민법】 소비되는	Contrat pignoratif 양도담보계약
- Choses consommables(소비재)	Contrat successif 계속적 공급계약
Consorts 공동이해관계인	Contrat synallagmatique 쌍무계약
Constatation 확인	- Contrat unilatéral(편무계약)
Constatations 【민소】 인정	Contrat à titre onéreux 유상계약
Constitution 헌법	- Acte à titre onéreux(유상행위)
Constitution d'avocat 변호사 선임	Contrat de transport 운송계약
Constitutionnalisme 입헌주의	Contrat de travail 근로계약
Constitutionnalité des lois (contrôle de) 법률의 합헌성 심사	Contrat-type 표준계약
Consul 영사	Contrat unilatéral 편무계약
Consumérisme 소비자운동	- Contrat synallagmatique(쌍무 계약)
Contenance 면적	Contredit 【민소】 이의신청
Contentieux 소송	Contre-enquête 【민소】 대항심문
Contentieux administratif 행정소송	- Enquête(증인심문)
Contentieux de la Sécurité sociale 사회보장소송	Contre-expertise 【민소】 재감정
Continuité de l'Etat 국가의 계속성	- Expertise(감정)
Contractuel 【행정】 계약직원	Contrefaçon 【상법/형법】 지적소유권의 침해, 위조
Contradiction 【소송】 대심	Contre-lettre 【민법】 반대증서
Contrainte 【재정】 집행영장 【형법】 강제 【민소】 집행영장	- Acte apparent(표현행위)
	- Simulation(허위표시)
	Contrôle administratif 행정감독
	Contrôle budgétaire 재정감독.

Contrôle judiciaire 사법상의 통제	Cour de cassation 파기원
Contumace 【형소】 결석재판	Cour des comptes 회계검사원
Convention 【민법】 합의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유럽인권재판소
Convention collective 단체협약	Cour internationale de justice 국제사법재판소
Convention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유럽인권협약	Cour de justice des communautés européennes (CJCE) 유럽공동체 재판소
Convention internationale du travail 국제노동협약	Cour pénale internationale 국제형사재판소
Coopératives 협동조합	Cour permanente d'arbitrage 상설중재재판소
Coopérative ouvrière de production 노동자생산협동조합	Cour permanente de justice Internationale 상설국제사법재판소
Copie certifiée conforme (du jugement) (판결의) 인증등본	Cours de bourse 【상법】 거래소 상장
Copie exécutoire 집행정본	Cours forcé 【민법/상법】 강제통용력
Copropriété 【민법】 공동소유, 구분소유	Cours légal 법정통용력
Corps certain 【민법】 특정물	Courtage matrimonial 혼인중매
- Choses fongibles(대체물)	Courtier 중개인
Corps électoral 선거인단	Coutume 관습법
Corréalité 【형법】 공동실행	Coutume constitutionnelle 헌법관습
- Co-activité(공동실행)	Coutume internationale 국제관습법
Cote boursière 【상법】 상장표	Créance 채권
Cote d'impôt 세액	Créancier 채권자
Cotisations de Sécurité sociale 사회보장보험료	Créancier chirographaire 일반채권자
Coup d'Etat 쿠데타	- Créancier hypothécaire(담보채권자)
Coups et blessures par imprudence 【형법】 과실상해	- Créancier privilégié(선취특권채권자)
- Atteintes involontaires(고의가 아닌 인신침해)	Crédientier 정기금채권자
- Homicide et blessures par imprudence(과실치사상)	Crédit (opérations de) 여신
Cour d'appel 항소법원	Crédit budgétaire 예산
Cour d'assises 중죄법원	

Crées 【민소】 경매기일
 Crime 【형법】 중죄
 Crime contre l'humanité 인도에 반하는 죄
 Criminalistique 범죄과학
 Criminalité 범죄
 Criminologie 범죄학
 Culpabilité 【형법】 유책성
 Cumul 【행정】 경합

D

Date certaine 【민법】 확정기일
 Dation en paiement 대물변제
 Débats 【소송】 변론
 Débiteur 채무자
 - Créancier(채권자)
 Débouté 【민소】 각하, 기각
 Décentralisation 분권화
 Déchéance 【민법】 실권 【헌법】 피선거자
 격의 상실
 Décision 재판, 판결, 결정, 결의
 Décision gracieuse 비송재판
 Déclarant 신고자, 진술자
 Déclaration universelle des droits de l'homme 세계인권선언
 Déconfiture 【민법/민소】 지불불능(상태)
 Défaut 【민소】 결석
 Défendeur 피고인
 Défenses à l'action 소에 관한 방어
 Défense au fond 본안에 관한 방어
 Défense (liberté de la) 방어의 자유

Défenseur 변호인
 Degré de juridiction 심급
 Déguisement 【민법】 위장행위
 Délai 기간
 Délai de carence 【사보】 대기기간
 Délai de grâce 【민법】 유예기간
 Délai préfix 【민법/민소】 제척기간
 Délai de procédure 절차기간
 Délai de viduité 재혼기간
 Délégation 위임
 Délégation de pouvoir 권한위임
 Délégation de signature 서명위임
 Délégués du personnel 종업원대표위원
 Délégué syndical 조합대표위원
 Délibération 심의, 의결
 Délibéré 【소송】 합의
 Délimitation des frontières 【국제】
 경계확정
 Délinquant 【형법】 범죄자
 Délinquant primaire 초범자
 Délit 범죄
 Délit civil 불법행위
 Délit non intentionnel 과실범
 Délit praeter-intentionnel 결과적
 가중범
 Délivrance 【민법】 인도
 Demande additionnelle 【민소】 추가
 청구
 Demande incidente 부대청구
 Demande initiale 주된 청구
 Demande reconventionnelle 【민소】
 반소
 Demandeur 【민소】 원고

Démarchage 【상법/형법】 방문판매	Dépôt 【민법】 기탁
Démence 【형법】 심신상실	Dépôt de bilan 【상법】 대차대조표의 제출
Demeure 거주지	Dépôt légal (저작물 등의) 법정기탁의무
Démission 사직	Député (국민의회) 의원
Démocratie 민주제	Déréglementation 규제완화
Démocratie politique 정치적 민주주의	Dérogação 적용예외
Démocratie économique et sociale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	Désaveu 자백의 철회
Démocratie directe 직접민주주의	Descendant 직계비속
Démocratie libérale 자유주의적 민주 주의	Descente sur les lieux (법관의) 현 장검증
Démocratie médiatisée 간접화된 민 주주의	Déshérence 【민법】 상속인의 부존재
Démocratie pluraliste 복수정당제 민 주주의	Désistement 【헌법】 입후보사퇴 【민소】 취하
Démocratie populaire 인민민주주의	Dessins et modèles 【상법】 의장
Démocratie représentative 대의민 주주의	Destitution 【민소】 파면 【민법】 해임
Démocratie semi-directe 반직접민 주주의	Détachement 【행정】 파견
Dénonciation 【노동】 파기통고 【형소】 고발 【민소】 (가압류의) 통고	Détention 【민법】 점유
Dépénalisation 비형벌화	Détention criminelle 【형법】 금고(정 치범죄에 대한 자유박탈형)
Dépendance (du domaine public) 공물	Détention provisoire 【소송】 구류
Dépendance économique 【노동】 경 제적 종속	Détournement 【형법】 횡령 【행정】 남용 【민법】 횡령, 남용
Dépens 【민소】 소송비용	Détournement d'actif 【민법】 (채무 자의) 재산은닉
Dépenses en capital 【재정】 자본지출	Détournement de mineur 【형법】 미성년자유괴
Dépenses de transfert 이전지출	Détournement de pouvoir 【행정】 권한남용
Déplacement 【사보】 출장	Détournement de procédure 【행정】 절차남용
Déport 【소송】 회피	Dettes 채무
Déposition 【민소/형소】 공술	Dettes publiques 공채

Dévaluation 평가절하	- Actif disponible(현물, 유동자산)
Devis 견적서	- Marché du disponible(현물 시장)
Devise 통화	- Vente disponible(현물매매, 재고 매매)
Devoir juridique 법적 의무	Dispositif (principe) 【민소】 처분 권주의
Devoir moral 도덕적 의무	Dispositif du jugement 【민소】 판결 의 주문
Dévolutif (재산·권리의) 이전을 발생 시키는	Disposition à titre gratuit 【민법】 무상의 처분
Dévolution 【민법】 이전	- Acte à titre gratuit(무상행위)
Dictature 독재	Dissimulation 【민법/상법】 은닉
Diffamation 【형법】 명예훼손	Dissolution 【헌법】 해산
Diffusion 【형법】 공고	Divertissement 【민법】 횡령
Dignité de la personne 【형법】 인간의 존엄	Dividendes 【상법】 배당금, 이익배당
Dilatoire (응답을) 연기하다 (절차를) 지연하다	Division 【민법】 분별
Diplomatie 외교, 외교관	Divorce 이혼
Directives 【행정】 재량기준	Dockers 항만노동자
Discrétionnaire 재량	Documents 문서
Discipline 【행정】 징계	Dol 【민법】 사기 【형법】 고의, 범의
Discrimination 차별	Domicile 주소
Discussion 【민법】 검색	Domiciliataire 【상법】 지불담당자
- Bénéfice de discussion(검색의 이익).	Domiciliation 【상법】 지불장소
Disparition 【민법】 실종	Dommage 【민법】 손해
Dispense 【민법】 면제	Dommages et intérêts 【민법】 손해 배상금
Dispense de peine 【형법】 형의 면제	Donation 【민법】 증여
Disponibilité 【행정】 휴직 【민법】 처 분가능성	Donation de biens à venir 장래재 산의 증여
Disponible 【민법】 처분가능한, (즉시) 사용가능한	Donation déguisée 위장증여
- Fonds disponible(유동자금)	Donation indirecte 간접증여
- Marchandises disponible(재 고품)	Donation mutuelle 상호증여

Dossier 일건기록	송】 법과 사실
Douane (droits de) 관세	Droits fondamentaux 기본권
Double (Formalité du) (복수의) 원본 (방식)	Droit de gage général 【민법】 일반 담보권
Double degré de juridiction 【소송】 이심제	Droit de garde 【민법】 감호권
- Degré de juridiction(심급)	Droit des gens 국제법
Double original (복수)원본	Droit d'habitation 거주권
Droit 법, 권리	Droits de l'homme 인권
Droit acquis 기득권	Droit immobilier 부동산권
Droit administratif 행정법	Droit incorporel 무체재산권
Droit administratif pénal 행정형법	Droit d'ingérence humanitaire 【국 제】 인도적 개입의 권리
Droit d'auteur 저작권	Droits intellectuels 지적재산권
Droit cambiaire 어음법	Droit international privé 국제사법
Droit canonique 교회법	Droit international public 국제공법
Droit civil 민법	Droit maritime 해상법
Droit de clientèle 고객권	Droit mobilier 동산권
Droit commercial 상법	Droit moral 저작자 인격권
Droit commun 보통법	Droit naturel 자연법
Droit de communication 세무자료 제시요구권	Droit objectif 객관적 법, 법
Droit de la concurrence 경쟁법	Droit patrimonial 재산권
Droit de la consommation 소비자법	Droit pénal 형법
Droit constitutionnel 헌법	Droits de la personnalité 인격권
Droit corporel 유체재산권	Droit personnel 채권
Droit de créance 채권	Droit des peuples à disposer d'eux-mêmes 【국제】 민족자결권
Droits de la défense 【소송】 방어권	Droit positif 실정법
Droits économiques et sociaux 경 제적·사회적 권리	Droit de préemption 【민법】 선매권
Droit éventuel 【민법】 장래의 권리	Droit de préférence 【민법】 우선변제권
Droit extrapatrimonial 【민법】 비재 산권	Droit prétorien 판례법
Droit et fait (dans le procès) 【소	Droit privé 사법
	Droit processuel 소송법
	Droit de propriété 소유권

Droit public 공법
 Droit réel 물권
 Droit de repentir 【민법/상법】 철회권
 Droit de rétention 【민법】 유치권
 Droit rural 농사법
 Droits simples 【재정】 본세
 Droit subjectif 주관적 법, 권리
 Droit substantiel 실체적 권리
 Droits successifs 상속권
 Droit de suite 【민법】 추급권
 Droit de superficie 지상권
 Droit des transports 운송법
 Droit du travail 노동법
 Droit d'usage 사용권
 Droit de visite 【민법】 면접교섭권
 Ducroire 【상법】 이행담보
 Durée du travail 근로시간

E

Echange 【민법】 교환
 Echéance 【민법】 이행기
 Echelle mobile des salaires 임금슬라이드제
 Echevinage 참심제
 Ecole nationale d'administration (ENA) 국립행정학교
 Ecou 수형자명부
 Education permanente 평생교육
 Effet de commerce 상업증권
 Effet de complaisance 융통어음
 Effet constitutif 형성적 효과

Effets croisés 교환어음
 Effet déclaratif 선언적 효과
 Effet relatif des contrats 계약의 상대효
 Effet rétroactif 소급효
 Egalité des armes 【소송】 무기평등
 Egalité fiscale 조세의 평등
 Elargissement d'une convention collective 단체협약의 확대
 Electeurs inscrits 등록선거인
 Election 선거.
 Élément de l'infraction 범죄의 요소
 Eligibilité 피선거자격
 Embargo 출항금지, 수출금지
 Embauchage 고용
 Emploi 고용
 Employé 사무직근로자
 Employé de maison 가내근로자
 Employeur 사용자
 Emprisonnement 구금형
 Encan 【민법】 경매
 Enchères 【민소】 경매
 Endossement 배서
 Enfant 자
 Enfant à charge 피부양자녀
 Engagement à l'essai 수습계약
 Enquête 【헌법】 국정조사 【민소/형소】 증인신문
 Enquête de flagrance 현행범수사
 Enquête de police 경찰수사
 Enquête préliminaire 예비수사
 Enrichissement sans cause 【민법】 부당이득

Enseigne 간판
 Entente 카르텔
 Entrée en vigueur 시행, 발효
 Entrepreneur 수급인
 Entreprise 기업, 도급
 Entreprise nationalisée 국유화기업
 Entreprises publiques 공기업
 Environnement 환경
 Epave 【민법】 유실물
 Equité 형평
 Erreur 【민법】 착오
 Erreur de droit 법의 착오
 Erreur de fait 사실의 착오
 Escompte 【상법】 할인
 Etablissement 사업소
 Etablissement de crédit 금융기관
 Etablissement public 공시설법인
 Etablissement d'utilité publique
 공익시설
 Etat 국가
 Etat civil 민사신분
 Etat fédéral 연방국가
 Etats généraux 삼부회
 Etat des inscriptions 등기명세서
 Etat de nécessité 【형법】 긴급상태
 Etat-providence 복지국가
 Etat de siège 계엄
 Etat unitaire 단일국가
 Etat d'urgence 긴급사태
 Etranger 외국인
 Etre humain 사람, 인류
 Etre moral 법인
 Etude d'impact 영향조사

Etudiants 학생
 Euthanasie 안락사
 Evasion fiscale 조세회피
 Evocation 【민소】 이관 exception
 d'inexécution 동시이행의 항변
 Excès de pouvoir 【행정】 월권
 Exécuteur testamentaire 유언집행자
 Exécutif (pouvoir) 【헌법】 집행권, 집행부
 Exécution forcée 【형소/민소】 강제집행
 Exécution d'office 【행정】 직권집행
 Exécution provisoire 【민소】 가집행
 Expédition 【민법】 등본
 Expédition de jugement 판결정본
 Expert 【소송】 감정인
 Expertise 【소송】 감정
 Expertise médicale 의료감정
 Exposé des motifs (법령의) 제안이유
 Expulsion 추방, 강제퇴거
 Extension d'une convention
 collective 단체협약의 확장
 Exterritorialité 【국제】 치외법권
 Extradition 【국제/형법】 범죄인 인도
 Extrait 【민법】 초본

F

Facture 계산서
 Faculté 【민법】 선택권
 Facultés 학부
 Fait juridique 법률사실
 Famille 가족

Fascisme 파시즘	제통화기금(IMF)
Faute 【행정】 과실 【민법】 과책 【형법】 책임, 과실	Fonds propres 【상법】 자기자금
Faute contractuelle 계약상의 과책	Fongibilité 대체가능성
Faute délictuelle 불법행위 과책	Force exécutoire 【민소】 집행력
Faux en écriture 【형법】 문서위조	Force majeure 【민법】 불가항력
Faux témoignage 【형법】 위증	Force probante 【소송】 증거력
Fédéralisme 연방제	Forfaiture 【형법】 독직
Fédération 연방	Formalisme 형식주의, 요식주의
Femmes en couches 임산부	Forme 형식
Fiançailles 혼약	Formel-informel 형식적, 비형식적
Fiction 의제	Formel, matériel 형식적, 실질적
Fiducie 양도담보, 신탁	Formule exécutoire 【민소】 집행문
Filiale 자회사	Frais 【민소】 비용
Filiation 친자관계	Franchise 【민소】 면책
Filiation adoptive 양친자관계	Franchise (contrat de-) 프랜차이즈 (계약)
Filiation légitime 적출친자관계	Franchise (d'impôt) 면세
Filiation naturelle 혼외친자관계	Franchisage 프랜차이즈계약
Fin de non-recevoir ou de non-valoir 소송불수리사유	Francisation 【민법】 (외국인의) 성 명의 프랑스화 절차 【해상법】 프랑스 선적등록
Finances locales 지방재정	Francophonie 【일반/국제】 프랑스어권
Fisc 세무당국	Fraude 【일반】 사기, 기망, 사해, 부정 행위 【국사】 (법률)회피
Flagrant délit 현행범	Fraude fiscale 【재정】 탈세 - Evasion fiscale(조세회피)
Fonction 직무	Freins et contrepoids (Système des) 【헌법】 견제와 균형
Fonction publique 공무원	Fret 【해상】 운임, 용선료
Fonctionnaire 공무원	Fréteur 【해상】 선주
Fond 실질, 본안, 실체	Front 【헌법】 전선
Fondation 기부, 재단	Frontaliers 【사회보장】 월경노동자
Fondé de pouvoir 상업사용인	Frontière 【국제】 국경
Fonds 토지, 영업재산, 자본	
Fonds de commerce 영업재산	
Fonds marins 심해저	
Fonds monétaire international 국	

Fructus 【민법】 수익권, 과실수취권

- Abusus(처분권)

- Fruits(과실)

- Usus(사용권)

Fruits 【민법】 과실

- Produits(산출물)

Fuite (Délit de) 【형법】 도주(죄)

- Délit de fuite

Fusion 【상법】 합병

G

Gage 【민법/상법】 동산질, 담보권, 담보물

Gain journalier de base 【사보】 기초임금일액

Garantie 【민법】 담보, 담보책임 【국제】 보장, 보증

Garantie d'emprunt 【재정】 공보증

Garantie minimale de points 【사보】 퇴직연금점수의 최저보장

Garantie de passif 【상법】 면책보증

Garantie à première demande 【민법】 즉시담보

Garde 【민법】 감호, 보관

Garde des Sceaux 【일반】 국새상서, 법무부장관(ministre de la justice)의 동의어

Garde à vue 【형법】 경찰유치

Gardien 【민법】 감호권자, 보관자

GATT (Accord général sur les tarifs douaniers et le commerce)

【국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darmerie 【행정】 헌병대

Genera non pereunt 【민법/상법】 종류물은 멸실하지 않는다.

Génocide 【형법/국제】 집단살해

Gentlemen's agreement 【국제】紳사협정

Gérance libre 【상법】 영업재산임차인에 의한 경영

Gérance salariée 【상법】(영업재산의) 사용인에 의한 경영

Gérant majoritaire 【사보】 다수자본 보유 업무집행자

Gérant de société 【상법】(회사의) 업무집행사원

Gestion (Système de la) 【재정】 현금주의

Gestion d'affaires 【민법】 사무관리

Gestion de fait 【재정】 사실상의 공금관리

Gestion privée, gestion publique 【행정】 사관리, 공관리

Glose 【일반】 주석

Glossateurs 【일반】 주석학과

Gouvernement 【헌법】 정부

Gouvernement de fait 【헌법/국제】 사실상의 정부

Grâce 【헌법/형법】 사면

Grâce amnistiante 【헌법/형법】 특별사면

Gracieuse (Décision) 【민소】 비송의(재판)

Grade 【행정】 직급

Graffitis 【형법】 낙서
 Gratification 【노동】 상여금
 Gratuité de la justice 【형소/민소】
 재판의 무상
 Gré à gré (Marchés de-) 【행정】 수
 의계약
 Greffes 【민소】 법원 서기과
 Greffier 【민소】 법원서기
 Greffier en chef 【민소】 수석서기
 Greffier du tribunal de commerce
 【형법】 상사법원 서기
 Grève 【행정/노동】 파업
 Grevé 【민법】 (부담부 법률행위에 있어
 의무의) 부담자
 Grief 【민소/형소】 불이익
 Grief (actes faisant) 【행정】 불이익
 (을 발생시키는 행위)
 Grille (de la fonction publique)
 【행정】 급여표
 Grivèlerie 【형법】 무전취식
 Gros ouvrage 【민법】 골핵부분
 Grosse 【민소】 집행정본
 Groupe parlementaire 【헌법】 교섭
 단체
 Groupe de sociétés 【상법】 회사그룹
 Groupement agricole d'exploitation
 en commun (GAEC) 【민법】 농업
 공동경영집단
 Groupement européen d'intérêt
 économique 【상법】 유럽경제이익단체
 Groupement foncier agricole (GFA)
 【민법】 농업토지집단
 Groupement forestier 【민법】 삼림관

리집단

Groupement d'intérêt économique
 【상법】 경제이익단체
 Groupement d'intérêt public 【행
 정】 공익단체
 Guerre 【공법】 전쟁
 Guichet unique 【형법】 예모

H

Habeas corpus 【헌법】 인신보호법
 Habitation (droit d') 【민법】 거주권
 Harcèlement moral 【형법】 근로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 신체적·정신
 적 건강의 손상 또는 직업적 장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근로조건 악
 화를 목적으로 하거나 달성하는 행위
 Harcèlement sexuel 【형법/노동】 성
 희롱
 Harmonisation fiscale (CEE) 【형법】
 (유럽경제공동체의) 세제의 조화
 Haute autorité 【국제】 최고기관
 Haute cour de justice 【헌법/형소】
 고등법원
 Haute mer 【국제】 공해
 Haute trahison 【헌법/형법】 대반역죄
 Heimatlos 【국제】 무국적자
 Herbe (vente d') 【민법】 목초(매매)
 Hérité 【민법】 유산
 Héritage 【민법】 유산, 부동산
 Héritier 【민법】 상속인
 Heures complémentaires 【노동】 (단

시간근로자의) 보충근로시간
 Heures de délégation 【노동】 대표활동시간
 Heures légales 【민소】 (1일 중 송달, 증서 및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정시간
 Heures supplémentaires 【노동】 초과근로시간
 Hoirie 【민법】 상속
 Holding 【상법】 지주회사
 Homicide 【형법】 살인, 살해
 Homicide et blessures par imprudence 【형법】 과실치사상
 Homologation 【민법】 인가(법원이 증서를 승인하고, 이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절차)
 Honoraires 【민소】 사례 【사보】 진료보수
 Honorariat 【행정】 명예직
 Horaire individualisé 【노동】 선택적근로시간제
 Hors cadres 【행정】 이적과건
 Hors de cause 【민소】 소외
 Hors du commerce 【일반】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Hors part 【민법】 상속분 이외의
 Hospitalisation d'un aliéné 【민법】 정신병자의 수용
 Huis-clos 【소송】 비공개
 - Publicité des débats(변론의 공개)
 Huissier de justice 【민소】 집행관
 Humanité 【형법】 인도
 - Crime contre l'humanité(인도에

에 반한 죄)
 Hypothèque 【민법】 저당권
 - Mesures conservatoires(보존조치)
 - Sûretés judiciaires(보전담보)
 Identité 【민법】 본인성
 - Carte nationale d'identité(신분증명서)
 - Contrôle d'identité (동일성검사)
 Identité judiciaire 【형법】 범죄인수사수단
 - Vérification d'identité(신원조사)
 Illégalité 【일반】 위법(성)
 - Légalité(적법성)
 Illicéité 【일반】 위법(성)
 Immatriculation 【민법】 (사람의) 명부기재, (차·동물 등의) 등록
 Immatriculation à la Sécurité sociale 【사보】 사회보장 피보험자등록
 Immeuble 【민법】 부동산
 - Meuble(동산)
 Immeuble par destination 【민법】 용도에 따른 부동산
 Immobilisation des fruits 【민소】 과실의 부동산화
 Immobilisation de véhicule 【형법】 차량의 이용금지
 Immoral 【민법】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Immunité 【형법】 면책
 Immunités diplomatiques et consulaires

【국제】(외교관 및 영사관의) 면책특권	접세, 간접세
Immunités d'exécution 【민법/민소/형소/국제】 집행면제	Imprescriptibilité 【민법】 시효소멸불가성 - Prescription(시효)
Immunité de juridiction 【민법/민소/형소】 재판권면제	Imprévisibilité 【민법】 예측불가성
Immunités parlementaires 【헌법】 의원특권	Imprévision (théorie) 【행정/민법】 예견불가능(이론)
- Inviolabilité parlementaire (의원의 불체포특권)	Impuberté 【민법】 혼인 부적합 연령
- Irresponsabilité parlementaire (의원의 면책특권)	Imputabilité 【형법】 귀책성
Immutabilité 【민법】 불가변경성	Imputation 【민법】 충당, 공제, 산입
Immutabilité du litige (principes d') 【민소】 소송부동성의 원칙	Inaliénabilité 【민법】 양도불가성
Impasse budgétaire 【재정】 세출예산 초과	Inaliénabilité du domaine public 【행정】 공물의 양도불가성
Impeachment 【헌법】 탄핵	Inamovibilité 【행정】 불가동성(不可動性)
Impenses 【민법】 유지, 개량비	Inamovibilité des magistrats 【민소/형소/행소】 법관의 불가동성
Impératif 【일반】(법령의 규정이) 강행성을 가지는	Incapable 【민법】 무능력자
Imperium 【민소】 명령권, 법관의 지휘권	Incapacité 【민법】 무능력
- Acte juridictionnel(재판행위)	Incapacités et déchéances 【민법】 무능력 및 실권
- Décision gracieuse(비송재판)	Incapacités électorales 【헌법】 선거결격
Implication 【민법】 관여	Incapacité permanente partielle (IPP) 【민법/사보】 영속적 일부 노동불능
Importations 【재정】 수입, 유입	Incapacité temporaire de travail (ITT) 【민법/사보】 일시적 노동불능
Impôt 【재정】 조세	Incarcération provisoire 【형소】 가수용
Impôt négatif sur le revenu 【재정】 부의 소득세	Incessibilité 【민법】 양도불가성
Impôt sur le revenu 【재정】 소득세	Inceste 【민법】 근친상간
Impôt sur les sociétés 【재정】 법인세	Incidents du procès 【민소】 소송상의 부대청구
Impôt de solidarité sur la fortune 【재정】 연대부유세	
Impôts directs, indirects 【재정】 직	

Incompatibilités 【헌법/민소】 겸직금지	Indication de paiement 【민법】 변 체의 표시
Incompétence 【소송】 무관할 - Compétence exclusive(전속관할)	Indication de provenance 【상법】 원산지표시
Incompétence d'attribution 【민소】 사물무관할	Indice 【재정】 지수
Incompétence territoriale 【민소】 토 지무관할	Indice de traitement 【행정】 봉급지수
Incorporel 【민법】 무형의 - Bien incorporel(무체재산)	Indices 【민법/소송】 증빙
Incrimination 【형법】 죄형의 법정, 범 죄유형	Indignité successorale 【민법】 상속 결격
Inculpation 【형소】 예심개시결정	Indisponibilité 【민법】 처분불가성
Inculpation tardive 【형소】 예심개시 결정지체	Indivisibilité 【민법/형소/민소】 불가 분성
Inculpé 【형소】 예심대상자, 예심피고인, 피의자	Indivision 【민법】 (공유물 등의) 불분할
Indemnité 【민법】 배상금, 보상금	Indu 【형법】 비채(변제) - Répétition de l'indu(비채변제의 반환)
Indemnité de caractère personnel 【민법/사보】 인적 성질을 가지는 손 해에 대한 배상금	In dubio pro reo 【형소】 의심스러운 것은 피고의 이익으로
Indemnité d'éviction 【상법】 추탈보 상금	Inéligibilité 【헌법】 피선거결격
Indemnité parlementaire 【헌법】 의 원세비	Inexistence 【행정/민법/민소】 부존재
Indemnité de résidence 【행정】 주택 수당 - Traitement budgétaire(본봉)	Infanticide 【형법】 영아살해
Indexation 【민법/상법】 지수슬라이드 방식 【재정】 물가슬라이드방식 - Clause d'échelle mobile(슬라이 딩 · 스케일조항) - Echelle mobile des salaires(임 금슬라이드제)	Infirmité 【소송】 (원판결) 취소 - Confirmation(원판결유지) - Réformation(원판결변경)
	Inflation 【일반】 인플레이션 - Stagflation(스태이그플레이션)
	Information 【형소】 예심, 증거조사 - Instruction(예심)
	Informatique juridique 【일반】 법정 보시시스템
	Infraction 【형법】 범죄
	Infraction complexe 【형법】 복수행 위법

Infraction continue 【형법】 계속범	Ingratitude 【민법】 배은(背恩)행위
Infraction continuée 【형법】 연속범	- Indignité successorale(상속결격)
Infraction formelle 【형법】 형식범	Initiative législative 【헌법】 법률안제출권
Infraction d'habitude 【형법】 관습범	Initiative populaire 【헌법】 국민발안
Infraction impossible 【형법】 불능범	Injonction 【행정/민소】 명령
Infraction instantanée 【형법】	Injonction de faire 【민소】 이행명령
Infraction intentionnelle 【형법】 고의범	Injonction de payer 【민소】 지불명령
Infraction internationale 【형법】 국제범죄	In judicando 【민소】 판결에 있어
Infraction militaire 【형법】 군사범죄	- In procedendo (절차에 있어)
Infraction naturelle ou artificielle 【형법】 자연범, 법정범	Injure 【민법/형법】 모욕
Infraction obstacle 【형법】 위협범	In limine litis 【민소】 소송의 개시시에
Infraction permanente 【형법】 상태범	Inopposabilité 【민법/민소】 대항불능
Infraction politique 【형법】 정치범	Inquisitoire 【소송】 직권주의적, 규문주의적
Infraction praeterintentionnelle 【형법】 결과적 가중범	- Procédure inquisitoire 직권주의적 절차, 규문주의적 절차
Infraction purement matérielle 【형법】 순객관범죄, 무과실책임의 범죄	Insaisissabilité 【민법/민소/노동】 압류금지
Infraction putative 【형법】 환각범	- Biens Insaisissables(압류금지 재산)
Ingénierie 【상법】 경영엔지니어	Inscription 【민법】 등기, 등록
Ingérence 【민법】 (타자의 사무에 대한 권한없는 간섭 【형법】 (공무원의) 이익수수	Inscription au rôle 【민소】 사건부에 등재
- Prise illégale d'intérêts(위법 이익수수)	- Répertoire général(사건부)
Ingérence humanitaire 【국제】 인도적 개입	Inscription maritime 【해상】 선원등록기관
- Droit d'ingérence humanitaire 인도적 개입의 권리)	Inscription d'office 【행정】 직권계상
- Non-ingérence (Principe de) (불개입의 원칙)	Insinuation 【민법】 증여등록
	In solidum 【민법】 연대하여
	- Obligation in solidum(전부의무)
	Insolvabilité 【형법】 지불불능
	Inspection des finances 【재정】 재정

감독관	Interdiction 【민법】 능력제한
Inspection du travail 【노동】 노동감독관	Interdiction des droits civils, civiques et de famille 【형법】 공민권 및 사법상·가족법상 권리의 금지
Installations classées 【행정】 지정시설	Interdiction de séjour 【형법】 체재금지
Instance 【민소】 소송절차	Intéressement 【노동】 이익참가
- Liaison de l'instance, Lien d'instance(소송절차관계)	Intérêt 【민법/소송】 이익, 이자
Instances 【일반】 (권한이 있는) 기관	- Dommages et intérêts(손해배상금)
Instigation 【형법】 교사	Intérêt (pour agir) 【소송】 소의 이익
Institut d'émission 【재정】 발권은행	Intérêt conventionnel 【민법/상법/형법】 약정이자
Institut national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 【상법】 공업소유권국	- Usure(폭리)
Institut national du travail, de l'emploi et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노동】 국립노동고용직업교육원	Intérêt de l'entreprise 【노동】 기업이익
Institut régional d'administration (IRA) 【행정】 지방행정학원	Intérêt légal 【민법/상법】 법정이자
Institution 【일반】 제도	Intérêts fondamentaux de la nation 【형법】 기본적 국익
Institution contractuelle 【민법】 계약에 의한 상속인 지정	Intérim 【행정/헌법】 대행 【노동】 임시노동
- Pacte sur succession future (장래의 상속재산에 관한 합의)	- Travail temporaire(파견노동)
Institutions spécialisées 【국제】 전문기관	Interlocutoire 【민소】 선행판결
Institutionnalisation 【헌법】 제도화	- Jugement avant dire droit (선행판결)
Instruction 【소송】 준비절차, 심리 【형소】 예심	Internationalisation 【국제】 국제화
Instruction (pouvoir d') 【행정】 훈령(권), 준비조정(권)	Internement 【민법】 보호수용
Instrumentum 【일반】 증서	- Hospitalisation d'un aliéné(정신병자의 수용)
Intégration 【국제】 통합	Inter partes 【일반】 당사자간에 있어
Intention 【형법】 고의, 의사	- Erga omnes (대세적인)
	- Tiers(제3자)
	Interpellation 【헌법】 (국회의원의) 대정부질문

Interposition de personnes 【일반】 제3자의 개재	- Intuitus personae (인적 고려)
Interprétation d'un jugement 【민소】 판결의 해석	Invalidité 【사보】 폐질
Interprétation (d'une norme juridique) 【공법】 (법규범의) 해석	Inventaire 【민법/상법】 재산목록 【민소】 압류동산목록
Interprétation stricte 【형법】 엄격해석	- Bénéfice d'inventaire(재산목록 한도부담의 이익)
Interruption 【민법/형법/형소】 중단	- Récolement(확인)
- Suspension(정지)	Inventeur (d'un trésor) 【민법】 (매장물의) 발견자
Interruption illégale de la grossesse 【형법】 불법적 임신중절	Investiture 【헌법】 (입후보자에 대한 정당의) 공인, (제4공화국에서 내각총리에 대한 국민의회의) 신임투표
Interruption de l'instance 【민소】 소송절차의 중단	Inviolabilité parlementaire 【헌법】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 Ouverture des débats(변론의 개시)	Irrecevabilité 【소송】 불수리 【헌법】 (의원제출법안의) 불수리
- Reprise d'instance(소송절차의 재개)	- Fin de non-recevoir(각하사유)
Intervention 【국제】 간섭 【민소】 참가	Irréfragable 【민법】 변복할 수 없는
- Demande en intervention(참가의 소(청구))	- Présomption(추정)
Interversion de la prescription 【민법/민소】 시효의 전환	Irrépétible 【민소】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Interversion de titres 【민법】 권원의 전환	Irresponsabilité du chef de l'Etat 【헌법】 국가원수의 면책
Intimé 【민소】 피항소인	Irresponsabilité parlementaire 【헌법】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 Appelant(항소인)	
Intimité 【민법】 사생활	J
- Atteintes à la vie privée(사생활에 대한 침해)	Jeton de présence 【상법】 출석수당, (이사 또는 감사의) 보수
Introduction de l'instance 【민소】 (소송절차의) 개시 【행정】 소송제기	Jeu 【민법】 도박
Intuitus pecuniae 【민법/상법】 금전적 고려	Jeunes adultes délinquants 【형법】

약년(若年)성인의 범죄자	【민소】 절차진행담당법관
Jonction d'instances 【민소】 소송절차의 병합	Juge-Commissaire 【민소】 수명법관
- Disjonction d'instance(소송절차의 분리)	Juge consulaire 【민소】 상사법관
Jouissance 【민법】 사용수익, 용익	Juge délégué aux affaires matrimoniales (JAM) 【민법】 혼인사건법관
- Fruits(과실)	Juge départiteur 【민소】 결재법관
- Usage(사용)	- Conseil de prud'hommes(노동법원)
Jouissance légale 【민법】 법정용익권	- Partage des voix(가부동수)
Jouissance à temps partagé 【민법】 타임쉐어링에 의한 사용	Juge des enfants 【민소/형소】 소년사건담당법관
Journal officiel (JO) 【행정】 관보	Juge de l'exécution 【민소】 집행법관
Journaliste professionnel 【노동】 직업기자	Juge de l'expropriation 【민소】 수용법관
Jours 【일반】 (역상의) 일	Juge d'instruction 【소송】 예심판사
Jours-amendes 【형법】 일수(日數)벌금	Juge des loyers 【민소】 임대차사건법관
Jours chômés 【노동】 휴업일	- Tribunal paritaire des baux ruraux(농사임대차 담당 동수법원)
Jours fériés 【노동】 경축일	Juge de la mise en état (JME) 【민소】 준비절차법관
Jours de fêtes légales 법정경축일	Juge aux ordres 【민소】 배당절차법관
Jour fixe 【민소】 지정기일	Juge de paix 【민소】 치안판사
Jours ouvrables 【노동】 취업일	Juge rapporteur 【민소】 (상사법원의) 보고법관
Jours ouvrés 【노동】 실노동일	- Conseiller rapporteur(보고법관)
Judicature 【민소】 법관의 지위	- Rapport(보고서)
Judiciaire (pouvoir) 【헌법/소송】 사법(권)	Juge des tutelles 【민소】 후견법관
- Autorité judiciaire(사법권)	Juge unique (Système du) 【소송】 (합의제에 대비되는) 단독판사(제)
Juge 【민소】 법관	Jugement 【소송】 재판, 판결, 판단
Juge ad hoc 【국제】 특별선임법관	- Arrêt((법원)판결)
Juge aux affaires familiales (JAF) 【민법/민소】 가사사건법관	- Sentence(판결, 판단, 재결, 재정)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JAP) 【형소】 형벌적용법관	Jugement avant dire droit ou
Juge chargé de suivre la procédure	

avant faire droit 【민소】 선행판결	기초한 판결
Jugement constitutif 【민소】 형성적 판결	Jugement provisoire 【민소】 임시판결
Jugement contradictoire 【민소】 대심판결	Juridicité 【일반】 법대상성
- Défaut(결석)	Jurisdiction 【일반】 (관할)권한 【소송】 법원
- Jugement par défaut(결석재판)	Jurisdiction administrative 【행정】 행정법원
- Jugement réputé contradictoire (대심으로 간주되는 판결)	Jurisdiction arbitrale 【소송】 중재법원
Jugement déclaratif 【민소】 선언적 재판	- Amiable compositeur(형평중재)
Jugement par défaut 【민소】 결석재판	- Arbitrage(중재)
Jugement définitif 【민소】 종국판결	- Arbitrage international(국제중재)
- Jugement sur le fond(본안에 관한 판결).	- Arbitre(중재인)
Jugement en dernier ressort 【민소】 종심판결	- Clause compromissoire(중재조항)
Jugement de donner acte 【민소】 인정판결	- Compromis(중재계약)
Jugement en premier ressort 【민소】 제1심판결	Jurisdiction d'attribution 【행정】 특별관할법원
Jugement étranger 【민소】 외국판결	Jurisdiction commerciale 【민소】 상사법원
Jugement d'expédient, Jugement convenu 【민소】 편의판결, 합의판결	- Tribunal de commerce(상사법원)
- Contrat judiciaire(소송종결계약)	Jurisdiction de droit commun 【소송】 보통법상의 법원
- Jugement de donner acte(인정판결)	- Compétence exclusive(전속관할)
Jugement gracieux 【민소】 비송재판	- Plénitude de juridiction(완전관할권)
- Décision gracieuse(비송재판)	Jurisdiction d'exception 【소송】 예외법원
Jugement sur le fond 【민소】 본안에 관한 판결	Jurisdiction gracieuse 【소송】 비송재판권
Jugement mixte 【민소】 혼합판결	Jurisdiction d'instruction, Jurisdiction de jugement 【형소】 예심법원, 판결법원
Jugement sur pièces 【민소】 서면에	Jurisdiction judiciaire 【민소/형소】 사법법원

- Ordre judiciaire(사법계통)
 Juridique 【일반】 법적인
 - Acte juridique(법률행위)
 - Fait juridique(법률사실)
 Juris et de jure 【민법】 반증은 허용
 되지 않는다.
 - Juris tantum(반증을 허용한다)
 Jurisconsulte 【소송】 법률가
 Jurisdiction 【민소】 재판권
 - Acte juridictionnel(재판행위)
 - Décision gracieuse(비송재판)
 - Imperium(명령권)
 Jury 【형소】 배심
 Juste titre 【민법】 정당한 권원
 - Titre(권원)
 Justice 【일반】 정의, 사법
 Justice de paix 【민소】 치안법원
 - Juge de paix(치안판사)
 Justice politique 【헌법】 정치법원
 - Haute Cour de Justice(고등법원)
 Justiciable 【소송】 당사자

K

«Know-How»
 - Savoir-faire

L

Label 【일반】 증표

Laïcité 【공법】 정교분리
 Laïcité de l'Etat 【헌법】 국가의 비종
 교성
 Langue 용어, 언어
 Lato sensu 【일반】 넓은 의미에서는
 - Stricto sensu (좁은 의미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Lecture 【헌법】 독회
 Légalisation 【민법】 인증
 Légalité (principe de) 【행정】 적법
 성(의 원칙) 【형법】 죄형법정주의
 Légataire 【민법】 수유자(受遺者)
 - Legs(유증)
 Légation 【국제】 공관, 사절
 Législateur 【헌법】 입법자
 Législature 【헌법】 입법기, 입법부
 Législatif (pouvoir) 【헌법】 입법(권)
 Légitimation 【민법】 준정(準正)
 Légitime défense 【형법】 정당방위
 Légitimité 【헌법】 정통성 【민법】 적출성
 - Filiation légitime(적출친자관계)
 Legs 【민법】 유증
 Legs particulier 【민법】 특정유증
 Legs universel 【민법】 포괄유증
 Legs à titre universel 【민법】 포괄
 명의유증
 Lésion 【민법】 손해
 Lettre de cadrage 【재정】 예산편성
 방침의 통지
 Lettre de change 【상법】 환어음
 Lettre de change-relevé 【상법】 계
 산서환어음
 Lettres de créance 【국제】 (외교관

의) 신임장	(대심의 원칙)
Lettre de crédit 【상법】 신용장	- Droits de la défense(방어권)
- Accréditif(신용장)	Liberté des mers (Principe de la)
Lettre d'intention 【민법/상법】 지원장	【국제】 해양자유의 원칙
Lettre missive 【민법】 친서	- Haute mer(공해)
Lettre de plafond 【재정】 예산상한액	Libertés publiques 【헌법】 공적 자유
통지	- Droits de l'homme(인권)
Lettres de provision 【국제】 영사위	Liberté syndicale 【노동】 단결권
임장	Liberté du travail 【노동】 노동의 자유
- Exequatur(영사인가장)	Libre circulation des travailleurs
Lettre de rappel 【재정】 독촉장	【노동】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
Lettre recommandée, lettre simple	Libre pratique 【국제】 자유유통상태
【민소】 등기우편, 보통우편	Licéité 【일반/민법】 적법(성)
Lettre de voiture 【상법】 운송장	- Illicéité(위법성)
Levée d'érou 【소송】 석방	Licence 【행정】 면허 【상법】 라이선스
Lex fori 【국사】 법정지법	계약
Lex loci 【국사】 행위지법	- Autorisation(허가)
Lex mercatoria 【국사】 국제상사관습법	- Contrat de licence(라이선스계약)
Lex rei sitae 【국사】 소재지법	Licenciement 【노동】 해고
Liaison de l'instance 【민소】 소송관	Licenciement individuel 개별적 해고
계의 확정	Licenciement pour motif économique
Libéralisme 【공법】 자유주의	경제적 이유에 의한 해고
Libéralité 【민법】 무상행위 【노동】 무	- Congédiement(해고)
상증여	Licitation 【민법/민소】 (불분할부동산
- Donation(증여)	의)의 경매
- Legs(유증)	Lien d'instance 【민소】 소송절차관계
Libération d'actions 【상법】 주식납입	Lieu d'établissement 【상법】 기업소
Libération conditionnelle 【형법】 가	재지
석방	Ligne 【민법】 친계
Liberté civile 【일반】 시민적 자유	Ligne collatérale 방계
Liberté de la défense 【소송】 방어의	Ligne direct 직계
자유	Ligne direct ascendante 직계존속
- Contradictoire (principe du)	Ligne direct descendante 직계비속

Ligne maternelle 모계	Livraison 【민법】 배달, 인도
Ligne paternelle 부계	- Délivrance(인도)
Ligue 【국제】 동맹, 연맹	Livres de commerce 【상법】 상업장부
Ligue arabe 【국제】 아랍연맹	- Comptabilité
Liquidateur 【민법/상법】 청산인	Livre de paie 【노동】 임금대장
Liquidation 【민법/상법】 청산 【재정】	Livret de famille 【민법】 가족수첩
지출액의 확정, 세액확정 【사보】 급부	Lobby 【헌법】 로비
액의 확정	- Groupe de pression(압력단체)
Liquidation des biens 【민법】 재산	Locataire 【민법】 임차인
청산	- Bail(임대차)
Liquidation des dépens 【민소】 소	Location-gérance 【상법】 영업의 임대차
송비용액의 확정	Location-vente 【민법】 매수임대차
- Vérification des dépens(소송비	Lock-out 【노동】 직장폐쇄
용확인)	Logement de fonction 【노동】 사택
Liquidation judiciaire 【상법】 재판	Loi 【일반】 법률
상의 청산	Loi d'autonomie 【국사】 당사자선정법
Liquidité 【민법/민소】 (채권·채무 등	Loi constitutionnelle 【헌법】 헌법적
의) 확정성	법률
- Créance(채권)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Liste 【일반】 일람표, 명부, 목록	sociale 【재정/사보】 사회보장재정법
Liste candidats 후보자명부	Loi de finances 【재정】 재정법률
Liste actionnaires 주주명부	Loi de finances de l'année 【재정】
Liste électorale 선거인명부	연도재정법률
Litigants 【소송】 소송당사자	Loi de finances règlement du budget
- Colitigants(공동소송인)	【재정】 결산법률
- Litisconsorts(공동소송인)	Loi de financesrectificative 【재정】
Litige 【소송】 계쟁, 분쟁, 소송	보정예산법률
Litisconsorts 【소송】 공동소송인	Lois fondamentales 【헌법】 기본법
Litispendance 【민소】 (동일심급의 두	Loi ordinaire 【헌법】 통상법률
법원에의) 사건계속	Loi organique 【헌법】 조직법률
- Connexité(관련성)	Loi personnelle 【국사】 사람에 관한 법
- Déclinatoire de compétence	Lois de police 【국사】 경찰법
(무관할의 항변)	- Lois d'application immédiate

(즉시적 준거법)

Loi de programme 【재정】 프로그램 법률

Loi réelle 【국사】 물건에 관한 법

Loi référendaire 【헌법】 국민투표에 의한 법률

Loi de règlement 【재정】 결산법률
- Loi de finances(예산법률)

Loi uniforme 【국사】 통일법

Loterie 【민법】 복권
- Jeu(도박)
- Pari(사행)

Lotissement 【행정】 구획지

Lots 【민법】 지분
- Lotissement(구획지)
- Partage(분할)

Louage 【민법】 임대차
- Louage de choses(물건의 임대차)
- Louage d'ouvrage et d'industrie (도급계약)
- Louage de services (노무의 임대차)

Louage de choses 【민법】 물건의 임대차
- Bail(임대차)

Louage d'ouvrage et d'industrie 【민법】 도급계약
- contrat d'entreprise(도급계약)

Louage de services 【민법】 노무의 임대차
- contrat de travail(근로계약)

Lucrum cessans 【민법】 일실이익
- Damnum emergens (적극적 손해)

M

Maastricht 【국제】 마스트리히트조약

Magasins généraux 【상법】 영업창고

Magistrats 【민소/형소】 사법관, 법관 및 검찰관 【행정】 법관

Magistrature 【민소】 사법관직

Main commune 【민법】 공동관리조항

Main-d'oeuvre 【노동】 노동력

Mainlevée 【민법/민소】 해제

Maintien dans les lieux 【민법】 계속주거(권)
- Reprise (Droit de)(회수권)

Maire 【행정】 시군구의 장

Maire d'arrondissement 【행정】 구청장

Maison d'arrêt 【형법】 구치소

Maison centrale 【형법】 중앙교도소

Maître d'œuvre 【행정/민법】 시공자

Maître de l'ouvrage 【행정】 발주자 【민법】 (도급계약의) 주문자

Maîtrise des armements 【국제】 군비관리

Majeur protégé 【민법】 피보호성년자

Majoration de retard 【사보】 지연가산

Majorité 【민법】 성년 【상법】 다수결 【헌법】 다수표, 여당 【형법】 성년

Majorité qualifiée 【헌법】 특별다수

Maladie professionnelle 【사보】 직업병

Mal-fondé 【소송】 이유없음
- Bien-fondé(이유있음)
- Recevabilité(수리성)

Mandat 【민법】 위임 【민법】 영장	(유럽공동체)
- Mandant(본인, 위임인)	Marchés négociés 【행정】 교섭계약
- Représentant(대리인)	Marchés publics 【행정】 공계약
- Mandataire(수임인)	Mariage 【민법】 혼인
Mandat d'amener 【형소】 구인장	Masse 【민법/상법】 재산체
Mandat d'arrêt 【형소】 구속영장	Matériel 【일반】 실질적인
Mandat de comparution 【형소】 소환장	- Formel(형식적인)
Mandat de dépôt 【형소】 구치영장	Maternité 【민법】 모자관계
Mandat domestique 【민법】 가사대리	Matière 【소송】 사건, 내용
Mandat de paiement 【재정】 지불명령서	- Fond(본안)
- Ordonnancement(지불명령)	- Forme(형식)
Mandat politique 【헌법】 정치적 위임	Matière mixte 【민소】 혼합소송사건
Mandat (territoires sous-) 【국제】 위임통치령	- Action mixte(혼합소권)
Mandataire judiciaire à la liquidation des entreprises 【상법/민소】 기업의 청산절차에 있어 재판상의 청산인	Matrice 【민법】 납세자 원부
Mandatement 【재정】 지불명령	- Cadastre(토지대장)
- Ordonnancement(지불명령)	Mauvaise foi 【민법】 악의, 불성실
Mandement 【소송】 명령	- bonne foi(선의, 성실)
- Injonction(명령)	Maxime 【일반】 법격언
- Intervention(참가)	Médecin conventionné 【사보】 협약의
- Pièces(서증)	Médecine de caisse 【사보】 금고계약의료
- Tiers(제3자)	Médecine libérale 【사보】 자유진료
Manquement 【민법】 해태, 의무위배	Médecine du travail 【노동】 산업의
Marc le franc 【민법/민소】 안분비례	Médiateur 【사법】 조정자 【민소】 중개인
Marchandage 【노동】 위법도급	【형법】 조정자
Marché au comptant 【상법】 현물거래	Médiation 【국제】 중개 【노동】 알선 【형법】 조정
Marché à forfait 【민법】 일괄도급계약	- Arbitrage(중재)
Marché Commun 【국제】 공동시장	- Conciliation(조정)
- Communautés Européennes	Membre de la famille 【사보】 가족구성원
	Mémoire 【민소】 청구이유서
	Memorandum 【국제】 각서

Menaces 【형법】 협박	- Assassinat(모살)
Ménage de fait 【민법】 사실상의 부부	Micro-Etat 【국제】 극소국
Mensualisation 【재정】 월할예정납세 【노동】 월급제화	Mines 【행정/민법】 광산
Mention au dossier 【민소】 일건기록 에의 기재 - Dossier(일건기록)	Minimum vieillesse 【사보】 노령자소 득최저보장
Mention en marge 【일반】 여백기재	Ministère 【헌법】 내각
Mentions informatives 【민법/상법】 설명기재	Ministère public 【민소/형소】 검찰관, 검찰
Mercuriale 【민법/상법】 시장가격표	Ministre 【헌법】 장관
Mer territoriale 【국제】 영해	Minorité 【민법】 미성년 【상법】 소수주주
Message 【헌법】 교서	Minorité pénale 【형법】 형사미성년
Mesure d'administration judiciaire 【소송】 법원운영상의 조치	Minorités (protection des) 【국제】 소수민족의 보호
Mesures conservatoires 【민소】 보전 조치	Minute 【민법/민소】 원본 - Exécution sur minute(원본에 기한 집행)
Mesures d'instruction 【소송】 증거 조사 - Mesures d'instruction In futurum(증거보전조치)	Mise en cause 【민소】 강제참가의 소 【형소】 범죄사실 및 죄명의 고지
Mesures nouvelles 【민법】 신규경비	Mise en demeure 【행정/민법/민소】 최고 【노동】 개선명령 【재정】 독촉
Mesure d'ordre intérieur 【행정】 내 부적 조치	Mise en examen 【형소】 예비개시결정
Mesures préparatoires 【행정】 준비적 조치	Mise à l'index 【노동】 보이콧
Mesures provisoires 【민소】 임시의 조치	Mise à pied 【노동】 출근정지
Mesures de sûreté 【형법】 보안처분	Mise à prix 【민소】 최고경매가격의 결정 - Adjudication(경매)
Meuble 【민법】 동산 - Immeuble(부동산)	Mise au rôle 【민소】 사건부등재
Meubles meublants 【민법】 가구	Mission diplomatique 【국제】 외교사 절단
Meurtre 【형법】 고살	Mission de service public 【국제】 공역무의 임무 - Service public(공역무)
	Mitigation des peines 【형법】 형의 경감

Mobiles 【민법/형법】 동기
 - Cause(원인)
 Mobilière (contribution) 【재정】 동
 산세
 Mobilisation de créance 【민법】 채
 권의 유동화
 Mobilité 【노동】 전근
 - Clause de mobilité(전근조항)
 Modes alternatifs de règlement
 des conflits 【일반】 대체적 분쟁조
 정방식
 Mode de scrutin 【헌법】 투표방법
 Modèles 【상법】 의장
 - Dessins et modèles(의장)
 Modulation 【노동】 탄력적 근로시간제
 Monarchie 【헌법】 군주제
 Mondialisation 【일반】 지구화, 세계화
 Monnaie 【민법】 통화, 화폐
 - Billet de banque(은행권)
 - Cours forcé(강제통용력)
 - Cours légal(법정통용력)
 Monocamérisme ou monocaméralisme
 【헌법】 일원제
 Monopole de droit 【행정】 법률상의
 독점
 Monopole de fait 【행정/상법】 사실상
 의 독점
 Monopoles fiscaux 【재정】 전매사업
 Monroe (doctrine de) 【국제】 먼로주의
 Moratoire 【민법/민소】 지불유예
 Mort 【민법】 사망
 Mort (Peine de) 【형법】 사형
 Motifs 【민법】 동기 【민소】 (판결의)

이유

Motion 【헌법】 결의, 선언문, 발의문,
 제안
 Motion de censure 【헌법】 불신임결의
 Motivation (des actes administratifs)
 【행정】 행정행위의 이유부기
 Moyens 【소송】 공격방어방법
 Moyens inopérants 【행정】 주장상의
 무효이유
 Multinationale 【국제/상법/국사】 다
 국적기업
 Multipartisme 【헌법】 다당제
 Multipropriété 【민법】 다중소유
 Mutation 【민법/상법】 양도, 이전 【노동】
 배치전환
 Mutualité 【사보】 공제조합
 Mutuum 【민법】 소비대차
 - Prêt de consommation(소비대차)

N

Naissance 【민법】 출생
 Nantissement 【민법】 질
 Nation 【헌법】 민족
 Nationalisation 【행정】 국유화
 - Privatisation(민영화)
 Nationalisme 【헌법】 민족주의
 Nationalité 【민법/국사/국제】 국적
 Nationalités (principe des) 【국제】
 민족자결의 원칙
 Naturalisation 【국사/국제】 국적이전
 Nature de juridiction 【민소】 법원의

성질

Navette 【헌법】 법률안의 왕복

Navire 【해상】 선박

Nécessité 【일반】 필요성

Négligence-clause 【해상】 과실약관

Négociation 【국제】 교섭

Négociation collective 【노동】 단체 교섭

Neutralisation 【국제】 비무장중립화

Neutralisme 【국제】 중립주의

Neutralité 【국제】 중립

Nom 【민법】 성씨

Nom commercial 【상법】 상호

Nomenclature juridique 【일반】 법률 용어편람

Nominalisme monétaire 【사법】 화폐 명목주의

- Indexation(물가슬라이드방식)

Non-alignement 【국제】 비동맹

- Neutralisme(중립주의)

Non-imputabilité (causes de...)

【형법】 비귀책사유

- Imputabilité(귀책성)

Non inscrit 【헌법】 (의회) 무소속

Non-rétroactivité 소급금지

Nord-Sud 【국제】 남북

- Dialogue Nord-Sud(남북대화)

Norme 규범

Notaire 공증인

Notification 통지, 송달

- Publication(공포)

Novation 【민법】 경개

Nuit 【노동】 야간

- Travail de nuit(야간근로)

Nullité 무효

Nullité des jugements 판결의 무효

O

Objecteur de conscience 양심적 병역거부자

Objet 【민법】 목적(물)

Obligataire 【상법】 사채권자

Obligation 【민법】 채권채무관계, 채무 【상법】 사채

Obligation alimentaire 부양의무

Obligation alternative 선택채무

Obligation civile 민사채무

Obligation conditionnelle 조건부채무

Obligations conjointes 분할채권채무

Obligations conjonctives 복합채무

Obligations convertibles 전환사채

Obligation déterminée 확정채무

Obligation de discrétion professionnelle 직업상의 수비(守秘)의무

Obligations échangeables 교환사채

Obligation indivisible 불가분채무

Obligation d'information 【민법/상법】 정보제공의무

Obligation in solidum 전부채무

Obligation de moyens 수단채무

Obligation naturelle 자연채무

Obligation de prudence et de diligence 【민법】 신중주의의무

Obligation réelle 종물채무

Obligation de réserve 신중의무	Ordres (les trois) 【헌법】 (제3)신분
Obligation de résultat 결과채무	Organisation de l'aviation civile internationale 【국제】 국제 민간 항공 공기구
Obligation de sécurité 안전의무	Organisation de coopération et de développement économique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Obligation solidaire 연대채무	Organisation internationale 국제 기구
Occupation 선점	Organisation internationale du travail (OIT) 국제노동기구(ILO)
Occupation des locaux 【노동】 직장 점거	Organisation météorologique mondiale 세계기상기구
Office (Mesures prises d'...) 【소송】 직권으로 행해지는 조치	Organisation mondiale de la santé 세계보건기구(WHO)
Office du juge 법관의 직무	Organisation des Nations unies 국제연합
Offre 【민법】 청약	- Assemblée générale(총회)
Offres réelles 【민법】 현실의 제공	- Conseil de sécurité(안전보장이사회)
Olographe 자필의	- Conseil de tutelle(신탁통치이사회)
Opérations de banque 은행거래	- Conseil économique et social (경제사회이사회)
Opérations de maintien de la paix 【국제】 평화유지활동	- Cour internationale de justice (국제사법재판소)
Opportunité des poursuites 기소편의주의	- Secrétariat(사무국)
Opposabilité 대항력	Organisation non gouvernementale 비정부단체(NGO)
Opposition 야당	Organisation du Traité de l'Atlantique-Nord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Option 【민법】 선택	Oriente professionnelle 직업지도
Option de nationalité 【국사】 국적 선택	Original 【민법/민소】 원본
Ordonnance d'injonction de faire 【민소】 이행명령	Otage 【형법】 인질
Ordonnance d'injonction de payer 【민소】 지불명령	
Ordonnancement juridique (ou ordre juridique) 법질서	
Ordre 【민소】 배당순위	
Ordre du jour 의사일정	
Ordre public 공서	
Ordre public social 사회적 공서	

Ouverture de crédit 【상법】 여신계약
Ouverture des débats 【민소】 변론의
개시
Ouvrier 근로자

P

Pacte 【민법】 합의 【국제】 조약, 협약
Pactes internationaux des droits
de l'homme 국제인권규약
Paiement 지불, 변제
Paiement de l'indu 비채변제
Parcs naturels 자연공원
Parenté 혈족관계
Parents 혈족, 부모
Parlement 의회
Parlement européen 유럽의회
Parlementarisme 의원내각제
Parquet 검찰
Parricide 존속살해
Part bénéficiaire 【상법】 수익자지분
Part de fondateur 【상법】 발기인지분
Part sociale 【상법】 (회사의) 지분
Part virile 【민법/상법】 균등분할분
Partage 【민법】 분할
Partage des voix 【민소】 가부동수
Parti dominant 지배정당
Parti politique 정당
Parti unique 일당제
Participant 【사보】 가입자
Participation 참여
Participation aux acquêts 【민법】

후득재산참가제
Partie 당사자
Parties communes 【민법】 공용부분
Partie principale 【민소】 주된 당사자
Parties privatives 【민법】 전유부분
Pas-de-porte 【상법】 권리금
Passeport 여권
Passif 부채
Patentes (contribution des) 영업세
Paternité 부자관계
Patrimoine 재산
Pays (ou Etats) en voie de
développement 개발도상국
Peines 형벌
Peines alternatives (système des)
【형법】 대체형
Pension 연금
Pension alimentaire 【민법】 부양정
기금
Percepteur 세무관
Perception 징세사무소
Période d'observation 【상법】 관찰
기간
Permis de construire 건축허가
Perquisition 【형소】 수색
Personnalité des lois 법의 속인성
Personnalité des peines 형벌의 일
신전속성
Personnalité juridique 법인격
Personne juridique 법주체
Personne morale 법인
Personne publique 공법인
Perte de la chose due 채무의 목적

물의 멸실	Pouvoir disciplinaire 징계권
Pétition 청원	Pouvoir discrétionnaire 재량권한
Pièces 증서	Pouvoirs exceptionnels 【헌법】 비상사태권한
Piquet de grève 피켓팅	Pouvoir hiérarchique 【행정】 계층적 권한
Pirate 해적	Pouvoir institutionnalisé 제도화된 권력
Placement 직업소개	Pouvoir lié 기속권한
Plafond 【사보】 보수한도액	Pouvoir politique 정치권력
Plaidoirie 【소송】 진술, 변론	Pouvoirs publics 공권력
Plainte 고소	Pouvoir réglementaire 행정입법권
Plan de redressement 【상법】 갱생 계획서	Pratiques anticoncurrentielles 반경쟁행위
Plateau continental 대륙붕	Pratiques discriminatoires 차별행위
Plein emploi 완전고용	Pratiques restrictives de concurrence 경쟁제한행위
Police 경찰	Préambule 【헌법】 전문
Police d'assurance 보험증권	Préavis 【노동】 해고예고기간
Pollicitation 청약	Préavis de grève 【노동】 파업예고기간
Pollution 오염	Préciput 【민법】 선취권
Portable (créance) 지참(채권)	Précarité de l'emploi 【노동】 고용 불안정성
Position dominante 【상법】 지배적 지위	Précompte 【노동】 (임금에서) 사회보험료의 공제
Positivism juridique 법실증주의	Préjudice 손해
Possession 점유	Préjudices de caractère personne 인적 손해
Possessoire 점유의 소	Préjudice esthétique 미적 손해
Poste de travail 【노동】 직위	Prélèvement libératoire 분리과세
Pourboire 【노동】 팁	Premier Ministre 수상
Poursuite 소추	Preneur 임차인
Poursuites (Actes de) 【재정】 강제 징수	Préposé 수탁자
Pourvoi en cassation 【민소/형소】 파기신청	
Pourvoi en révision 【형소】 재심신청	
Pouvoir 【민법】 권한 【민소】 대리권	
Pouvoir constituant 헌법제정권력	

Préretraite 조기퇴직	Prisée 【민법/민소】 가격평가
Prérogatives et charges 권리, 부담	Prisons 교도소
Prescription de l'action publique 공소시효	Privatisation 민영화
Prescription civile 민사시효	Privilège 【민법】 선취특권
Prescription de la peine 형의 시효	Prix 대가, 가격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공화국 대통령	Prix d'appel 【상법】 가격에 의한 부당 유인
Présidentialisme 대통령중심주의	Probation 【형법/형소】 보호관찰
Présomption 추정	Procédure 【소송】 절차
Présomption d'innocence 무죄의 추정	Procédure contradictoire 【민소】 대 심절차
Prestataire de services 노무의 제공	Procédure inquisitoire 직권주의적 절차
Prestation(s) 【민법】 급부 【사보】 급여	Procédure à jour fixe 지정기일의 절차
Prêt 대차	Procédure en matière gracieuse 비송사건절차
Prête-nom 명의대여	Procédure pénale 형사절차
Pretium doloris 【민법/사보】 위자료	Procédure sommaire 간이소송절차
Preuve 증명, 증거	Procès 소송
Preuve (procédures de) 증거절차	Procès-verbal 조서
Prévention 【노동/사보】 예방조치	Procuration 【민법/민소】 대리권, 위임장
Prévenu 【형소】 피고인	Prodigue 【민법】 낭비자
Prime 【보험】 보험료	Production de pièces 【소송】 증서의 제출
Primes 【노동】 상여금	Profil médical 【사보】 의료기록
Prime d'émission 【상법】 액면초과액	Projet de loi 정부제출법률안
Principal 【민소】 원본과 이자, 본안	Promesse de vente 매매의 예약
Principe de faveur 【노동】 유리의 원칙	Promotion sociale 【노동】 사회적 지 위의 향상
Principes généraux du droit 법의 일반원칙	Prononcé du jugement 판결의 선고
Principe de subsidiarité 보충성의 원칙	Propres (Biens) 【민법】 고유(재산)
Principes de valeur constitutionnelle 헌법적 가치를 가지는 원칙	Propriété 소유, 소유권
Priorité d'embauchage 【노동】 우선 고용	Propriété commerciale 상사소유권

Propriété industrielle 공업소유권
 Propriété intellectuelle 지적소유권
 Protocole 의정서
 Provocation 교사, 선동
 Publication 공포
 Publication des condamnations 유
 죄판결의 공시
 Publication des traités 조약의 공포
 Publicité d'actes juridiques 법률행
 의의 공시
 Publicité des débats 변론의 공개
 Publicité foncière 토지공시
 Publicité des jugements 판결의 공개
 Publicité de la justice 재판의 공개
 Puissance paternelle 【민법】 부권
 (父權)
 Puissance publique 공권력
 Pupille 피후견자

Q

Qualification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Qualité pour agir 당사자적격
 Qualité substantielle 【민법】 본질적
 성질
 Quasi-contrat 준계약
 Quasi-délit 준불법행위
 Quasi-usufruit 준용익권
 Question de confiance 신임문제
 Question préalable 선결문제
 Quittance 수령증서
 Quorum 【민법/상법】 정족수

R

Radiation (des hypothèques) (저
 당권의) 말소
 Raison sociale 【상법】 상호
 Ratification des traités 조약의 비준
 Réassurance 재보험
 Recel 【민법】 은닉
 Récépissé 【상법】 수령서
 Récépissé-warrant 【상법】 참고증권
 Réceptice 【민법】 통지를 요하는
 Réception 【민법】 수령
 Rechute 【사보】 재발
 Récidive 【형법】 누범
 Réclusion criminelle 【형법】 징역
 Reconduction (임대차계약 등의) 갱신
 Reconnaissance 승인
 Reconnaissance de dette 차용증서
 Reconnaissance d'enfant naturel
 혼외자에 대한 인지
 Reconnaissance d'écriture 【민소】
 문서의 확인
 Recouvrement de l'impôt 조세징수
 Reçu 수취
 Reçu pour solde de tout compte
 임금청산확인서
 Récusation (소송)기피
 Réhibitoire 해제의 원인이 되는
 Redressement judiciaire 재판상의
 갱생
 Réduction de peine 형의 단축
 Réescompte 재할인
 Réévaluation des bilans 대차대조표

의 재평가	Représentation 【민법】 대리, 대습
Référendum 국민투표	Représentation conjointe 【민소】 공동 대리
Réformation 【민소】 (원판결) 변경	Représentation en justice des plaideurs 【민소】 소송당사자의 재판 상의 대리
Réfugié 난민, 망명자	Représentation proportionnelle 비 례대표제
Régime communautaire 공동재산제	République 공화제
Régime matrimonial 부부재산제	Réquisition 징발, 징용
Régime parlementaire 의원내각제	Réserve 【민법】 유류분
Régime politique 정치체제	Réserves 【상법】 준비금, 적립금
Régime présidentiel 대통령제	Résidence 거소
Régime séparatiste 별산제	Résiliation 해약
Registre du commerce et des sociétés 상업·회사등기부	Résolution 【민법】 해제 【헌법】 결의
Registre du rôle 【민소】 사건등록부	Responsabilité 【민법】 책임
Règlement 행정입법, 명령	Responsabilité des agents publics 공무원의 배상책임
Règlement d'atelier, Règlement intérieur 취업규칙	Responsabilité du fait des produits défectueux 제조물책임
Règlement pacifique des conflits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Responsabilité pénale 형사책임
Réhabilitation 【형법】 복권	Responsabilité politique 정치적 책임
Réintégration 【노동】 복직	Responsabilité de la puissance publique 공권력의 손해배상책임
Relations diplomatiques 외교관계	Ressort 관할, 심급
Relaxe 【형소】 무죄판결	restitution en entier 원상회복
Remise de dettes 【민법】 채무면제	Rétention 【민법】 유치(권)
Remise de peine 【형법】 형의 감면	Retenue à la source 원천징수
Remisier 【상법】 중매인	Rétractation 【민법/상법】 철회
Rente 【민법】 정기금 【사보】 연금	Retraite 퇴직
Rente sur l'Etat 국채	Rétroactivité 소급
Répétition de l'indu 비채변제의 반환	Rétroactivité de la loi 법률의 소급
Repos hebdomadaire 주휴	Révision 【헌법】 헌법개정 【행정】 수정
Représentant de commerce 상업대 리인	
Représentants du personnel 【노 동】 종업원대표	

【형소/민소】 재심
 Révocation 【행정】 파면, 취소, 철회
 【민법】 철회, 해임
 Risque 위험
 Rupture du contrat de travail 근로계약의 파기

S

Saisie 【민소/민법】 압류
 Saisie des droits incorporels 무체재산권의 압류
 Saisie immobilière 부동산압류
 Saisies mobilières 동산압류
 Saisie de navire 선박압류
 Saisie des rémunérations du travail dues par un employeur 사용자에 의해 지급되는 임금압류
 Saisine 제소
 Salaire 임금
 Salaire de référence 【사보】 기준임금
 Sanctions administratives 행정상의 제재
 Savoir-faire 노하우
 Scellés 봉인
 Scission 【상법】 (회사의) 분할
 Scrutin 【헌법/행정】 투표
 Séance 회의, 회기
 Secret professionnel 【형법】 직업상의 비밀
 Section syndicale d'entreprise 기업내 노동조합지부

Sécurité juridique (Principe de) 법적 안정성(의 원칙)
 Sécurité sociale 사회보장
 Sénat 상원
 Sentence 판결, 판단, 재결
 Sentence arbitrale 중재재정
 Séparation de biens 부부별산제
 Séparation de corps 별거
 Séparation de fait 사실상의 별거
 Séparation des pouvoirs 권력분립
 Serment 선서
 Service national 병역의무
 Service public 공역무
 Services sociaux 복지서비스
 Session 회기
 Sévices 학대
 Siège (법원)소재지
 Siège social 회사소재지
 Signature 서명
 Signature électronique 전자서명
 Signature des traités 조약서명
 Signification 송달
 Simulation 【민법】 허위표시
 Situation juridique 법적 지위
 Sociétaire 비영리사단의 구성원
 Société 회사계약, 회사, 조합
 Société anonyme 주식회사
 Société en commandite par actions 주식합자회사
 Société en commandite simple 합자회사
 Société coopérative 협동회사, 협동조합
 Société coopérative ouvrière de

production 근로자 생산협동조합	Succombance 【민소】 패소
Société financière 금융회사	Succursale 지점
Société d'investissment 증권투자회사	Suffrage 선거
Société en nom collectif 합명회사	Suffrage direct 직접선거
Société en participation 익명회사	Suffrage indirect 간접선거
Société politique 정치사회	Suffrage égal 평등선거
Société à responsabilité limitée (SARL) 유한회사	Suffrage universel 보통선거
Société unipersonnelle 1인회사	Suffrages exprimés 유효투표
Solidarité 연대	Superficie (droit) 지상권
Solvabilité 지불능력	Surendettement 【민법】 과잉채무, 개 인파산(제도)
Sommation 【민소】 최고	Sûreté publique 공공의 안전
Sources du droit 법원	Sursis à statuer 【소송】 재판의 연기
Souscription (주식의) 인수	Sursis avec mise à l'épreuve 【형 법】 보호관찰조건의 집행유예
Sous-location 전대차	Sursis simple 단순집행유예
Sous-traitance 하도급	Suspect 피의자
Souveraineté de l'Etat 국가주권	Suspension 【민법/형법】 (시효진행의) 정지 【노동】 (근로계약의) 정지 【민소/ 형소】 정직
Souveraineté nationale 국민주권	Suspension de l'exécution des peines 형집행정지
Souveraineté populaire 인민주권	Suspension de l'instance 소송절차 의 정지
Stage 연수	Synallagmatique 쌍무의
Statuts 규약, 정관	Syndic de faillite 파산관재인
Statut (fonction publique) (공무원 의) 신분규정	Syndicat professionnel 직업조합
Statut personnel 인법	Système monétaire européen (SME) 유럽통화제도
Statut réel 물법	
Stipulation 약정	
Subordination 【노동】 종속	
Subrogation 대위	
Substitution (pouvoir de) 【행정】 대집행권	
Successeur 상속인	
Succession 상속, 상속재산	
Succession d'Etats 국가승계	

T

Tacite reconduction 묵시의 갱신	Titre nominatif 기명증권
Tarif 요금표	Titre participatif 참가증권
Tarifs 진료보수 요금표	Titre au porteur 무기명증권
Taux 이율	Tortures 고문
Taux de l'impôt 세율	Totalitarisme 전체주의
Taxes sur le chiffre d'affaires 매 상세	Tradition 【민법】 인도 【상법】 교부양도
Taxes foncières 토지세	Trahison 반역
Taxe d'habitation 주거세	Traité 조약
Taxe professionnelle 사업세	Traités inégaux 불평등조약
Taxe sur la valeur ajoutée (TVA) 부가가치세	Transaction 【민법】 화해, 상거래 【상법】 화해
Technique juridique 법기술	Transcription 등기
Télé-achat 통신구매	Transsexuel 성전환자
Témoignage 증언	Travail 노동
Témoin 증인	Travail temporaire 파견근로
Temps de travail 근로시간	Travailleur 노동자
Tentative 미수	Travaux préparatoires 입법준비작업
Terme 기한	Travaux publics 공공토목공사
Terrorisme 테러행위	Tréfonds 지하
Testament 유언	Trésor 매장물
Thesaurus 동의어사전	Trésor public 국고
Ticket modérateur 【사보】 (의료보험 의) 본인부담분	Tribunal administratif 지방행정법원
Tierce personne 【사보】 제3자 간병인	Tribunal de commerce 상사법원
Tiers 제3자	Tribunal militaire aux armées 군 사법원
Tiers-Monde 제3세계	Tribunal militaire international 국제군사법원
Tiers payant 【사보】 제3자 지불제도	Tribunal pénal international 국제 형사법원
Timbre (Droits de) 인지세	Tutelle (territoire sous) 신탁통치 지역
Tiré 【상법】 (어음·수표의) 지불인	Tuteur 후견인
Tireur (어음·수표의) 발행인	
Titre 증서, 권원(權原)	
Titres exécutoires 집행권원	

U

UNESCO (Organisation des Nations unies pour l'éducation, la science et la culture) 유네스코(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Unilatéral 일방적

Union douanière 관세동맹

Union économique 경제동맹

Usage 관행, 사용

Usage (droit d') 사용(권)

Usage de faux 위조문서행사

Usucapion 취득시효

Usufruit 용익권

Usure 폭리

V

Vacance 공석

Valeur nominale 액면가

Valeurs mobilières 유가증권

Vente 매매, 매각

Vente à credit 신용판매

Vente à distance 원격판매

Vente à domicile 방문판매

Vente à l'encan 경매

Vente à tempérament 할부판매

Verdict 평결

Veto 거부권

Vices du consentement 동의의 하자

Viol 강간

Violation de domicile 주거침입

Violation de la loi 법률위반

Violence 【민법】강박

Violences 【형법】폭행

Visa 사증

Visite domiciliaire (가택)수색

Voies d'exécution 강제집행

Vol 절도

Votants 투표자

Vote 투표

Vote bloqué 일괄표결

Z

Zone contiguë 접속수역

Zone économique exclusive 배타적
경제수역

Zone franche 면세구역

Zone d'influence 세력권

Zone de libre échange 자유무역지대